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30-01

우리나라 농업 수출 보조금 정책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최종보고서

우리나라 농업 수출 보조금 정책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과제인 “우리나라 농업 수출 보조금 정책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1월

- 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김 한 호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 연 구 원 : 안 병 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 연구보조원 : 박 미 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 연구보조원 : 우 아 미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차 례

제1장. 서 론	1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II. 연구내용 및 범위	3
제2장. 수출 보조금 개정 논의 동향 파악 및 전망	5
I. WTO/DDA 협상 동향	5
1. 추진 경과	5
2. 주요 협상 내용	9
II. 수출보조금 협상 배경-2000년부터 2004년까지	12
1. 개요	12
2. 수출보조금에 대한 단계별 협상 내용	14
가. 1단계(Phase 1)	14
나. 2단계(Phase 2)	15
다. 세부원칙 준비 단계(Preparations for 'modalities')	17
라. 2004년 8월 프레임워크 단계(August 2004 framework)	20
III. 수출보조금 관련 최근 현황 및 전망	20
1. 수출보조금 관련 최근 논의 현황	20
2. 수출보조금 개정 논의 전망	22
제3장. WTO 회원국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련 분쟁 분석	25
I.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	25
1. 주요 WTO 회원국들의 수출보조금 지급 실적 통보 현황	25
2. 국가별 최근 보조금 지급 실적	27
가. 수출보조금 감축 의무가 있는 주요 국가	27
나. 수출보조금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	43
3. 시사점	50
가. 수출보조 의무 감축 국가들의 자발적인 수출보조 지급 감축	50
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수출보조 허용 수준의 유지	51
다. 개도국들의 수출보조 규모 증가	52
라. Poultry meat의 높은 수출보조 규모 지속	52
II. 수출보조금 분쟁 사례	54
1. 수출보조금 분쟁 개요	54

2. 주요 사례	55
가. US-Cotton subsidies 사건	55
나. Canada-Milk/Dairy 사건	56
제4장. 우리나라의 수출보조금 지급의 국제법적 근거	5-
I. 수출보조금 지급 관련 WTO 농업협정 내용 분석	59
1. 농업협정상 수출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59
2. 농업협정상 수출보조금 감축 수준	63
3. 농업협정상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 방지	65
II. 수출보조금 지급 관련 DDA 협상 주요 합의내용	67
1. 2004년 WTO 일반이사회 결정 내용	67
2.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 선언문의 내용	68
3. 2008년 세부원칙 4차 수정안 내용	69
가. 양허수출보조금 약속	69
나.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	70
다.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	73
4. 2013년 WTO 발리각료회의 선언문의 내용	77
III. 우리나라 수출보조금의 농업협정 제9조 4항 해당 여부 검토	79
1.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실적 현황	79
2. 농업협정 제9조 4항 해당 여부 검토	82
IV. 우리나라의 수출 물류 보조금 지급 지속 가능성	86
제5장. 향후 우리나라 수출보조금 정책 방향	8-
I. DDA 협상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	89
II. 수출보조금 점진적 축소	90
III. 간접지원 및 수출 물류인프라구축으로 전환	92
IV. 수출보조금 정책성과 평가를 통한 재원의 효과적 활용	94
부록1. WTO 농업협정(용어의 정의와 수출경쟁)	95
부록2. 세부원칙 4차 수정안 번역본(수출경쟁)	105
부록3.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 번역본(수출경쟁)	123
참고 문헌	129

표 차 례

제2장

<표 2-1> DDA 협상의 전개과정	8
<표 2-2> WTO 각료회의 동향	9
<표 2-3> 농업협상의 기본골격	10
<표 2-4>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11
<표 2-5> 세부원칙 준비 단계의 제안서 내용	18
<표 2-6> UR 협상과 DDA 협상	21
<표 2-7> 수출보조금과 수출신용 관련 개정 동향	21
<표 2-8> 최근 각 국가별 수출경쟁에 대한 논쟁	22
<표 2-9> 농업관련 이슈 증 수출경쟁부문 MC각료선언 요약	24

제3장

<표 3-1> 국가별 수출보조금 지급 사항	26
<표 3-2> EU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9~'11년)	28
<표 3-3> 캐나다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9~'10년)	32
<표 3-4> 스위스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9~'11년)	35
<표 3-5> 노르웨이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10~'12년)	37
<표 3-6> 이스라엘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10~'12년)	40
<표 3-7> 미국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9~'10년)	42
<표 3-8> 한국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5~'08년)	44
<표 3-9> 인도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6~'09년)	46
<표 3-10> 멕시코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4~'07년)	49
<표 3-11> 국가 및 연도별 수출보조 지급 여부	51

제4장

<표 4-1> 수출보조금 정의 및 유형 관련 농업협정 조항	62
<표 4-2> 한국의 농업보조금 이행 현황	79
<표 4-3>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실적 추이	80
<표 4-4> 현재 시행중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81

제5장

<표 5-1>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상대적 중요도 및 복합 가중치	92
-------------------------------------	----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1> DDA 농업협상의 주요국과 주요 협상 그룹 7
- <그림 2-2> 각 협상별 주요 내용 10

제3장

- <그림 3-1> EU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유로) 27
- <그림 3-2> 캐나다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달러) 31
- <그림 3-3> 캐나다의 수출보조금과 식량원조 지급 현황 31
- <그림 3-4> 스위스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프랑) 34
- <그림 3-5> 노르웨이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억 크로네) 37
- <그림 3-6> 이스라엘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달러) 39
- <그림 3-7> 미국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달러) 41
- <그림 3-8> 한국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억 원) 44
- <그림 3-9> 인도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백만 달러) 46
- <그림 3-10> 멕시코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백만 달러) 48
- <그림 3-11> 한국과 인도의 수출보조 증가율 52
- <그림 3-12> WTO 회원국의 Poultry meat에 대한 연도별 수출보조 지급허용 규모와 실제 지급 규모 53
- <그림 3-13> WTO 분쟁 해결절차 54

제4장

- <그림 4-1>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금 분류체계 61

제5장

- <그림 5-1> 전체 농식품 수출액 중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 비중 추이 91

제1장. 서 론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은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농업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UR 농업협상의 연장선상에서 WTO협상을 시작함.
 - 이후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음.

- UR 협상 당시 수출보조는 시장 왜곡 효과가 가장 크고 직접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출보조의 완전 철폐와 수출신용에 대한 규율이 가장 큰 협상 쟁점이었음.

- UR이후 DDA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호주, 뉴질랜드 등 케언즈그룹 국가와 미국은 수출보조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음. 케언즈 그룹의 경우, 수출보조가 국내보조보다 시장왜곡효과가 크고 직접적이며 對개도국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출보조는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수출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EU는 점진적인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 EU는 자국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출보조의 완전 철폐는 수용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출보조가 수입개도국에 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주장하며 점진적인 감축을 선호함.
 - 특히 미국의 수출신용제도와 일부 케언즈그룹 국가의 수출국영무역을 우회적인



수출보조라고 비판하며 수출보조뿐만 아니라 수출신용 및 수출국영무역도 동시에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함.

○ 하지만 DDA 협상은 지난 2001년 출범한 이래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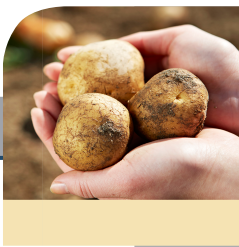
– 농업 분야도 서비스나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등 여타 분야에 비해 앞서 있기는 하나, 2008년 12월 농업협상 세부원칙 제4차 수정안(Rev.4)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지금까지 4차례의 수정안이 배포된 만큼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황임.

–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에 따라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

○ 한편,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수출 보조 및 수출신용은 미국과 EU 등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현재까지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기로 최종 합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는 2005년 홍콩각료선언의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가장 진전된 내용은 제6차 홍콩각료회의 합의 결과로, 선진국의 수출보조는 2013년까지 50%, 개도국의 수출보조는 2016년까지 25% 감축하자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합의 내용은 DDA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선진국의 경우 이미 그 시한이 경과된 상태이며, 그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최근에 타결된 발리 패키지에서는 비록 수출보조금 감축과 관련한 홍콩각료회의의 합의결과를 조기수확 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수출보조금 감축과 관련한 내용을 향후의 워크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등 수출보조금 관련 협상이 급진전 될 가능성도 있음.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향후의 협상진전을 염두에 두고 농업분야 수출 보조금 관련 논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즉, 농업분야 수출 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WTO 협상에서 여전히 중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준비하여 제출요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보조금 논의 대응 및 향후의 세부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출 보조금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분석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크게 ① 수출 보조금 개정 논의에 대한 최근 동향 ② WTO 회원국들의 수출 보조금 지급 현황 및 분쟁 사항 ③ 우리나라 수출 보조금 지급의 국제법적 근거 고찰 ④ 향후 우리나라 수출 보조금 정책 방향 제시 등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첫째, 수출 보조금 개정 논의에 대한 최근 동향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하고자 함.
 - 홍콩 각료 회의,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 등에서 제시된 수출 보조금 관련 논의 현황을 파악하고,
 - 특히 가장 최근인 2008년 제안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수출경쟁과 관련된 주요국들의 입장과 개정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 둘째, WTO 회원국들의 수출 보조금 지급 현황 및 분쟁 사항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하고자 함.
 - UR 협상 당시 수출보조금 양허안 제출 및 미제출 국가들의 수출 보조금 지급 실적을 비교조사하고,
 - 우리나라와 농업분야 상황이 유사한 나라를 중심으로 수출 보조금 관련 WTO 내 분쟁 사례를 조사하고자 함.

- 셋째, 우리나라 수출 보조금 지급의 국제법적 근거 고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하고자 함.
 - 우리나라가 수출 보조금 지급의 근거로 원용하는 농업협정문 제 9조 4항(Article 9.4) 내용을 분석하여, 위 내용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 수출 보조금 이행 기간 이후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와 제소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국제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고자 함.

- 넷째, 향후 우리나라 수출 보조금 정책 방향 제시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하고자 함.
 - 수출 보조금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현황을 고찰하고,
 - 수출 보조금 지급관련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수출 보조금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수출 보조금 개정 논의 동향 파악 및 전망

I. WTO/DDA 협상 동향¹⁾

1. 추진 경과

- 수출 보조금 개정 논의 동향 파악에 앞서 WTO/DDA 협상의 추진 경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1995년에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의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WTO 각료회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2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다자무역체계를 강화하고,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출범하였음. 협상 종료 방식은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 합의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하였음.

- 2003년 9월 제5차 WTO 칸쿤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이후 2004년 7월말까지 기본골격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되어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채택되었음.

- 2005년 12월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업 수출보조를 2013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면화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철폐하기로 함. 최빈 개도국(LDCs)에 대해서는 무관세-무쿼터(duty-free, quota-free)를 적

1)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4.6)를 참고하여 작성함.



용하기로 함.

- 2007년 7월에 팔코너 의장은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고, 2008년 2월에 세부원칙 1차 수정안을, 5월에 2차 수정안을, 7월에 3차 수정안을 배포하였음. 2008년 7월 21~29일 소규모 각료회의 때 라미총장이 제시한 세부원칙 패키지 합의에 실패하고, 2008년 12월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2009년 12월 제7차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현황 점검에 대해 합의한 이후, 타결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최종 타결에는 실패함.

- 이후 2011년 12월 제8차 제네바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일괄타결에 앞서 진전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 진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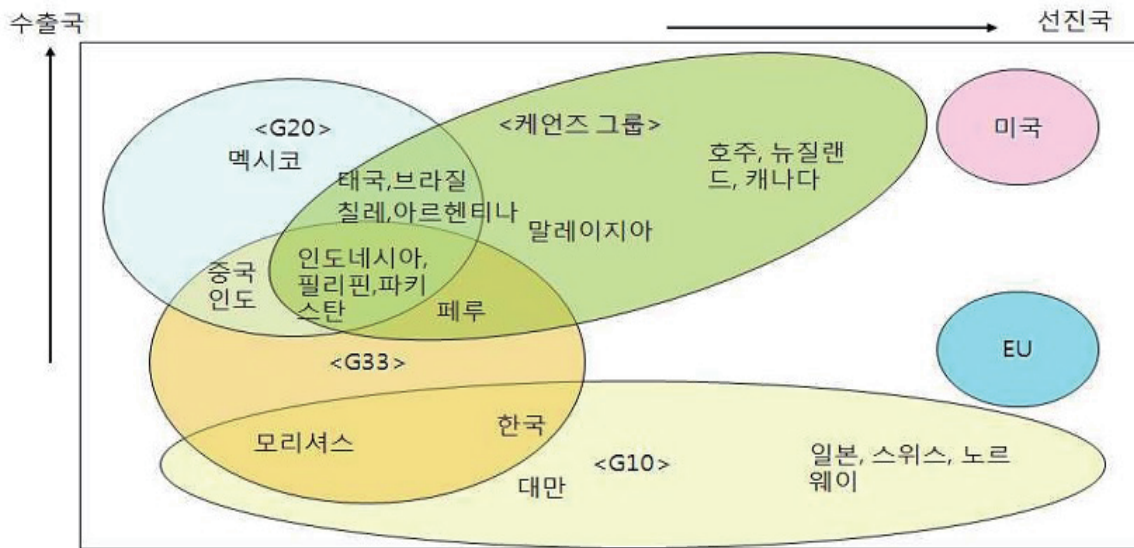
- 2013년 1월 다보스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일부라도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음.

- 2013년 9월 1일 신임 WTO 아제베도 사무총장(Mr. Azevedo) 취임 이후 협상이 급진전되었으며, 2013년 12월 제9차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일부 이슈에 대한 조기 부분타결에 성공하였음.
 - 무역원활화(통관절차 간소화), 농업분야 일부(TRQ 관리 개선,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허용, 수출경쟁 선언, 일반서비스 확대), 개발·최빈개도국 이슈 등 3개 부문에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됨.



-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는 조기수확(early harvest)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하였음.

<그림 2-1> DDA 농업협상의 주요국과 주요 협상 그룹



- ※ G10 : 농산물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 농산물 수출국 그룹
- G33 : 특별품목 주장 그룹 G20 : 수출개도국 그룹

자료: 송주호 외(2009).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발리 각료회의에서 2014년 내에 DDA 타결을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농업협상의장이 주요협상 그룹별로 향후 논의방향에 대하여 의견수렴 중임.
-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 모리셔스, **한국**, 대만,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 케언즈 그룹(농산물 수출국 그룹): 태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페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 G33(특별품목 주장 그룹, 수입개도국 그룹):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페루, **한국**, 모리셔스 → **개도국 식량안보 강화 제안**



- G20(수출개도국 그룹): 멕시코, 중국, 인도, 태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 TRQ 관리강화 제안, 수출경쟁 제안

<표 2-1> DDA 협상의 전개과정

시기	DDA 협상 추진경과	5단계 구분
2001년 11월	협상출범(카타르 도하)	협상을 위한 준비 단계(2000.3~2002.3)
2003년 2월	하빈슨의장 초안 제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준비단계 (2002.3~2003.7)
2003년 9월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세부원칙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단계 (2003.8~2004.8)
2004년 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시한연장 (홍콩각료회의의 시한 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세부원칙 기본방향의 구체화단계 (2004.9~2005.12)
2006년 7월	라미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협상단계 (2006.1~)
2006년 11월	라미총장 협상재개 선언	
2007년 7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초안 제시	
2008년 2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2008년 5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2차 수정안 제시	
2008년 7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3차 수정안 제시	
2008년 12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제시	
2009년 12월	제네바 각료회의: '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현황 점검 합의하였지만, 주요국간 입장차이로 합의도출에 실패	
2011년 5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패키지 구성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도출 실패	
2011년 12월	WTO 각료회의: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 재확인하고, DDA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제기	
2013.12~	MC-9 조기수확 가능 분야(무역원활화, TRQ 관리방안 등) 타결 및 협상진행 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6.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표 2-2> WTO 각료회의 동향

회차	날짜	개최 장소	주요 의제
1	1996.12.9.-13	싱가포르	환경라운드(Environ Round)가 출범할 것이라 우려가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음.
2	1998.5.18.-20	스위스 제네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함.
3	1999.11.30.-12.3	미국 시애틀	뉴라운드 출범이 시도되었으나 합의에 실패함.
4	2001.11.9.-13	카타르 도하	DDA 무역 라운드의 출범에 합의함.
5	2003.9.10.-14	멕시코 칸쿤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등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가 주요 의제로 제시되었으나, 개도국의 강한 반대로 채택하지 못함.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문제가 대두되었고, 주요 개도국 연대인 G20가 결성됨.
6	2005.12.13.-18	홍콩	농업 수출보조를 2013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면화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철폐하기로 함. 최빈 개도국(LDCs)에 대해서는 무관세-무쿼터(duty-free, quota-free)를 적용하기로 함.
	2008.12.6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라미총장이 제시한 세부원칙 패키지를 중심으로 세부원칙 4차 수정안 배포되었음.
7	2009.11.30.-12.2	스위스 제네바	각료회의를 다시 시작함. 다자무역체제와 현재의 세계경제 환경에 대해 논의함.
8	2011.12.15.-17	스위스 제네바	수출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확충하도록 하는 제안서가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9	2013.12.3.-7	인도네시아 발리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개발 문제를 다룬 발리 패키지(Bali Package)에 합의함 .

자료: WTO(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ist_e.htm), 임송수(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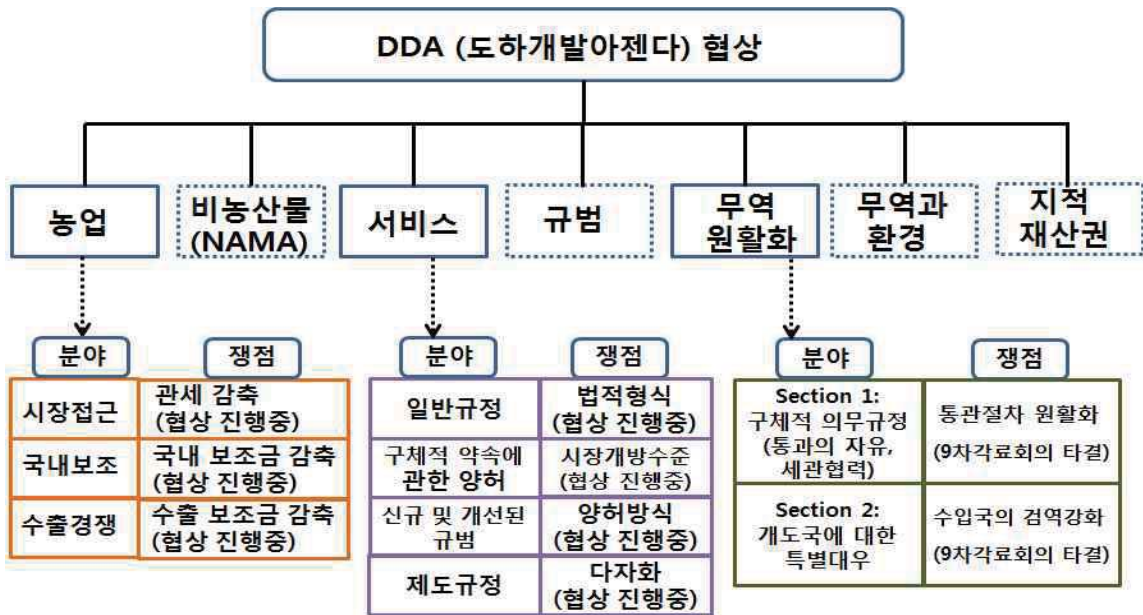
2. 주요 협상 내용

- DDA 농업협상 의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첫째, 시장접근, 둘째, 국내보조, 셋째, 수출경쟁 등임. 수출 보조금은 수출경쟁 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 시장접근: 관세감축률,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개도국긴급수입관세 (SSM), 긴급수입관세(SSG), 쿼터내관세, TRQ 관리방안, 관세단순화, 경사관세, 열대작물, 특혜잠식 등임.
- 국내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블루박스(Blue box), 허용보조(Green box) 등임.
- 수출경쟁: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등임.

<그림 2-2> 각 협상별 주요 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6.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표 2-3> 농업협상의 기본골격

구분	세부원칙 기본방향
시장접근	구간대를 정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 논의함. 다만 민감품목 및 특별 품목 등의 관세감축의 예외 인정.
국내보조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일정기준에 의해 감축. 무역왜곡보조가 많을수록 큰 폭으로 감축하고, 보조금 규제 강화.
수출보조	수출보조금 폐지, 개도국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허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2.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 동향.



- 2013.12.3.~12.7.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 중 조기수확 대상 3개 부문인 발리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음. 발리패키지 3개 부문의 최종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4>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부문	주요 내용
무역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신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 · (무역원활화 조치) 통과된 자유(GATT 5조), 수출입 절차·수수료(8조), 무역규정 공표·시행(10조) 등 GATT 관련 규정을 명확화·개선 · (세관협력) 수출입 관련 정보 제공 등,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 · (對 개도국 특별대우) 협정상의 의무이행 지원을 위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강화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료결정 4개(농업협정 제2조에 정의되니 농산물의 TRQ 관리 규정에 관한 양해,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일반서비스), 각료선언 1개(수출경쟁) · (TRQ 관리방안 개선) 농산물 수입국이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쿼터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 단 개도국에 대해서는 TRQ 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 (개도국 식량안보) 개도국이 현재 운영중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조한도 초과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적 해결방안 마련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소 자제 · (일반서비스) 가뭄 및 홍수 관리 등을 허용보조인 일반서비스 목록에 추가 · (수출보조 자제) 농산물 수출보조 감축 등 수출경쟁 조치 관련
개발/최빈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료결정 4개(LDC 특혜 원산지규정, LDC 서비스 웨이버 운영방안), LDC 무관세 무쿼터(DFQF) 시장접근, 개도국 우대에 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 · WTO 협정 및 각료·일반이사회 결정 등에 포함된 모든 개도국 우대규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운영 · 최빈개도국(LDC) 상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기준 완화 등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확대, LDC 서비스 부문에 대한 특혜 시장접근 등 협의

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3.12.9.)를 참고하여 정리.



II. 수출보조금 협상 배경-2000년부터 2004년까지²⁾

1. 개요

- 1995년까지 GATT는 농산물무역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수출 및 국내 보조금,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세계 농산물무역 질서가 흐트러져 있었음.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로서 보호무역정책 및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정책, 보조금의 폐지를 통해 세계 농산물 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농업협정이 수립됨.

- WTO 농업협정은 1995년에 수립된 이후부터 2000년까지 국가들이 수출보조를 비롯한 국내보조, 수입관세 등을 감축시키거나 감세에 대하여 이행 약속을 한 다자간 협정임.

- 농업협정은 2000년까지의 이행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국들은 이후의 이행스케줄에 대해서 농업협정문 “제20조 농업개혁의 지속” 조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상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모든 농산물 무역관련 규제 감축 및 철폐에 대한 일명 DDA 협상이 2001년부터 시작되었고, 이전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의무를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임.

2)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2004.12.1.)」 문서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으며, 본 절은 농업협상이 이루어진 2000년 3월 1단계부터 2004년 8월 프레임워크 단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농업협정문 - 제20조 농업개혁의 지속>

회원국은 근본적인 농업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농업지원 및 보호에 대한 상당한 단계적 감축이라는 장기목적이 하나의 이행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완료 1년 전에 지속적인 농업개혁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 협의시점까지의 감축약속 이행경험
- 세계 농산물무역에 대한 감축약속 이행의 효과
-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우대조치, 그리고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제 확립목적, 본 협정문 서문에 언급한 그 외의 목적 및 관심사항
- 위의 장기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약속사항

- 농업협상 가운데, 수출보조와 관련한 협상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세부원칙(modalities) 준비 단계에서는 수출보조, 수출 신용·보장·보험, 식량 원조, 수출 국영 무역기업, 수출 제한 및 관세 등의 다섯 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 되었음.
 - 위의 다섯 개 논의 주제들의 하위 주제는 일반적 논의(general comments), 범위(scope), 정의(definition), 적용범위(coverage), 단계(stage), 이행 스케줄(timetables), 투명성(transparency), 통보(notification)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음.
 -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와 비교역적 품목도 위와 같은 주제들에 대하여 논의 됨. 그러나 회원국들은 도하 선언문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비교역적 품목에 대하여 더 낮은 우선순위를 둬.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협상은 2000년 3월 1단계부터 2004년 8월 프레임워크 단계까지 이루어진 농업협상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협상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 협상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2. 수출보조금에 대한 단계별 협상 내용

가. 1단계(Phase 1)

- 수출보조금 협상의 1단계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협상 기간을 의미하며, 수출보조만을 다루기보다 수출제한이나 관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수출 경쟁에 대하여 협상이 진행되었음. 1단계 협상에서는 점진적 수출보조금 철폐 측과 모든 형태에 대한 수출보조금 즉시 완전 철폐 측,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짐.
- 다수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수출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 수입상품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농업이 피해를 보며, 수출 시장에서도 선진국들의 수출 보조금으로 인해 개도국의 수출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생산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 주장을 펼치는 국가들에는 크게 두 가지 국가 유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국가 유형은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 이 국가들은 국내에 농산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단순히 농산물 가격의 하락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해 수출보조 철폐를 지지함.
 - 두 번째 국가 유형은 수출보조금 철폐에 따른 농산물의 세계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상승된 가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나 특혜대우 등의 조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이었음.
- 또한, 많은 국가들은 국영수출기업, 식량원조, 수출신용보조 사용 등을 비롯한 수출보조 관련 이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circumventing)을 차단하는 원칙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한편, 인도 등의 일부 국가들은 개도국에 대하여 부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부가적인 유연성이란 어떤 품목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했을 때,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몇몇 개도국들은 수출보조금 허용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예산 불평등성과 감축된 수준에서의 반영구적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제기함.
 - 예산불평등성이란 선진국들이 수출 보조금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도국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것을 의미함.
 - 감축된 수준에서의 반영구적 보조금 지급이란 원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던 국가들만큼은 비록 감축된 수준에서라도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됨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논의 결과, 1단계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주장 등 이전과는 극명하게 다른 협상 내용이 나타남.
 - 예를 들어 ASEAN과 인도는 모든 선진국들이 수출 보조금 철폐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도국에게만 유통비용보조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수출 보조금 허용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일부 개도국은 선진국 수출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도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장벽 유지나 관세 상한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또 다른 그룹의 개도국은 위와 같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정책이 같은 처지의 개도국들과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다른 개도국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반박함.

나. 2단계(Phase 2)

- 2단계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의 협상을 의미하며 이 단계부터 직



점적인 수출보조 논의가 시작됨.³⁾

- 포괄적 내용을 넘어 보다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안 되었으며 농산물 무역 조치 관련 주제별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본격적으로 개도국 우대 및 군소 도서개발국 등의 내용도 논의 되어진 단계임.

○ 2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제안되었는데, 첫 번째 제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출보조금은 선진국의 경우 3년 내에, 개도국의 경우 6년 내에 철폐해야 하며, 이행 첫 연도 감축으로서 50% 즉각 감축해야 함.

○ 두 번째 제안서의 내용은 첫 번째 제안서와 유사하나 개도국에 대하여 보다 유연성을 강조하였음.

- 이 제안서는 농업협정문 제 9조 4항(Article 9.4) 하에서 개도국들에게 허용된 수출 보조금 유형이 확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개도국에 대해서는 보다 긴 이행기간을 적용하고 2006년 혹은 협상 종료 3년 내 보조금 완전 철폐와 더불어, 현재 협정 하에서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같은 속도와 규모로 감축을 지속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지막 세 번째 제안서는 “재균형(rebalancing)” 혹은 “조정(modulation)”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재균형이란 수출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 하지 않거나 수출 보조금 지급 허용 수준의 상한선(ceiling)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 조정이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수출보조금을 대규모로 감축했다면, 다른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감축률을 보다 완화하여 조정해주는 것을 의미함.

3) 2001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는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영무역기업, 수출세 및 제한, 식량안보 및 안전 등 포괄적인 수출경쟁이 아닌 세분화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함.



- 위의 세 가지 주요 제안서 이외에도 유사수출보조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과 수출보조금 철폐 이행 관련 소규모 개도국의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구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수출보조(식량원조, 수출신용 및 보험,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수출보조금의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일부 소규모 개도국들은 수출 보조금이 완전 철폐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수출 보조금감축 및 철폐로 인해 식량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 이에 적응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다. 세부원칙 준비 단계(Preparations for 'modalities')

- 세부원칙 준비 단계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7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세부원칙 마련을 위하여 도하 선언문을 근거로 기존의 농산물 협상과 함께 새로운 주제와 범위에 대하여 협상이 시작됨.
- 농업협상 세부원칙은 도하 선언문에서 수립한 목표인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에 대한 점진적 감축을 위한 자세한 원칙 혹은 구체적인 숫자가 포함된 감축률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함.
- 세부원칙 준비 단계에서는 수출경쟁에 대하여 수출보조, 수출 신용·보장·보험, 식량원조, 수출 국영 무역기업, 수출 제한 및 관세 등의 다섯 개 주제로 논의가 나뉘어 졌음.
- 위의 다섯 개 논의 주제들의 하위 주제는 일반적 논의(general comments), 범위(scope), 정의(definition), 적용범위(coverage), 단계(stage), 이행 스케줄(timetables), 투명성(transparency), 통보(notification) 등임.
- 세부원칙 준비 단계에서는 개도국 우대와 비교역적 품목도 다른 주제들과 함께 협상 주제로 논의 되었으나, 도하 선언문에서 언급되었던 것만큼 다뤄지지 않는 않았고 더 낮은 우선순위로 협상됨.



○ 세부원칙 준비 단계에서 수출보조금 관련 제안서들의 주요 내용은 <표 2-6>과 같음.

<표 2-5> 세부원칙 준비 단계의 제안서 내용

구분	내용
주요 내용	- 회원국들은 이행 첫 연도에 50% 즉각 감축
	- 선진국의 경우 3년 내, 개도국은 6년 내 수출보조금 완전 폐지
	- 이행 첫 연도 감축이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 5년 내에 수출보조금 완전 폐지
	- 수출 신용과 국내 보조 등의 기타 보조금 유형을 비롯하여 모두 예외 없이 완전 폐지
기타	- 특정 품목의 대규모 감축에 대한 결과로 일부 품목에 대해 보다 완화된 감축을 허용하는 세부원칙 마련
	- 일부 국가들은 단위당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체 보조금 규모에 대한 부가적인 감축 조건에 대해서도 제안함

○ 수출보조금에 대해 다수의 개도국은 수출 보조금 폐지 및 이행 첫 연도 감축에 대하여 지지하였으나, 개도국 우대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름.

- 일부 국가는 보조금 협정(Subsidies Agreement)의 제27조와 부속서 7⁴⁾에 근거한 수출보조금 예외조치를 주장함.
- 또 다른 국가들은 수출보조금 예외조치 정책이 개도국 간 무역에 피해를 주고 시장을 더욱 왜곡 시킨다고 주장함.

1) 수출 보조금에 대한 수정된 세부원칙 초안(The revised first draft 'modalities' on export subsidies)

○ 수정된 세부원칙 초안은 2003년 3월에 배포되었으며 두 가지 속도로 수출보조금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4) 보조금협정(Subsidies Agreement)의 제27조는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로서 8년의 기간 동안 가급적 점진적인 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의미함. 부속서 제7항은 '제27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으로서 보조금협정의 제3조제1항가호(수출 보조금 및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금지)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도국이 나열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WTO 보조금협정을 참고.



- 본 초안은 만약 한 그룹(one set of products)에 대해서 5년(개도국의 경우 10년) 내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면, 나머지 그룹들(the rest)에 대해서는 9년(개도국의 경우 12년) 내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유통, 출하, 등급 및 기타 부대비용, 국제운송비용 지원 등을 위해 농업협정 제9.4조항에 근거하여 수출보조금 폐지에 있어서 예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수출 보조금에 대한 초안 프레임워크(The draft frameworks on export subsidies)

- Pérez del Castillo와 Derbez의 초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초안들은 수출보조금 감축에 대하여 두 가지 종류의 품목을 구분하여 보조금 협상 결과를 예상하였음.
- 두 가지 품목 중 하나는 개도국의 관심품목으로서 이 품목들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폐지될 것이며, 폐지와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다른 하나는 개도국의 관심 품목 이외의 것으로서 여러 초안들 마다 해당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반드시 감축해야할지(EU-US, 노르웨이의 입장) 혹은 폐지해야할지(G-20) 의견이 상이했음.
- Derbez의 초안의 경우,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수출신용, 식량원조 등)의 단계적인 감축을 위한 보조금 종료 날짜가 반드시 협상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 위의 초안과는 조금 다르게, 아프리카연합/ACP/최빈개도국들은 “명시된 기간 내 단계적 폐지를 목적으로(with a view to phasing out, within a specified period)” 모든 수출보조금의 상당한 감축을 요구함.



라. 2004년 8월 프레임워크 단계(August 2004 framework)

- 본 프레임워크에서는 수출보조금의 모든 형태가 모든 회원국들이 용인 할 수 있는 기한(credible date)까지 폐지되어야 함을 명시함.
- 수출보조금 폐지와 관련된 이행스케줄이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신용, 식량원조, 국영무역기업(혹은 state-sanctioned exporting monopolies)등을 포함한 보조금의 모든 형태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 또한 모든 보조금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수출관련 정책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의 제정이 협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Ⅲ. 수출보조금 관련 최근 현황 및 전망

1. 수출보조금 관련 최근 논의 현황⁵⁾

- UR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금을 선진국은 6년 동안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를 감축하도록 하였고, 개도국은 10년 동안 금액기준 24%, 물량기준 14%를 감축하도록 하였음.
- 미국, 호주 등을 포함한 25개국이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를 설정하였음.
- DDA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가 무역왜곡의 대표적인 조치라는 판단 하에 2005년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완전 철폐하도록 합의하였음. 이러한 내용은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음.

5) 문한필 외(2014.6) P. 32~36.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 송주호(2013)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표 2-6> UR 협상과 DDA 협상

	UR 협상	DDA 협상
수출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6년 동안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 감축 · 개도국 10년 동안 금액기준 24%, 물량기준 14% 감축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국이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를 설정 · 선진국: 미국(13개), 호주(5개), 뉴질랜드(1), 캐나다(11), 유럽연합(20), 아이슬란드(2), 노르웨이(11), 스위스(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가 무역왜곡의 대표적인 조치라는 판단하에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 완전 철폐 합의 ·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완전 철폐 · 농업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도 포함됨.

<표 2-7> 수출보조금과 수출신용 관련 개정 동향

문서	구분	주요 내용
세부원칙 4차 수정안 (2008.12)	수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2013년 완전 철폐 · 개도국 2016년 철폐 · 농업협정 9.4조(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에 따른 지원은 5년 후인 2021년 철폐
	수출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최대 180일(개도국은 360일로 시작, 4년차 180일로 조정)
G20 제안 (2013. 5.21, 6.14)	수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내 선진국만 50% 철폐 · 2016년까지 개도국 수출보조 25% 감축(당초 개도국 철폐의무 제외에서 수정) · 면화 수출보조는 홍콩각료선언대로 2013년까지 철폐 · 수출보조 전면 철폐는 5년후 철폐(수출보조 전면 철폐시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폐시한 없음)
	수출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최대 540일(개도국 1,080일, 3년내 540일로 조정)
MC9 각료 선언문 (2013.12)	수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홍콩각료선언의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의 중요성 재확인 · 농업 세부원칙(Rev. 4)가 향후 논의의 주요 기초 중 하나임을 확인 ·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등 조치의 감축기조 유지 및 감축 약속 이하 수준 유지 · 제9차 각료회의 이후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집중 논의 ·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신용, 식량지원, 수출국영무역 정보를 취합, 제공

주: 수출경쟁은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기업, 식량구호 등이나, 수출신용수출국영무역 및 식량 원조는 G20 제안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송주호(2013a) 재구성, 문한필 외(2014).

- 그러나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어, DDA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이 2013년에 수출보조 철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여 왔음(<표 2-6>, <표 2-7> 참고).



<표 2-8> 최근 각 국가별 수출경쟁에 대한 논쟁

국가	의견
브라질	(수출보조) · 수출보조 철폐는 2005년 홍콩 각료회의 MC6의 위임사항(mandate)이며, 2013년 수출보조 철폐시킨 도래 등으로 MC9에서의 수확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2013.5.21. G20을 대표하여 수출경쟁에 관한 제안 제출(2013년내 선진국만 50% 철폐) · 2013.6.14. 당초 개도국 철폐의무 제외에서 미국, EU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추가 제안 제출(2016년까지 개도국 수출보조 25% 감축)
	(수출신용) · 수출신용의 상환기일을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의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연장하여 수출국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
호주	(수출보조) · 케언즈그룹(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을 대표해 2013년 수출보조철폐는 회원국들의 약속임을 강조함.
	(수출신용) · 수출경쟁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식량원조 관련 정보제공 양식을 제안하였음. · 중국이 수출국영무역 정보 제공에 반대함으로써 호주 제안의 일부가 수정된 채 합의되었음.
미국	· 수출신용 이슈에 민감하여 수출경쟁분야는 국내보조, 시장접근과 함께 농업협상 3대 분야로서 수출경쟁만의 부분타결을 강력히 반대 · DDA협상은 포괄적 타결이 전체조건이므로, DDA 타결없이 2013년 시한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기함.
EU	· 수출보조 감축이 부담이 되는 EU는 수출경쟁만의 부분타결을 강력히 반대 · DDA 타결없이 2013년 시한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기함.
아르헨티나	· DDA 타결없이도 법적 구속력 있는 성과를 요구

2. 수출보조금 개정 논의 전망

- 제9차 발리 각료회의 폐막 직전에 수출경쟁 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2008년 DDA 협상 타결 실패 이후 처음으로 수출보조 철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 제시되었음.

- 미국과 EU 등이 홍콩각료회의의 합의는 전체 DDA 협상 타결 및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농산물 수출경쟁만 뽑아서 조기 수확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을 하기로 하였으며,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기로 함. 이를 위해 수출보조 이외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관련 질의양식에 합의하게 된



것임.

- 발리패키지에서는 수출보조 정책이 가장 왜곡이 큰 보조금이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을 하였으며, 2005년 홍콩각료선언의 수출보조 철폐 약속 및 필요성만 재확인하였음.
- 즉,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등이 무역을 왜곡시킨 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균형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과, 2005년 홍콩각료선언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감축 지속 및 활용 자제를 촉구하였음.
- 발리 패키지에서는 또한 매년 농업위원회에서 수출경쟁 분야 개선 등 진전 상황을 논의하는 등 투명성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농업위원회는 수출보조 이외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관련 질의양식에 합의함. 이외에도 수출경쟁 조치 철폐가 발리각료회의 이후의 워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2015년에 열리는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 발리패키지 농업이슈 중 수출경쟁 부문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2-8>과 같음(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의 13개 조문과 1개 부속서에 대한 원문 및 번역문을 참고).
- 이와 같은 최근의 진전 내용을 볼 때, 향후 수출보조금 감축과 관련된 논의 및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는 UR 협정에 따른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없고, 수출신용 등도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9차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분야의 정치적



선언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협정 제 9조 4항에 의거해 개도국 수출물류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관련 이행 계획서 제출요구에 우리나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표 2-9> 농업관련 이슈 증 수출경쟁부문 MC각료선언 요약

조문(제목)	주요 내용	평가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 중요성 재확인 (1-7조)	2005년 홍콩각료선언의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의 중요성 재확인, 농업 세부원칙(Rev.4)가 향후 논의의 주요기초 중 하나임을 확인함.	수출보조 등 무역왜곡 보조 철폐 필요성 재강조,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문 의미
수출보조 등 자제 (8조)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등 조치의 감축 기조 및 감축약속 이하 수준유지 등	아르헨티나 등은 법적 구속력을 요구, 미국, EU 반대로 정치적 선언화
Post-Bali Work (9-11조, 13조)	제9차 각료회의 이후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집중 논의하기로 함.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상황을 검토하기로 동의함.	수출보조 감축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의하는 이슈로써 향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투명성 확보 (12조, 부속서)	농업위원회의 매년 논의를 위해 농업협정에 의한 수출보조 외에 첨부 양식에 의거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신용, 식량지원, 수출 국영무역 정보를 취합제공함.	농업협정상 통보의무 없는 수출신용, 식량원조, 국영무역 등 수출보조 이외 투명성 강화기반 마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6.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제3장. WTO 회원국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련 분쟁 분석

I.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

1. 주요 WTO 회원국들의 수출보조금 지급 실적 통보 현황⁶⁾

- 수출 보조금 사용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의무 감축 대상이 되면서 급격히 감소해 왔음.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보조금 사용이 중단된 반면,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는 여전히 높은 지급률을 보임.

- WTO 회원국들은 수출 보조금 사용 감축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음.
 - 미국은 2014년 Farm Bill에 따라 DEIP(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를 폐지하였고, 노르웨이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출보조금을 폐지함.
 - EU는 2013년 농업정책에서 수출보조금을 예외적 조치로 규정하고, EU Commissioner에서는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협정의 프레임워크로서 수출보조금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함.

- 수출보조 감축 약속 스케줄을 제출한 18개 회원국 중 2001년 협상이 시작된 도 하라운드 이후 9개 회원국들이 수출 보조금 완전 철폐 이행을 통보함.
 - 수출 보조금을 완전 철폐하기로 한 나라들은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임.
 - 수출보조 감축 약속 스케줄을 제출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작은 규모의 수출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허용된 수출보조금액보다도 낮은 비중으로 지급하고 있음.

6) Committee on Agriculture의 2014 Annual export competition review를 재정리함.



-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요 품목은 「wheat and wheat flour」, 「coarse grains」, 「beef meat」, 「pig meat」, 「poultry」, 「eggs」, 「incorporated products」 등 임.
-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품목은 「dairy products」, 「poultry meat」, 「incorporated products」 등 임.

-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보조금 완전철폐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수출보조금 사용이 0에 가까워지고 있음.
- 다만 WTO에 통보하는 수출보조금 지급 실적들이 모든 수출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보나 규모를 정확하게 포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임.

<표 3-1> 국가별 수출보조금 지급 사항*

국가	보조금 예산액 (달러)	최근 실적 통보 연도	최근 통보문 제출 연도	지급 허용 금액 대비 실제 지급 금액 비율	품목별 약속 수준
EU	187,761	2011	2014	2%	Wheat and wheat flour, coarse grains, butter and butter oil, skim milk powder, cheese, other milk products, beef meat(2%), pigmeat(6%), poultry meat(43%), eggs(3%), incorporated products(2%)
캐나다	89,174	2011	2012	21%	Butter, skim milk powder (100%), cheese (89%), other milk products(99%), incorporated products(100%)
스위스	85,923	2011	2013	17%	Milk products, cattle for breeding and race horses, fruits, potatoes,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66%)
노르웨이	35,407	2012	2014	47%	Swine meat(70%), eggs and egg products(100%), butter, cheese(5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70%)
이스라엘	798	2012	2013	2%	Fresh flowers(1%), fruit other than citrus(10%), fresh vegetables(3%), citrus fruits
미국	0	2010	2012	0%	Butter and butter oil, skim milk powder, cheese

* 주: 감축 약속 스케줄을 제출한 국가들 중 최근 수출보조금 사용에 대해 통보한 7개 국가의 지급 실적임.
 자료: Committee on Agriculture - Annual export competition review, WTO,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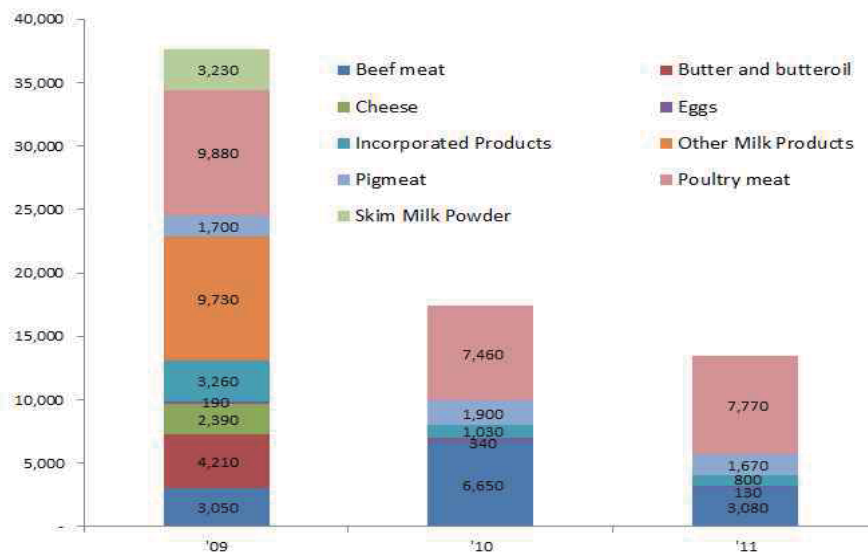
2. 국가별 최근 보조금 지급 실적

가. 수출보조금 감축 의무가 있는 주요 국가

1) EU

- 총 수출보조금은 2009년 37,640만 유로에서 2010년 전년대비 53.8% 하락한 17,380만 유로, 2011년 전년대비 22.6% 감소한 13,450만 유로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임.
- '09년부터 '11년까지 직접수출보조금방식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
- 「Poultry meat」는 전체 수출보조품목 중 2011년까지 가장 큰 규모로 수출보조를 지속해오고 있음.

<그림 3-1> EU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유로)



- 식량원조는 '09년에 45.5만톤을 기록했으나, '10년부터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통보됨.
- '09년에 「Wheat and Wheat Flour」 등을 비롯한 곡물류로 식량을 원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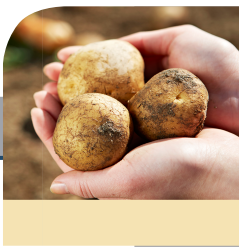


- EU의 지급 허용 총액은 796,300만 유로로, 지급 허용 금액 중 수출 보조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4.7%로 미국(0.4%)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Beef meat」는 1,324백만 유로로 가장 큰 규모의 수출보조 지급 허용 금액을 가지는 품목이었으나, 지급 허용 금액의 2.3%만 수출보조금으로 지급됨.

<표 3-2> EU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9~'11년)

(단위: 만 유로, 만 톤)

연도	품목*	수출보조		식량원조		수출보조 종류**					지급 허용 금액	지급 허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	(2)	(3)	(4)	(5)		
'09년	Alcohol	0.0	0.0	0.0	0.0	0.0	0.0	0.0	0.0	0.0	8,860.0	122.1
	Beef meat	3,050.0	8.4	0.0	0.0	3,050.0	0.0	0.0	0.0	0.0	132,400.0	99.0
	Butter and butteroil	4,210.0	7.1	0.0	0.0	4,210.0	0.0	0.0	0.0	0.0	94,580.0	41.2
	Cheese	2,390.0	12.8	0.0	0.0	2,390.0	0.0	0.0	0.0	0.0	34,570.0	33.2
	Coarse Grains	0.0	0.0	0.0	9.2	0.0	0.0	0.0	0.0	0.0	104,970.0	1,053.0
	Eggs	190.0	3.6	0.0	0.0	190.0	0.0	0.0	0.0	0.0	4,780.0	11.2
	Fruit and vegetables, fresh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870.0	117.3
	Fruit and vegetables, processed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130.0	37.9
	Incorporated Products	3,260.0	0.0	0.0	4.2	3,260.0	0.0	0.0	0.0	0.0	41,440.0	0.0
	Miscellaneous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Olive oil	0.0	0.0	0.0	0.0	0.0	0.0	0.0	0.0	0.0	5,430.0	11.5
	Other Milk Products	9,730.0	40.9	0.0	0.1	9,730.0	0.0	0.0	0.0	0.0	72,410.0	100.9
	Pigmeat	1,700.0	6.0	0.0	0.0	1,700.0	0.0	0.0	0.0	0.0	27,360.0	58.8
	Poultry meat	9,880.0	24.9	0.0	0.0	9,880.0	0.0	0.0	0.0	0.0	18,240.0	43.1
	Pulses	0.0	0.0	0.0	4.1	0.0	0.0	0.0	0.0	0.0	0.0	0.0
	Rapeseed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70.0	44.2
	Raw tobacco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20.0	11.1
	Rice	0.0	0.0	0.0	4.7	0.0	0.0	0.0	0.0	0.0	3,070.0	9.8
	Seeds	0.0	0.0	0.0	6.8	0.0	0.0	0.0	0.0	0.0	0.0	0.0
Skim Milk Powder	3,230.0	12.9	0.0	0.1	3,230.0	0.0	0.0	0.0	0.0	29,800.0	32.3	



	Sugar	0.0	136.3	0.0	1.6	0.0	0.0	0.0	0.0	0.0	51,390.0	137.4
	Vegetable Oils	0.0	0.0	0.0	0.9	0.0	0.0	0.0	0.0	0.0	0.0	0.0
	Wheat and Wheat Flour	0.0	0.0	0.0	13.8	0.0	0.0	0.0	0.0	0.0	129,420.0	1,536.4
	Wine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90.0	680.0
	합계	37,640.0	252.7	0.0	45.5	37,640.0	0.0	0.0	0.0	0.0	796,300.0	4,180.3
'10년	Alcohol	0.0	0.0	0.0	0.0	0.0	0.0	0.0	0.0	0.0	8,860.0	122.1
	Beef meat	6,650.0	27.9	0.0	0.0	6,650.0	0.0	0.0	0.0	0.0	132,400.0	99.0
	Butter and butteroil	0.0	0.0	0.0	0.0	0.0	0.0	0.0	0.0	0.0	94,580.0	41.2
	Cheese	0.0	0.0	0.0	0.0	0.0	0.0	0.0	0.0	0.0	34,570.0	33.2
	Coarse Grains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4,970.0	1,053.0
	Eggs	340.0	4.7	0.0	0.0	340.0	0.0	0.0	0.0	0.0	4,780.0	11.2
	Fruit and vegetables, fresh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870.0	117.3
	Fruit and vegetables, processed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130.0	37.9
	Incorporated Products	1,030.0	0.0	0.0	0.0	1,030.0	0.0	0.0	0.0	0.0	41,440.0	0.0
	Miscellaneous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Olive oil	0.0	0.0	0.0	0.0	0.0	0.0	0.0	0.0	0.0	5,430.0	11.5
	Other Milk Products	0.0	0.0	0.0	0.0	0.0	0.0	0.0	0.0	0.0	72,410.0	100.9
	Pigmeat	1,900.0	6.8	0.0	0.0	1,900.0	0.0	0.0	0.0	0.0	27,360.0	58.8
	Poultry meat	7,460.0	23.1	0.0	0.0	7,460.0	0.0	0.0	0.0	0.0	18,240.0	43.1
	Rapeseed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70.0	44.2
	Raw tobacco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20.0	11.1
	Rice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70.0	9.8
	Skim Milk Powd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29,800.0	32.3
	Sugar	0.0	135.0	0.0	0.0	0.0	0.0	0.0	0.0	0.0	51,390.0	137.4
	Wheat and Wheat Flour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9,420.0	1,536.4
Wine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90.0	680.0	
합계	17,380.0	197.4	0.0	0.0	17,380.0	0.0	0.0	0.0	0.0	796,300.0	4,180.3	
'11년	Alcohol	0.0	0.0	0.0	0.0	0.0	0.0	0.0	0.0	0.0	8,860.0	122.1
	Beef meat	3,080.0	16.6	0.0	0.0	3,080.0	0.0	0.0	0.0	0.0	132,400.0	99.0



Butter and butteroil	0.0	0.0	0.0	0.0	0.0	0.0	0.0	0.0	0.0	94,580.0	41.2
Cheese	0.0	0.0	0.0	0.0	0.0	0.0	0.0	0.0	0.0	34,570.0	33.2
Coarse Grains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4,970.0	1,053.0
Eggs	130.0	2.0	0.0	0.0	130.0	0.0	0.0	0.0	0.0	4,780.0	11.2
Fruit and vegetables, fresh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870.0	117.3
Fruit and vegetables, processed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130.0	37.9
Incorporated Products	800.0	0.0	0.0	0.0	800.0	0.0	0.0	0.0	0.0	41,440.0	0.0
Olive oil	0.0	0.0	0.0	0.0	0.0	0.0	0.0	0.0	0.0	5,430.0	11.5
Other Milk Products	0.0	0.0	0.0	0.0	0.0	0.0	0.0	0.0	0.0	72,410.0	100.9
Pigmeat	1,670.0	5.9	0.0	0.0	1,670.0	0.0	0.0	0.0	0.0	27,360.0	58.8
Poultry meat	7,770.0	24.0	0.0	0.0	7,770.0	0.0	0.0	0.0	0.0	18,240.0	43.1
Rapeseed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70.0	44.2
Raw tobacco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20.0	11.1
Rice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70.0	9.8
Skim Milk Powd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29,800.0	32.3
Sugar	0.0	135.0	0.0	0.0	0.0	0.0	0.0	0.0	0.0	51,390.0	137.4
Wheat and Wheat Flour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9,420.0	1,536.4
Wine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90.0	680.0
합계	13,450.0	183.4	0.0	0.0	13,450.0	0.0	0.0	0.0	0.0	796,300.0	4,180.3

* 주: 총수출보조나 수출보조 지급 허용 규모가 미미한 경우, 제외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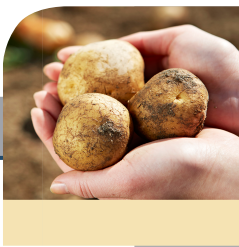
** 주: (1)-직접수출보조, (2)-재고판매, (3)-생산자 재정 보조, (4)-유통비용절감, (5)-국제운송비용
 자료: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EU).

2)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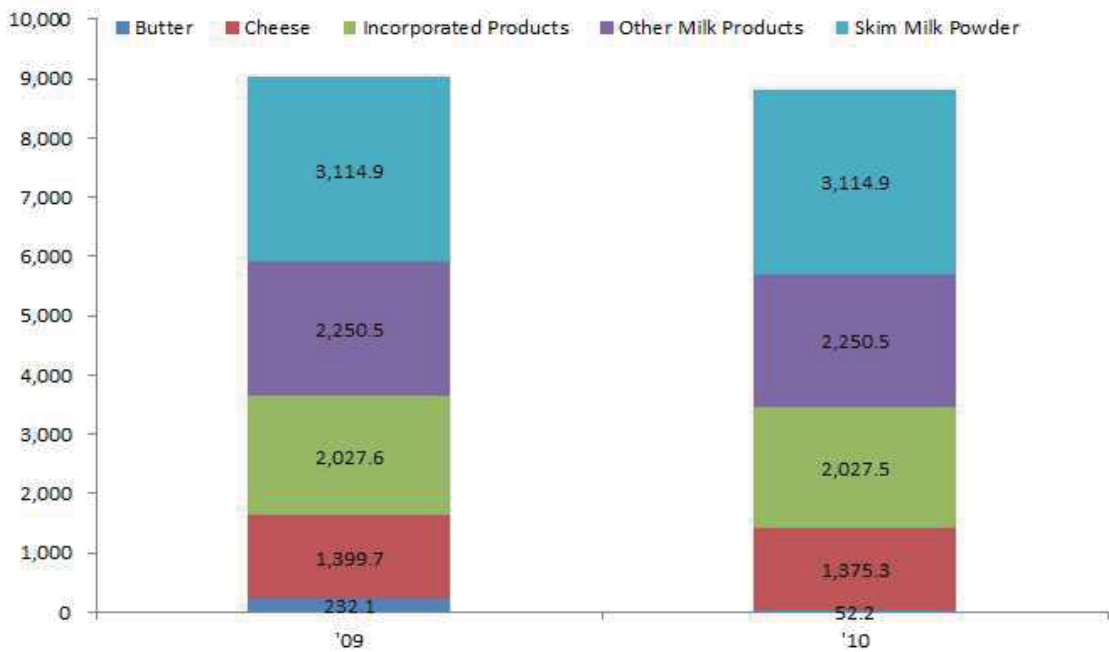
○ 총 수출보조금은 2009년 9,024.8만 달러에서 2010년 전년대비 2.3% 감소한 8,820만 달러로 감축됨.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생산자 재정 보조금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

- 「Butter」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보조품목들에는 전년과 유사한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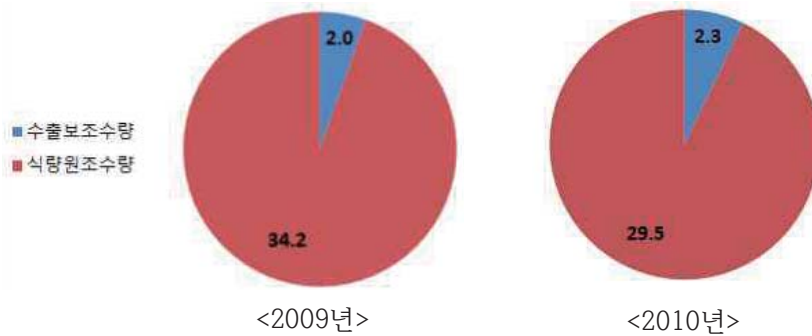


<그림 3-2> 캐나다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달러)



- 식량원조는 2009년에 34.2만 톤, 2010년에는 13.7% 감소한 29.5만 톤으로 집계됨.
 - 「Wheat and Wheat Flour」 등을 비롯한 곡물류와 「Vegetables」 등에서 식량 원조가 이루어졌으나, 2010년부터 식량원조액이나 수량에 대한 기록이 없음.
- 식량원조수량과 수출보조금액규모는 감소했으나, 수출보조수량은 2009년 대비 2010년 16.1% 증가한 2.3톤을 기록함.

<그림 3-3> 캐나다의 수출보조금과 식량원조 지급 현황





- 캐나다의 수출보조 지급 허용 총액은 42,194.7만 달러로, 이 중 2010년 실제 지급한 비율은 20.9%임.
- 「Wheat and Wheat Flour」의 수출보조 지급 허용 금액은 42,194.7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지급 허용 금액을 가지는 품목이나, 지급 실적은 없음.
- 「Skim Milk Powder」의 경우, 지급 허용 금액의 100%인 3,114.9만 달러를 수출 보조금으로 지급함.

<표 3-3> 캐나다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9~'10년)

(단위: 만 달러(캐나다), 만 톤)

연도	품목*	수출보조		식량원조		수출보조 종류**					지급 허용 금액	지급 허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	(2)	(3)	(4)	(5)		
'09년	Black Tea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Bulgar Wh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Butter	232.1	0.1	0.0	0.0	0.0	0.0	232.1	0.0	0.0	1,102.5	0.4
	Canned 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Cheese	1,399.7	0.4	0.0	0.0	0.0	0.0	1,399.7	0.0	0.0	1,622.8	0.9
	Coarse Grains	0.0	0.0	0.0	6.9	0.0	0.0	0.0	0.0	0.0	7,451.0	361.8
	High Energy Biscuits	0.0	0.0	0.0	0.6	0.0	0.0	0.0	0.0	0.0	0.0	0.0
	Incorporated Products	2,027.6	0.0	0.0	0.0	0.0	0.0	2,027.6	0.0	0.0	2,027.6	0.0
	Infant Formula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Maize-soy Blend	0.0	0.0	0.0	1.7	0.0	0.0	0.0	0.0	0.0	0.0	0.0
	Nutritional Supplements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Oilcakes	0.0	0.0	0.0	0.0	0.0	0.0	0.0	0.0	0.0	477.8	21.7
	Oilseeds	0.0	0.0	0.0	0.0	0.0	0.0	0.0	0.0	0.0	3,820.8	174.9
	Other Milk Products	2,250.5	0.6	0.0	0.1	0.0	0.0	2,250.5	0.0	0.0	2,250.5	3.0
	Rice	0.0	0.0	0.0	3.3	0.0	0.0	0.0	0.0	0.0	0.0	0.0
	Salt	0.0	0.0	0.0	0.6	0.0	0.0	0.0	0.0	0.0	0.0	0.0
Seeds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Skim Milk Powder	3,114.9	0.9	0.0	0.1	0.0	0.0	3,114.9	0.0	0.0	3,114.9	4.5	
	Sugar	0.0	0.0	0.0	0.5	0.0	0.0	0.0	0.0	0.0	0.0	0.0	
	Vegetable Oils	0.0	0.0	0.0	1.5	0.0	0.0	0.0	0.0	0.0	222.2	9.3	
	Vegetables	0.0	0.0	0.0	2.9	0.0	0.0	0.0	0.0	0.0	198.5	8.0	
	Wheat and Wheat Flour	0.0	0.0	0.0	15.5	0.0	0.0	0.0	0.0	0.0	1,906.1	885.2	
	Wheat-soy Blend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9,024.8	2.0	0.0	34.2	0.0	0.0	9,024.8	0.0	0.0	42,194.7	1,469.6	
'10년	Butter	52.2	0.0	0.0	0.0	0.0	0.0	52.2	0.0	0.0	1,102.5	0.4	
	Cheese	1,375.3	0.4	0.0	0.0	0.0	0.0	1,375.3	0.0	0.0	1,622.8	0.9	
	Coarse Grains	0.0	0.0	0.0	7.6	0.0	0.0	0.0	0.0	0.0	7,451.0	361.8	
	High Energy Biscuits	0.0	0.0	0.0	0.4	0.0	0.0	0.0	0.0	0.0	0.0	0.0	
	Incorporated Products	2,027.5	0.0	0.0	0.0	0.0	0.0	2,027.5	0.0	0.0	2,027.6	0.0	
	Iodized salt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Locally blended	0.0	0.0	0.0	0.4	0.0	0.0	0.0	0.0	0.0	0.0	0.0	
	Maize-soy Blend	0.0	0.0	0.0	1.5	0.0	0.0	0.0	0.0	0.0	0.0	0.0	
	Micronutrients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Oilcakes	0.0	0.0	0.0	0.0	0.0	0.0	0.0	0.0	0.0	477.8	21.7	
	Oilseeds	0.0	0.0	0.0	0.0	0.0	0.0	0.0	0.0	0.0	3,820.8	174.9	
	Oth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Other Milk Products	2,250.5	0.7	0.0	0.0	0.0	0.0	2,250.5	0.0	0.0	2,250.5	3.0	
	Rice	0.0	0.0	0.0	4.7	0.0	0.0	0.0	0.0	0.0	0.0	0.0	
	Seed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Skim Milk Powder	3,114.9	1.1	0.0	0.2	0.0	0.0	3,114.9	0.0	0.0	3,114.9	4.5	
	Sorghum	0.0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Sugar	0.0	0.0	0.0	0.7	0.0	0.0	0.0	0.0	0.0	0.0	0.0		
Vegetable Oils	0.0	0.0	0.0	1.3	0.0	0.0	0.0	0.0	0.0	222.2	9.3		
Vegetables	0.0	0.0	0.0	2.3	0.0	0.0	0.0	0.0	0.0	198.5	8.0		
Wheat and	0.0	0.0	0.0	9.8	0.0	0.0	0.0	0.0	0.0	1,906.1	8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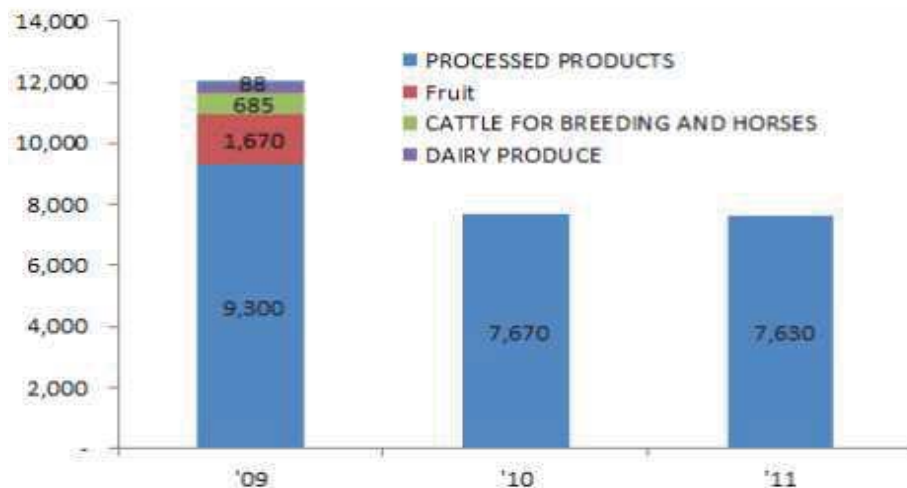
Wheat Flour												
Wheat-soy Blend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8,820.4	2.3	0.0	29.5	0.0	0.0	8,820.4	0.0	0.0	42,194.7	1,469.6	

* 주: 총수출보조나 수출보조 지급 허용 규모가 미미한 경우, 제외하여 정리함.
 ** 주: (1)-직접수출보조, (2)-재고판매, (3)-생산자 재정 보조, (4)-유통비용절감, (5)-국제운송비용
 *** 주: unspecified products, canned beef, canned fish, other vegetables and bulgur.
 자료: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CAN)

3) 스위스

- 총 수출보조금은 2009년 685만 프랑에서 2010년 전년대비 36.4% 감소한 7,670만 프랑, 2011년 전년대비 0.5% 감소한 7,630만 프랑으로 하락세를 보임.
- 스위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직접수출보조 방식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
- 총 수출보조수량은 2009년 25,043.0톤을 기록했으며, 2010년부터 수출보조수량은 0톤으로 집계됨.

<그림 3-4> 스위스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프랑)



- 식량원조는 2009년에 1.5만 톤, 2010년 전년대비 58.0% 증가한 2.4만 톤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1.7% 소폭 감소하면서 2.4만 톤으로 집계됨.
- 「Coarse grains」 가 2010년까지 전체 식량원조규모에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Wheat and wheat flour (in wheat equivalent)」 가 식량원조에서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스위스의 수출보조 지급 허용 총액은 2009년 4.4억 프랑, 2010년 전년대비 73.9% 감소한 1.1억 프랑이었으나, 2011년에는 지급 허용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출보조를 완전 철폐함.

<표 3-4> 스위스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9~'11년)

(단위: 만 프랑(스위스), 톤)

연도	품목*	수출보조		식량원조		수출보조 종류**					지급 허용 금액	지급 허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	(2)	(3)	(4)	(5)		
'09년	Cattle for breeding and horses	685.0	6,214.0	0.0	0.0	685.0	0.0	0.0	0.0	0.0	2,240.0	11,303.0
	Coarse grains	0.0	0.0	0.0	6,228.6	0.0	0.0	0.0	0.0	0.0	0.0	0.0
	Dairy produce	320.0	5,899.0	0.0	0.0	320.0	0.0	0.0	0.0	0.0	28,400.0	62,161.0
	Fruit	1,670.0	6,495.0	0.0	0.0	1,520.0	60.0	0.0	90.0	0.0	1,680.0	9,480.0
	High protein products	0.0	0.0	0.0	1,574.3	0.0	0.0	0.0	0.0	0.0	0.0	0.0
	Potatoes	88.0	6,435.0	0.0	0.0	88.0	0.0	0.0	0.0	0.0	230.0	8,437.0
	Processed Products	9,300.0	0.0	0.0	0.0	9,300.0	0.0	0.0	0.0	0.0	11,490.0	0.0
	Rice	0.0	0.0	0.0	4,687.4	0.0	0.0	0.0	0.0	0.0	0.0	0.0
	Sugar	0.0	0.0	0.0	229.0	0.0	0.0	0.0	0.0	0.0	0.0	0.0
	Wheat and wheat flour (in wheat equivalent)	0.0	0.0	0.0	2,901.3	0.0	0.0	0.0	0.0	0.0	0.0	0.0
합계	12,063.0	25,043.0	0.0	15,620.6	11,913.0	60.0	0.0	90.0	0.0	44,040.0	91,381.0	
'10년	Cheese (processed)	0.0	0.0	0.0	154.1	0.0	0.0	0.0	0.0	0.0	0.0	0.0
	Coarse grains	0.0	0.0	0.0	9,307.3	0.0	0.0	0.0	0.0	0.0	0.0	0.0
	High protein products	0.0	0.0	0.0	1.5	0.0	0.0	0.0	0.0	0.0	0.0	0.0
	Milk powder	0.0	0.0	0.0	3,664.0	0.0	0.0	0.0	0.0	0.0	0.0	0.0
	Other	0.0	0.0	0.0	195.0	0.0	0.0	0.0	0.0	0.0	0.0	0.0
	Processed Products	7,670.0	0.0	0.0	0.0	7,670.0	0.0	0.0	0.0	0.0	11,490.0	0.0
	Rice	0.0	0.0	0.0	5,770.8	0.0	0.0	0.0	0.0	0.0	0.0	0.0
Sugar	0.0	0.0	0.0	4.0	0.0	0.0	0.0	0.0	0.0	0.0	0.0	



	Wheat and wheat flour (in wheat equivalent)	0.0	0.0	0.0	5,583.6	0.0	0.0	0.0	0.0	0.0	0.0	0.0
	합계	7,670.0	0.0	0.0	24,680.3	76700	0.0	0.0	0.0	0.0	11,490.0	0.0
'11년	Cheese (processed)	0.0	0.0	0.0	100.3	0.0	0.0	0.0	0.0	0.0	0.0	0.0
	Coarse grains	0.0	0.0	0.0	4,477.0	0.0	0.0	0.0	0.0	0.0	0.0	0.0
	Milk	0.0	0.0	0.0	3,550.6	0.0	0.0	0.0	0.0	0.0	0.0	0.0
	Other	0.0	0.0	0.0	1,690.0	0.0	0.0	0.0	0.0	0.0	0.0	0.0
	Processed products	7,630.0	0.0	0.0	0.0	76300	0.0	0.0	0.0	0.0	0.0	0.0
	Rice	0.0	0.0	0.0	5,121.0	0.0	0.0	0.0	0.0	0.0	0.0	0.0
	Wheat and wheat flour (in wheat equivalent)	0.0	0.0	0.0	9,333.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7,630.0	0.0	0.0	24,271.9	76300	0.0	0.0	0.0	0.0	0.0	0.0

* 주: 총수출보조나 수출보조 지급 허용 규모가 미미한 경우, 제외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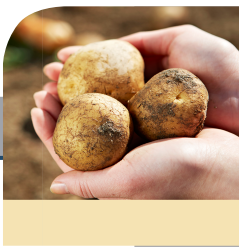
** 주: (1)-직접수출보조, (2)-재고판매, (3)-생산자 재정 보조, (4)-유통비용절감, (5)-국제운송비용
 자료: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CHE)

4)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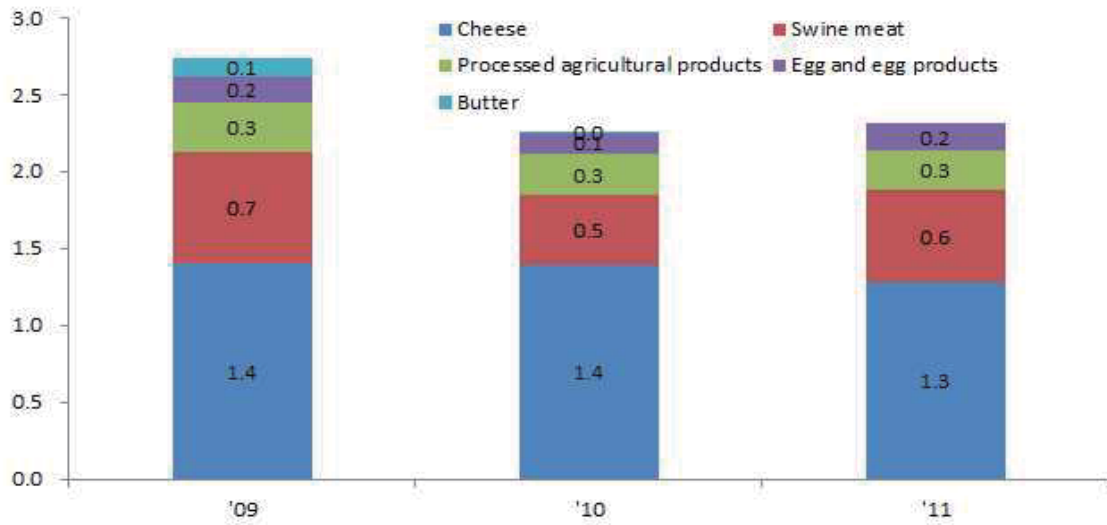
○ 총 수출보조금은 2010년 2.7억 크로네에서 2011년 전년대비 17.5% 감소한 2.26억 크로네, 2012년 전년대비 0.02% 증가한 2.31억 크로네로 다소 미미한 규모이나 증가세를 보임.

- 노르웨이는 직접 수출 보조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약 0.3억 크로네를 지급하였으며,

- 생산자 재정 보조방식으로는 매년 약 2.0억 크로네 이상을 지급함.



<그림 3-5> 노르웨이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억 크로네)



○ 식량원조는 2010년 303.5억 크로네(493.1톤)였으나, 2011년부터 식량원조 지원 사실이 없는 것으로 통보됨.

– 식량원조가 존재했던 2010년은 「Cheese」가 전체 식량원조에서 53.4%(162.1억 크로네, 245.8톤)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2010년 노르웨이는 수출보조금에 대한 지급 허용 금액이나 수량이 별도로 없었으나, 2011년부터 약 4.9억 크로네와 30만 톤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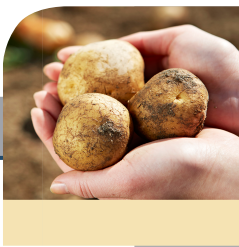
<표 3-5> 노르웨이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10~'12년)

(단위: 억 크로네, 톤)

연도	품목	수출보조		식량원조		수출보조 종류*					지급 허용 금액	지급 허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	(2)	(3)	(4)	(5)		
'10년	Bovine meat	0.0	0.0	15.0	35.0	0.0	0.0	0.0	0.0	0.0	0.0	0.0
	Butter	0.1	2,214.6	58.7	53.2	0.0	0.0	0.1	0.0	0.0	0.0	0.0
	Cheese	1.4	12,381.5	162.1	245.8	0.0	0.0	1.4	0.0	0.0	0.0	0.0
	Egg and egg products	0.2	1,129.8	15.8	17.2	0.0	0.0	0.2	0.0	0.0	0.0	0.0
	Fruit and vegetables	0.0	0.0	6.6	0.6	0.0	0.0	0.0	0.0	0.0	0.0	0.0
	Honey	0.0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Poultry meat	0.0	0.0	0.2	0.5	0.0	0.0	0.0	0.0	0.0	0.0	0.0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0.3	0.0	0.0	36.4	0.3	0.0	0.0	0.0	0.0	0.0	0.0
	Sheep and lamb meat	0.0	0.0	6.8	17.7	0.0	0.0	0.0	0.0	0.0	0.0	0.0
	Swine meat	0.7	3,099.0	37.9	86.7	0.0	0.0	0.7	0.0	0.0	0.0	0.0
	Whey powder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총합계	2.7	18,824.9	303.5	493.1	0.3	0.0	2.4	0.0	0.0	0.0	0.0
'11년	Bovine 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1,497.2
	Butter	0.0	409.0	0.0	0.0	0.0	0.0	0.0	0.0	0.0	0.5	5,872.7
	Cheese	1.4	12,792.0	0.0	0.0	0.0	0.0	1.4	0.0	0.0	2.5	16,207.5
	Egg and egg products	0.1	974.0	0.0	0.0	0.0	0.0	0.1	0.0	0.0	0.2	1,577.6
	Fruit and vegetables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64.4
	Honey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4
	Poultry 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4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0.3	0.0	0.0	0.0	0.3	0.0	0.0	0.0	0.0	0.4	0.0
	Sheep and lamb 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680.7
	Swine meat	0.5	2,023.0	0.0	0.0	0.0	0.0	0.5	0.0	0.0	0.9	3,791.2
	Whey powd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3.7
	총합계	2.3	16,198.0	0.0	0.0	0.3	0.0	2.0	0.0	0.0	4.9	30,351.8
'12년	Bovine 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1,497.2
	Butt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5,872.7
	Cheese	1.3	12,096.2	0.0	0.0	0.0	0.0	1.3	0.0	0.0	2.5	16,207.5
	Egg and egg products	0.2	1,262.8	0.0	0.0	0.0	0.0	0.2	0.0	0.0	0.2	1,577.6
	Fruit and vegetables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64.4
	Honey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4
	Poultry 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4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0.3	0.0	0.0	0.0	0.3	0.0	0.0	0.0	0.0	0.4	0.0
	Sheep and lamb 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680.7
	Swine meat	0.6	2,730.7	0.0	0.0	0.0	0.0	0.6	0.0	0.0	0.9	3,791.2



Whey powd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3.7
총합계	2.3	16,089.7	0.0	0.0	0.3	0.0	2.1	0.0	0.0	4.9	30,3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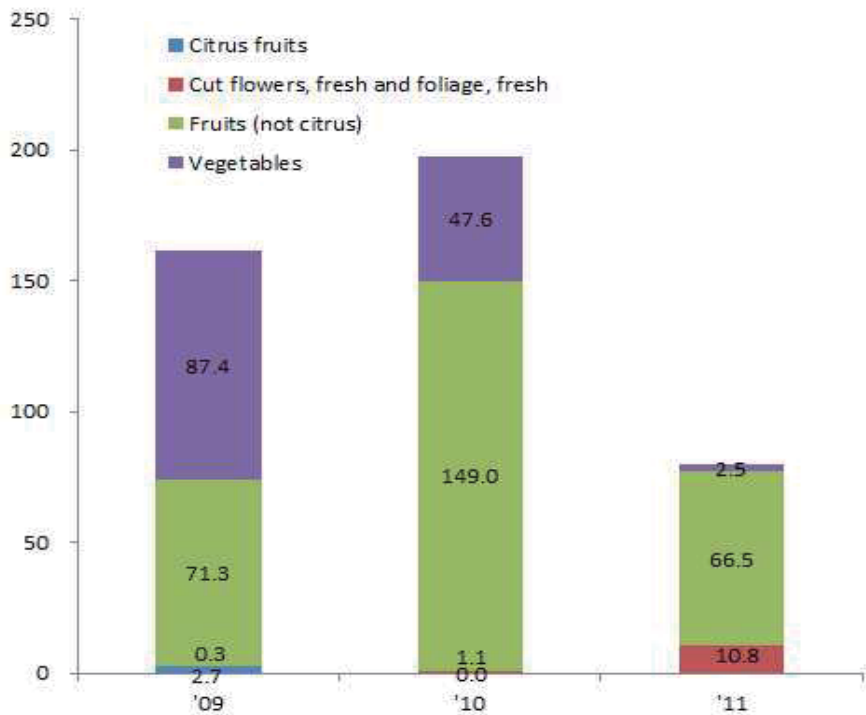
* 주: (1)-직접수출보조, (2)-재고판매, (3)-생산자 재정 보조, (4)-유통비용절감, (5)-국제운송비용
 자료: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NOR)

5)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식량원조 없이 생산자 재정 보조 방식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수출보조금은 2010년 161.7만 달러에서 2011년 전년대비 22.3% 증가한 197.7만 달러, 2012년 전년대비 59.7% 감소한 79.8만 달러로 대폭 감축됨.

- 수출보조는 대부분 「Fruits (not citrus)」, 「Cut flowers, fresh and foliage, fresh」 「Vegetables」 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 이스라엘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달러)



○ 수출보조 지급 허용 금액(수량)에서 수출보조금(수량) 소진 비율은 2010년 3.8%(1.1%), 2011년 4.6%(1.5%), 2012년 1.9%(0.1%)를 기록함.



<표 3-6> 이스라엘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10~'12년)

(단위: 만 달러, 천 톤)

연도	품목	수출보조		식량원조		수출보조 종류*					지급 허용 금액	지급 허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	(2)	(3)	(4)	(5)		
'10년	Citrus fruits	2.7	0.1	0.0	0.0	0.0	0.0	2.7	0.0	0.0	1,377.9	370.0
	Cotton	0.0	0.0	0.0	0.0	0.0	0.0	0.0	0.0	0.0	732.8	41.1
	Cut flowers, fresh and foliage, fresh	0.3	0.0	0.0	0.0	0.0	0.0	0.3	0.0	0.0	916.1	683.0
	Fruits (not citrus)	71.3	3.7	0.0	0.0	0.0	0.0	71.3	0.0	0.0	434.7	47.6
	Goose liv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6	0.3
	Vegetables	87.4	10.1	0.0	0.0	0.0	0.0	87.4	0.0	0.0	702.8	79.0
	총합계	161.7	13.9	0.0	0.0	0.0	0.0	161.7	0.0	0.0	4,263.9	1,221.0
'11년	Citrus fruits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77.9	370.0
	Cotton	0.0	0.0	0.0	0.0	0.0	0.0	0.0	0.0	0.0	732.8	41.0
	Cut flowers, fresh and foliage, fresh	1.1	0.0	0.0	0.0	0.0	0.0	1.1	0.0	0.0	916.1	0.0
	Fruits (not citrus)	149.0	3.8	0.0	0.0	0.0	0.0	149.0	0.0	0.0	434.7	47.6
	Goose liv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6	0.3
	Vegetables	47.6	4.4	0.0	0.0	0.0	0.0	47.6	0.0	0.0	702.8	79.0
	총합계	197.7	8.2	0.0	0.0	0.0	0.0	197.7	0.0	0.0	4,263.9	537.9
'12년	Citrus fruits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77.9	370.0
	Cotton	0.0	0.0	0.0	0.0	0.0	0.0	0.0	0.0	0.0	732.8	41.1
	Cut flowers, fresh and foliage, fresh	10.8	0.1	0.0	0.0	0.0	0.0	10.8	0.0	0.0	916.1	683.0
	Fruits (not citrus)	66.5	1.2	0.0	0.0	0.0	0.0	66.5	0.0	0.0	434.7	47.6
	Goose liv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6	0.3
	Vegetables	2.5	0.1	0.0	0.0	0.0	0.0	2.5	0.0	0.0	702.8	79.0
	총합계	79.8	1.3	0.0	0.0	0.0	0.0	79.8	0.0	0.0	4,263.9	1,221.0

* 주: (1)-직접수출보조, (2)-재고판매, (3)-생산자 재정 보조, (4)-유통비용절감, (5)-국제운송비용
 자료: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ISR)

6) 미국

○ 총 수출보조금은 전액 직접수출보조 방식으로 2009년 237.1만 달러 지급되었으나, 2010년에는 수출 보조금 및 수량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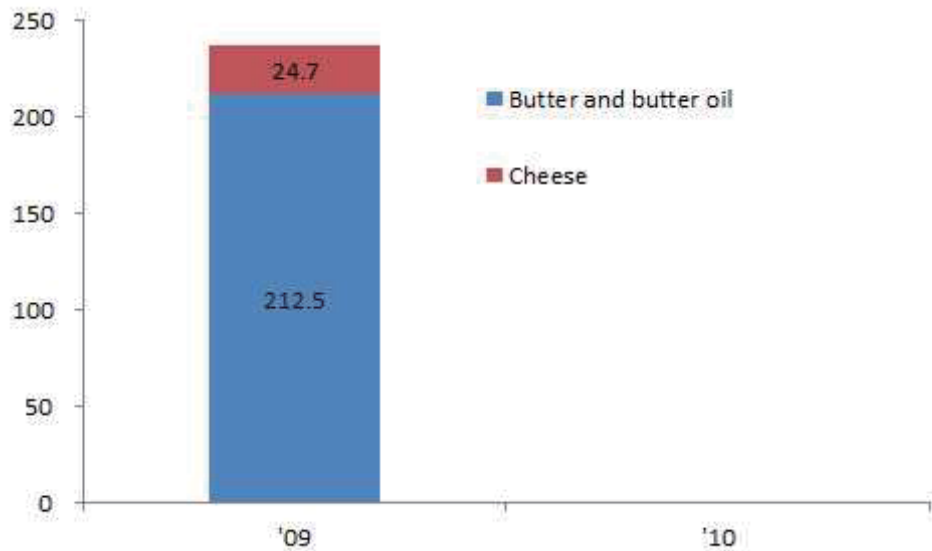
- 「Butter and Butter oil」 과 「Cheese」 에는 각각 212.5만 달러, 24.7만 달러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 「Skim milk powder」 은 수출보조금 없이 수출보조수량만 1.7만 톤으로 집계됨.

<그림 3-7> 미국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만 달러)



- 식량원조는 2009년 219.8만 톤에서 2010년 94.2% 감소한 12.8만 톤을 기록함.
 - 「Wheat and Wheat Flour」 는 2009년과 2010년 모두 식량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으며,
 - 2010년 전체적인 원조규모가 감소하면서 본 품목도 수량은 9.9만 톤에 그쳤지만, 그 비중은 77.3%를 차지함.
- 미국의 수출보조 지급 허용 총액은 2010년 5.4억 달러, 2011년 전년대비 9.5% 증가한 5.9억 달러였음.
 - 2010년 지급 허용 금액 중 수출 보조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0.4%로 나타남.



<표 3-7> 미국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9~'10년)

(단위: 만 달러, 만 톤)

연도	품목	수출보조		식량원조		수출보조 종류*					지급 허용 금액	지급 허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1)	(2)	(3)	(4)	(5)		
'09년	Butter and butter oil	212.5	1.6	0.0	0.0	212.5	0.0	0.0	0.0	0.0	3,049.7	2.1
	Cheese	24.7	0.2	0.0	7.0	24.7	0.0	0.0	0.0	0.0	363.6	0.3
	Coarse Grains	0.0	0.0	0.0	51.0	0.0	0.0	0.0	0.0	0.0	4,611.8	156.1
	Rice	0.0	0.0	0.0	19.8	0.0	0.0	0.0	0.0	0.0	236.9	3.9
	Skim Milk Powder	0.0	1.7	0.0	0.1	0.0	0.0	0.0	0.0	0.0	8,246.4	6.8
	Vegetable Oils	0.0	0.0	0.0	19.2	0.0	0.0	0.0	0.0	0.0	1,408.3	14.1
	Wheat and Wheat Flour	0.0	0.0	0.0	122.8	0.0	0.0	0.0	0.0	0.0	36,381.5	1,452.2
	합계	237.1	3.5	0.0	219.8	237.1	0.0	0.0	0.0	0.0	54,298.1	1,635.5
'10년	Bovine 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82.2	1.8
	Butter and butter oil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49.7	2.1
	Cheese	0.0	0.0	0.0	0.0	0.0	0.0	0.0	0.0	0.0	363.6	0.3
	Coarse Grains	0.0	0.0	0.0	0.0	0.0	0.0	0.0	0.0	0.0	4,611.8	156.1
	Eggs (dozen)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0.4	692.0
	Live dairy cattle (head)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88.1	1.1
	Other Milk Products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	0.003
	Pig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49.7	0.04
	Poultry meat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55.5	2.8
	Rice	0.0	0.0	0.0	2.5	0.0	0.0	0.0	0.0	0.0	236.9	3.9
	Skim Milk Powder	0.0	0.0	0.0	0.0	0.0	0.0	0.0	0.0	0.0	8,246.4	6.8
	Vegetable Oils	0.0	0.0	0.0	0.3	0.0	0.0	0.0	0.0	0.0	1,408.3	14.1
Wheat and Wheat Flour	0.0	0.0	0.0	9.9	0.0	0.0	0.0	0.0	0.0	36,381.5	1,452.2	
합계	0.0	0.0	0.0	12.8	0.0	0.0	0.0	0.0	0.0	59,436.2	2,333.1	

* 주: (1)-직접수출보조, (2)-재고판매, (3)-생산자 재정 보조, (4)-유통비용절감, (5)-국제운송비용
 자료: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US)



나. 수출보조금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⁷⁾

1) 한국

○ 한국은 비용절감조치 방식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수출 보조액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288.8억 원, 2008년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326.8억 원을 기록함.

– 총 수출 보조 수량 역시 2008년 전년대비 21.0% 증가한 138만 톤을 기록함.

☞ 총 수출 보조 수량 : '05년 11만톤 → '06년 10.2만톤(△7.3%) → '07년 11.4만톤(11.8%↑)

○ 한국은 1995년도부터 「Fruits」, 「Flowers」에 대해서 꾸준히 유통비 및 운송비 등의 비용절감조치에 해당하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왔음.⁸⁾

– '99년에는 「Kimchi」, 「Vegetables」, 「Livestock products」, '07년은 「Grain and processed food」, '08년에는 「Traditional liquor」가 수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

○ 2005년~2008년까지 전체 수출보조금에서 비중이 큰 품목은 「Fruits」, 「Vegetables」 순임.

– 2005년~2008년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품목은 「Fruits」로 약 100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전체 수출보조금액에서 30% 이상을 차지함.

– 「Fruits」에 지급하는 보조금액은 2007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조 수량은 여전히 3.7~3.8만 톤을 유지함.

– 2008년 「Vegetables」에 대한 보조금액은 전년대비 52.6% 증가한 110.2억 원, 보조 수량은 전년대비 70.4% 증가한 4.6만 톤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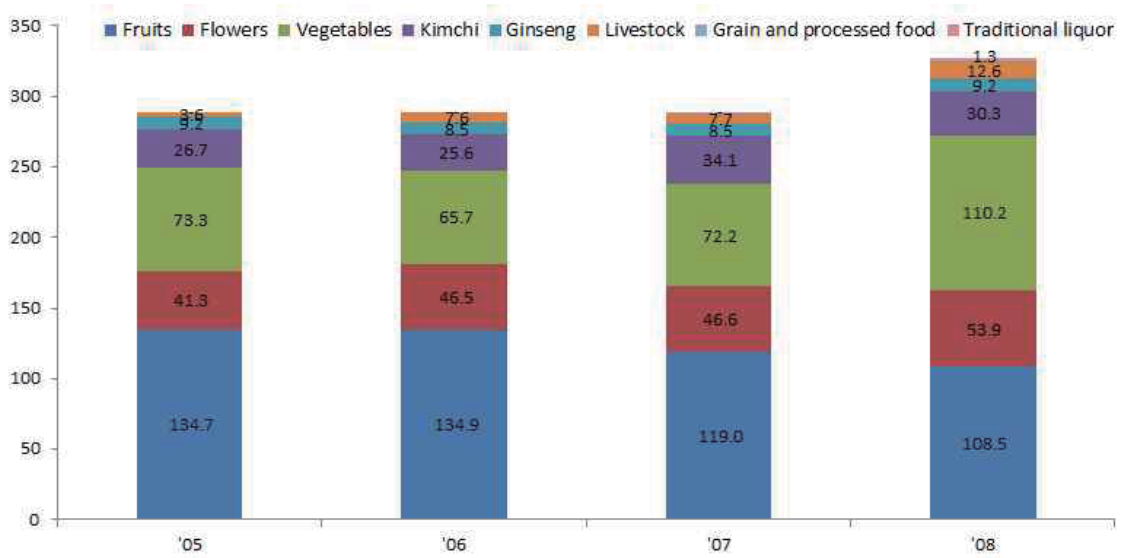
– 또한, 「Vegetables」은 보조금액과 물량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2008년 전체 수출 보조금액에서 33.7%, 물량에서는 33.3%의 비중을 차지함.

7) UR 협상 타결 당시 수출보조 감축 의무가 없는 일부 국가들 가운데 수출보조를 지급하는 국가로 개도국에 해당하여 수출보조 감축 의무 국가가 아닌 것으로 분류됨. 또한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수출보조 지급 실적 통보문서 양식에서 수출보조 지급 허용 금액 및 수량에 대하여 기술하는 항목이 별도로 없음.

8) 농업협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개도국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임.



<그림 3-8> 한국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억 원)



<표 3-8> 한국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5~'08년)

(단위: 억 원, 만 톤)

연도	품목	총 수출 보조액	총 수출 보조 수량
'05년	Fruits	134.7	3.7
	Flowers	41.3	0.9
	Vegetables	73.3	3.8
	Kimchi	26.7	2.1
	Ginseng	9.2	0.1
	Livestock	3.6	0.4
	합계	288.8	11.0
'06년	Fruits	134.9	3.8
	Flowers	46.5	0.9
	Vegetables	65.7	2.7
	Kimchi	25.6	1.7
	Ginseng	8.5	0.1
	Livestock	7.6	1.0
	합계	288.8	10.2
'07년	Fruits	119.0	3.8
	Flowers	46.6	1.1
	Vegetables	72.2	2.7



	Kimchi	34.1	2.7
	Ginseng	8.5	0.1
	Livestock	7.7	0.8
	Grain and processed food	0.7	0.2
	합계	288.8	11.4
'08년	Fruits	108.5	3.8
	Flowers	53.9	1.2
	Vegetables	110.2	4.6
	Kimchi	30.3	2.4
	Ginseng	9.2	0.1
	Livestock	12.6	1.4
	Grain and processed food	0.8	0.2
	Traditional liquor	1.3	0.1
	합계	326.8	13.8

자료: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KOR)

2) 인도

○ 인도는 비용절감조치와 운송보조방식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 전년대비 59.3% 증가한 101.9백만 달러로 상승세를 보임.

☞ 총 수출 보조액: '06년 10.7백만 달러 → '07년 28.6백만 달러(165.6% ↑) → '08년 64.0백만 달러(123.8% ↑)

○ 총 수출 보조 수량 역시 2008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 전년대비 23.5% 감소한 35.4만 톤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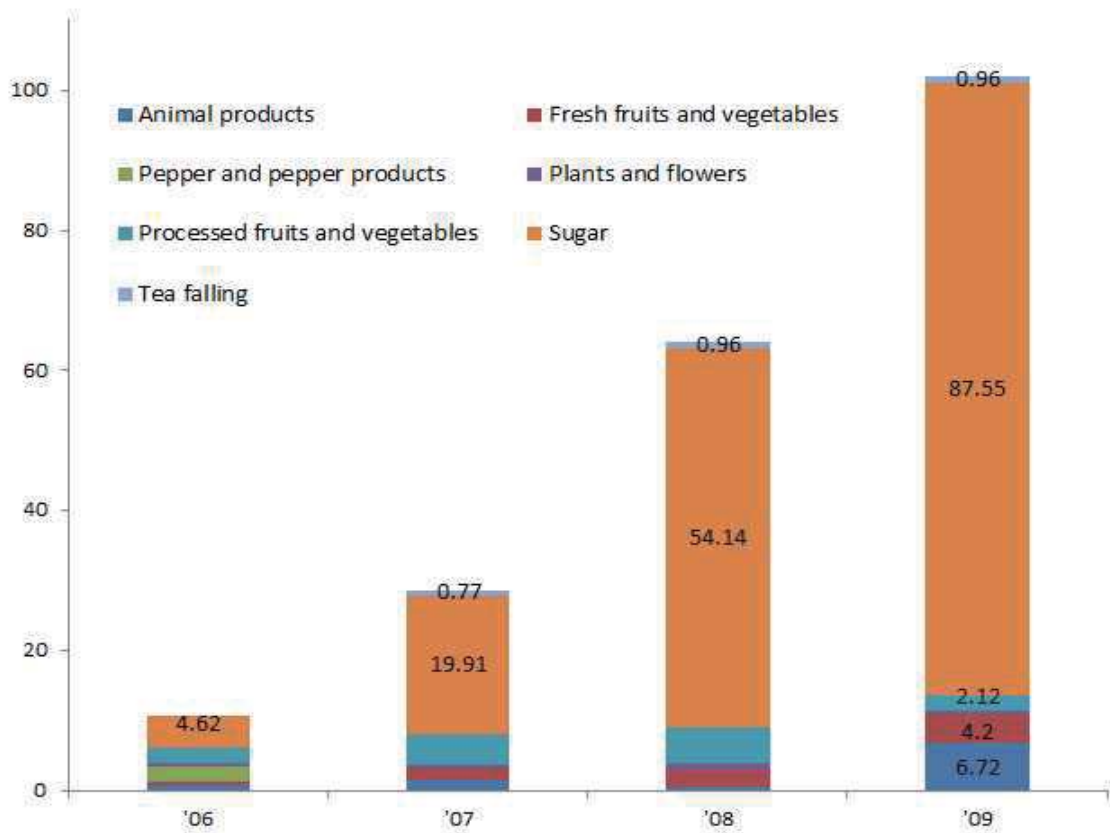
☞ 총 수출 보조 수량 : '06년 28.0만톤 → '07년 85.0만톤(202.9% ↑) → '08년 463.3만톤(445.1% ↑)

○ 인도는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9.2백만 달러 규모 이상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Sugar」 에 지급하는 수출보조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Sugar」에 지급되는 수출보조금은 매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보조금의 80% 이상을 차지함.
- 2009년 들어 「Animal products」에 지급된 수출보조금은 전년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6.7백만 달러를 기록함.

<그림 3-9> 인도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백만 달러)



<표 3-9> 인도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6~'09년)

(단위:백만달러,톤)

연도	품목	총 수출 보조액	총 수출 보조 수량
2006	Animal products	0.8	12,000
	Fresh fruits and vegetables	0.55	1,700
	Pepper and pepper products	2.04	18,968
	Plants and flowers	0.55	350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2.21	9,000
	Sugar	4.62	238,666



	합계	10.77	280,684
2007	Animal products	1.51	19,500
	Fresh fruits and vegetables	1.6	15,100
	Pepper and pepper products	0.11	0
	Plants and flowers	0.53	320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17	16,900
	Sugar	19.91	776,972
	Tea falling*	0.77	21,270
	합계	28.6	850,062
2008	Animal products	0.58	10,100
	Fresh fruits and vegetables	2.43	19,800
	Plants and flowers	0.9	650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5	17,600
	Sugar	54.14	4,557,629
	Tea falling*	0.96	27,930
	합계	64.01	4,633,709
2009	Animal products	6.72	61,350
	Fresh fruits and vegetables	4.2	34,200
	Plants and flowers	0.44	340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2.12	7,460
	Sugar	87.55	3,411,654
	Tea falling*	0.96	27,930
	합계	101.99	3,542,934

*주 : under ITC HS code 0902

자료: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KOR)

3) 멕시코

○ 멕시코는 직접 수출보조 방식으로 1997년 109.2백만 달러, 1998년 13.5백만 달러, 1999년 4.4백만 달러를 지급함.

○ 2000년부터는 개도국에 해당하는 수출보조방식인 비용절감조치와 운송보조방식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수출 보조액은 2007년 전년대비 2.7%



감소한 21.3백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임.

☞ 총 수출보조액(백만달러): '04년 3.1 → '05년 14.3(361.3% ↑) → '06년 21.9(5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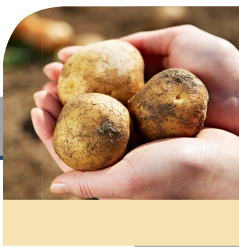
- 총 수출 보조 수량은 2007년 전년대비 0.9% 증가한 538.9 천 톤을 기록함.

☞ 총 수출보조수량(천톤) : '04년 192.6 → '05년 544.0(182.5% ↑) → '06년 534.0(△1.8%)

○ 멕시코는 2004년도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Trigo」와 「Maíz」 두 품목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지급함.

<그림 3-10> 멕시코의 품목별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백만 달러)





<표 3-10> 멕시코의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04~'07년)

(단위: 백만 달러, 천톤)

연도	품목	총 수출 보조액	총수출보조수량
2004	Trigo	3.1	192.6
	합계	3.1	192.6
2005	Trigo	14.3	544
	합계	14.3	544
2006	Maíz	3.7	95.2
	Trigo	18.2	438.8
	합계	21.9	534
2007	Maíz	7.6	228.1
	Trigo	13.7	310.8
	합계	21.3	538.9

자료: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MEX)

4) 스리랑카

- 스리랑카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1997년 8.857루피를 지급함.⁹⁾
- 이후 수출보조금 지급 실적에 대한 통보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5) 모리셔스

- 모리셔스는 2007년(3,119,669루피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는 수출보조 지급실적에 대한 통보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¹⁰⁾

9)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LKA)

10)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MUS)



6) 모로코

- 모로코는 2008년부터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¹¹⁾

7) 태국

- 태국은 1998년부터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함.¹²⁾

8) 파키스탄

- 파키스탄은 1995년부터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함.¹³⁾

9) 튀니지

- 튀니지는 1995년부터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함.¹⁴⁾

3. 시사점

가. 수출보조 의무 감축 국가들의 자발적인 수출보조 지급 감축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홍콩각료회의, 발리패키지 등을 거치며 수출보조금을 감축하자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였으며, 자발적인 보조금 감축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는 1995년 19개국에서 2011년 기준 4개국으로 감소함.

11)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MAR)

12)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THA)

13)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PAK)

14) WTO 수출보조금 지급 통보 문서(G/AG/N/TUN)



<표 3-11> 국가 및 연도별 수출보조 지급 여부

국가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Australia	X	X	X	O	O	X	X	X	X	X	X	X	X	X	X	X	X
Barbados	X	X	X	X	X	X	X	O	O	O	O	O	-**	-	-	-	-
Venezuela*	X	X	X	X	X	X	X	X	X	X	X	-	-	-	-	-	-
Canada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Colombia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	-
Cyprus	O	O	O	O	O	O	O	O	O	O	-	-	-	-	-	-	-
Czech Republic	O	O	O	O	O	O	O	O	O	O	-	-	-	-	-	-	-
European Union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
Hungary	O	O	O	O	O	O	O	O	O	O	-	-	-	-	-	-	-
Iceland	O	O	O	-	-	-	-	-	-	-	-	-	-	-	-	-	-
India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
Israel	O	O	O	O	O	X	O	O	O	O	O	O	X	O	O	O	O
Korea, Republic of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	-
Mexico	X	X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Morocc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New Zealand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Norway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Pakistan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Panama	-	-	O	O	O	O	O	O	O	-	-	-	-	-	-	-	-
Poland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Slovak Republic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South Africa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X
Sri Lanka	X	X	O	-	-	-	-	-	-	-	-	-	-	-	-	-	-
Switzerland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Thailand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Tunisia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Turkey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X
United States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
수출보조 지급 국가 수	19	18	21	19	19	16	15	16	16	15	10	10	8	8	7	4	4

* 주 :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 주 : "-"표시는 해당 연도의 통보문서 없음을 의미함.

자료: WTO 국가별 수출보조 지급 실적 통보문을 재정리

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수출보조 허용 수준의 유지

○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의 수출보조 허용금액과 수량은 2001년부터 변동이 거의 없음.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재차 거듭된 협상에서도 합의된 사항이 없어 수출보조 지급 허용 수준이 2001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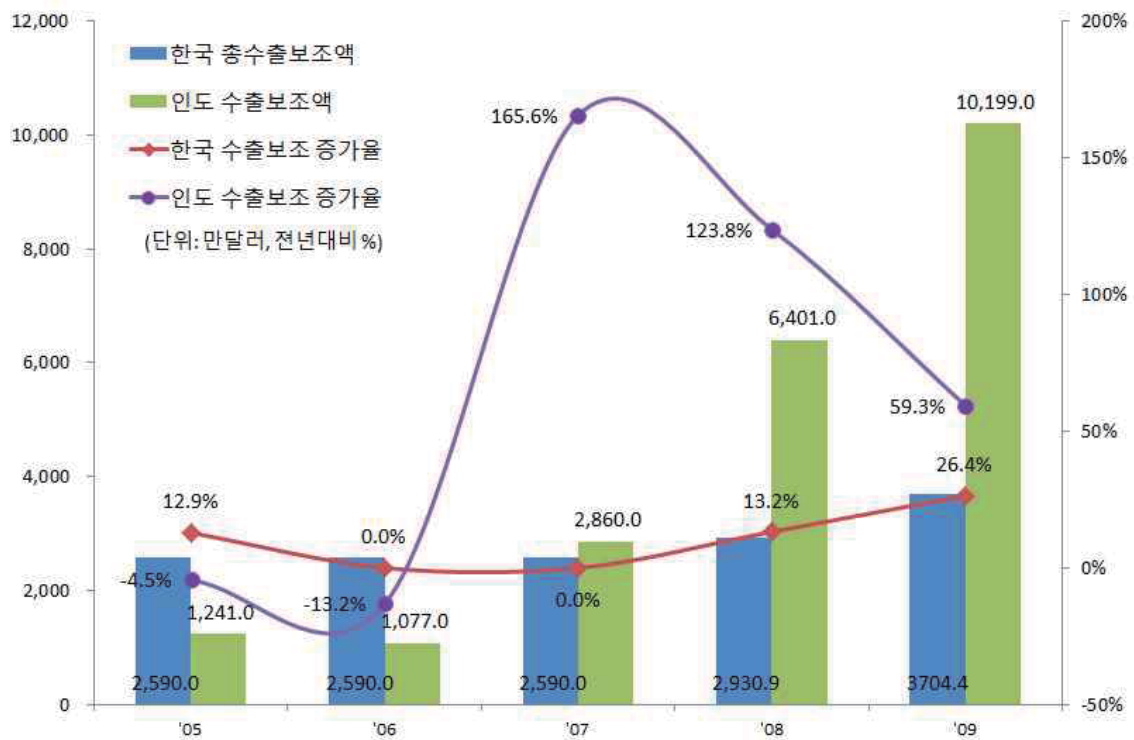


- 다만 호주, 뉴질랜드, 파나마 등은 수출보조 허용수준이 존재하지 않는 수출보조에 대한 완전 철폐를 최근 시행함.

다. 개도국들의 수출보조 규모 증가

○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들의 경우, 수출보조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소세를 보이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한국과 인도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됨.

<그림 3-11> 한국과 인도의 수출보조 증가율



자료: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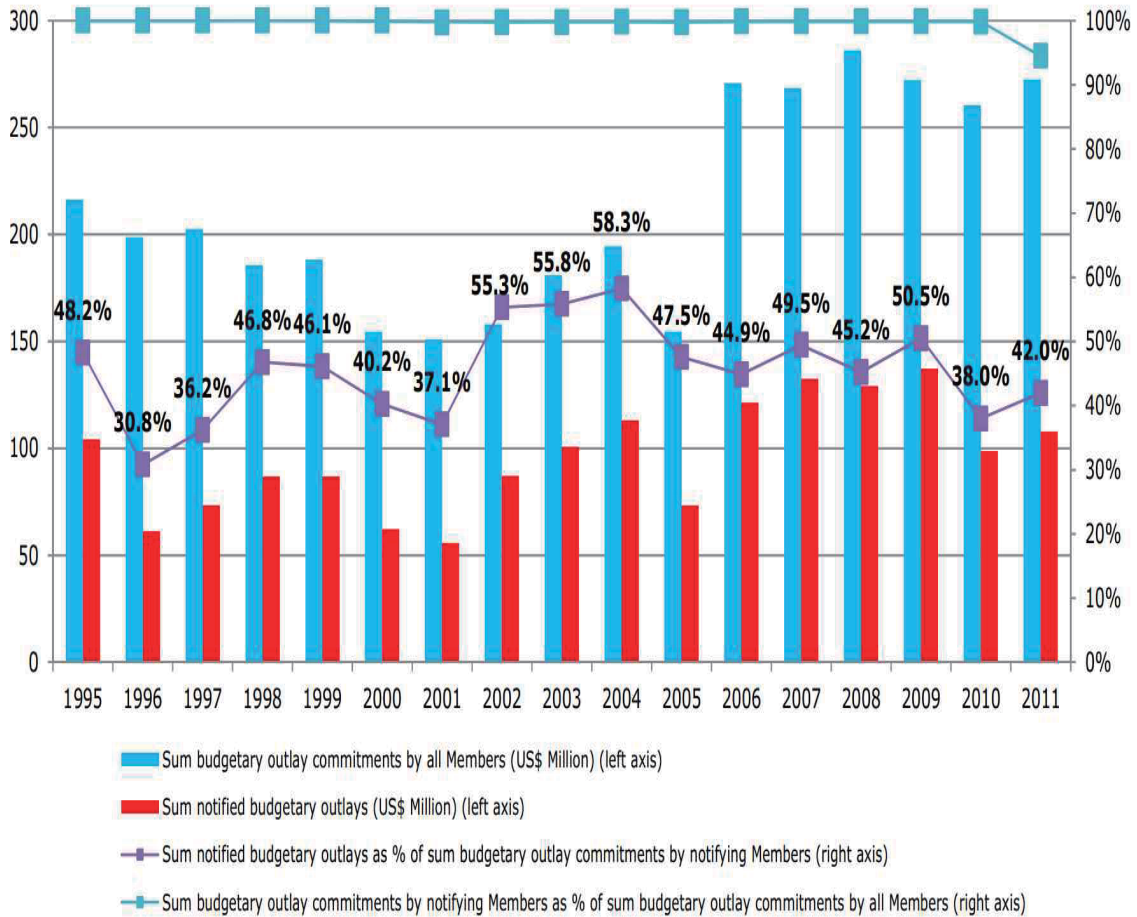
라. Poultry meat의 높은 수출보조 규모 지속

○ 가금류의 수출보조 지급률은 다른 품목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임.



-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비롯하여 까다로운 검역 및 수입절차, 수출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가금류의 수출이 어려워져 수출보조로서 농가를 대폭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3-12> WTO 회원국의 Poultry meat에 대한 연도별 수출보조 지급허용 규모와 실제 지급 규모



자료: WTO G/AG/W/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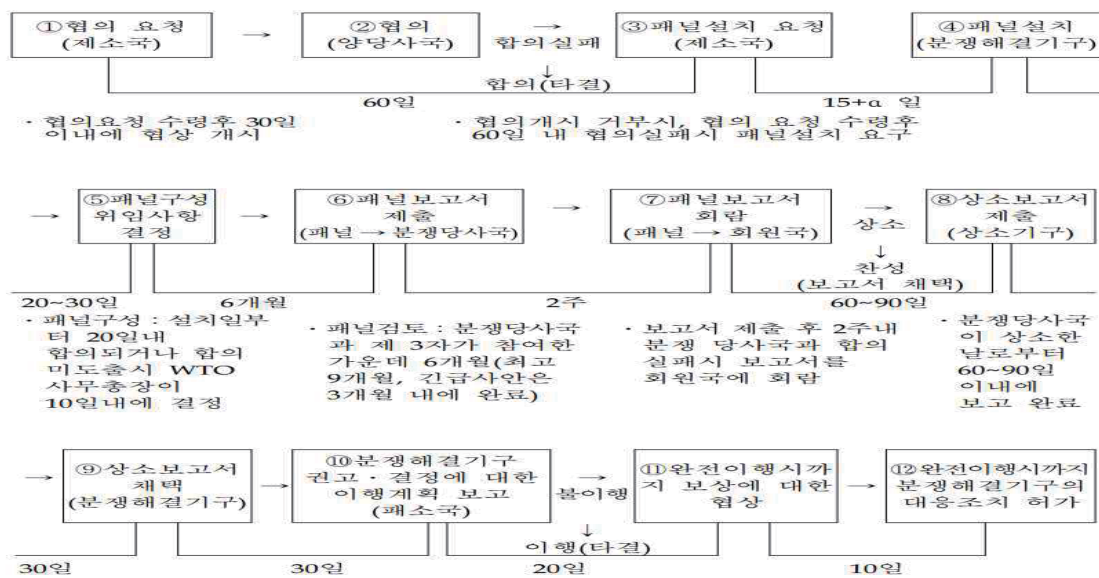


II. 수출보조금 분쟁 사례

1. 수출보조금 분쟁 개요

- WTO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¹⁵⁾)’를 마련하여 회원국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 DSU와 더불어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¹⁶)를 통해서도 협정이나 약속을 어긴 국가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함.
- 분쟁해결기구는 제소가 요청되면 주선, 조정,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혹은 협의, 패널, 이행단계와 같은 일반적인 해결 방법 등으로 세계무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 분야는 거둬진 논의를 통해 수출보조금 감축에 합의하였고 회원국들이 수출보조금 감축을 긍정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관련 분쟁 제소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없음.

<그림 3-13> WTO 분쟁 해결절차



자료: WTO 농업보조금(농림축산식품부)

15)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DSU).

16) 국제간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산하에 설치된 국제기구



2. 주요 사례¹⁷⁾

가. US-Cotton subsidies 사건

(1) 사건개요

- 이 사건은 미국 면화 생산자, 사용자, 수출자 등에게 제공되는 각종 국내 보조제도에 대해 브라질이 농업협정상 용인되지 않는 보조이며, 보조금협정에 위반되는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이라고 주장한 사건임.

(2) 농업협정 위반 여부

가) 농업협정 13조 나항(2호) 대상 여부

- 브라질은 면화에 대한 미국의 각종 국내보조가 농업협정 13조 나항(2)호에 의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동 국내보조는 13조 나항(2)에 의거, 보조금 협정 관련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고 반박함.

나) 허용보조(부속서 2항) 해당 여부

- 농업협정 부속서 2는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국내보조인 허용 보조의 요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이 중 6조 나항 비연계소득보조는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 연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 또는 생산 형태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브라질은 2002년 미국 농업법에 따른 면화 보조금은 기준년도 이후 면화 생산자들의 과일, 채소 등의 식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되어 생산자들이 택한 생산

17) 분쟁사례는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김승호, 법영사, 2007)」과 「WTO 농업보조금(농림축산식품부, 2009.1)」, 「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 분석과 시사점(송주호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6)」에서 일부 인용 및 재인용함.



형태에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부속서 2의 6조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패널은 브라질의 주장을 인정하여 미국 면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기준 기간 이후 생산자가 취한 생산형태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농업협정 부속서 2의 6조 나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미국은 특정 작물의 재배에 관한 부정적 지침, 즉 특정 작물의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생산 형태와 관련되는 보조가 아니라고 상소함.
- 상소기구는 부속서 2의 6조나 항은 문제가 되는 지불 금액과 동 보조금 수혜자가 행한 생산량 또는 생산 형태 간의 어떠한 관계도 절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상소기구는 문제가 된 보조금 제도는 그 수혜자자 식재한 생산 형태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인하였으며,
 - "관련된다(related to)"의 통상적인 의미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질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함.
- 이상을 기초로 상소기구는 동 면화보조금이 6조나 항에 합치되지 않으며 13조 가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함.

나. Canada-Milk/Dairy 사건

(1) 사건개요

- 이 사건은 캐나다 우유 생산자가 해외 수출용 우유 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해외



수출용 우유는 시중 가격보다 염가로 공급하여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므로 농업협정 제9조 1항, 3조 3항, 10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건임.

(2) 농업협정 위반 여부

가) 농업협정 9조 1항 다호 위반 여부

- 패널은 우유 가공업자의 상업 수출용 우유 구매 가격은 국내 시장 판매용 우유 구매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농업협정 9조 1항 다호상의 보조금 지불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 그러나 상소기구는 보조금 지불의 존재여부는 객관적인 기준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는 비교 준거는 총 생산비가 되어야 하는데 동 사건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가 부족하여 WTO에 합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됨.

나) 농업협정 3조 3항, 8조 위반 여부

- 패널은 해외 수출용 우유가 9조 1항 다호상의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해외 수출용 우유를 고려시 수출 물량이 양허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게 되어 3조 3항 위반이라고 봄.
- 그러나 상소기구는 9조 1항 상의 지불이 존재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농업협정 3조 3항을 위반하였다는 판정도 번복함.
- 패널은 캐나다가 3조 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자연히 8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9조 1항 상의 지불이 존재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므로 농업협정 8조를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번복함.

제4장. 우리나라의 수출보조금 지급의 국제법적 근거

I. 수출보조금 지급 관련 WTO 농업협정 내용 분석

1. 농업협정상 수출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 WTO는 정부 지원을 3가지 협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음. 첫째, 농업부문에서의 농업보조금은 농업협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음. 둘째, 비농업부문에서 금지대상, 상계조치대상 및 허용대상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음. 셋째, 서비스부문에서의 정부보조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규율하고 있음.

○ 농업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보조금은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보조(Export Subsidy)로 분류되며,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이 여타 협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

- 농업보조금의 정의: WTO 농업협정에서는 개별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입 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생산과 농업발전을 위해 취해지는 모든 형태의 국내정책을 농업 보조정책으로 보고, 동 정책에 소요된 비용을 농업보조금으로 산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 둘째, 생산요소가격 하락을 통한 한계비용 감소

☞ 셋째, 생산 촉진, 통제 또는 전작 등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

☞ 넷째,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물량을 조절하는 경우

☞ 다섯째, 수요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조

☞ 여섯째, 농민, 농업, 농산물 소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 수출보조는 농업협정문 제 1조(e)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수출보조의 구체적인 유형은 농업협정문 제9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음.

- 농업협정 제1조 (e): 수출보조금은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를 포함하여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를 말함.

○ 농업협정 제9조 1항에 언급된 수출보조의 유형:

- 첫째,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 둘째, 공공재고 수출을 위한 저가판매 또는 처분

☞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으로 판매 또는 처분하는 것

- 셋째, 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하의 재정에 의한 보조

☞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 넷째,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지원

☞ 출하, 등급 및 기타 부대비용, 국제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지급(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 괄호()내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보조는 허용보조로 분류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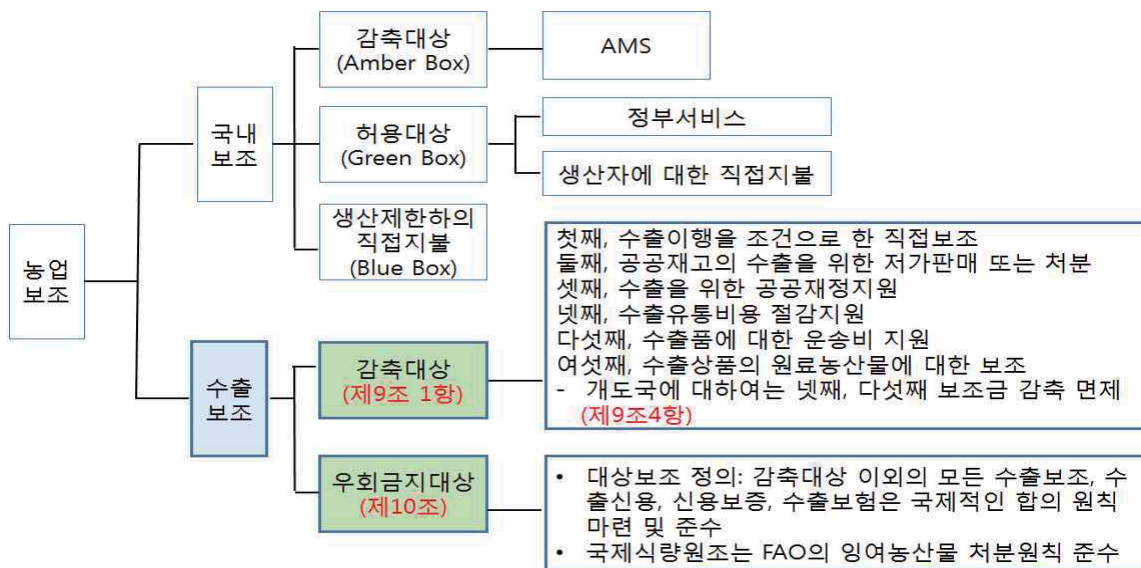
- 다섯째,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내 운송비 지원

☞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지원



- 여섯째, 수출상품에 포함된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 ☞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 보조금으로 이는 수출용 가공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
- 단, 농업협정 제 9조 4항에 따라 개도국의 경우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넷째)와 수출농산물에 대한 운송비 지원(다섯째) 형태의 수출보조는 감축의무에서 면제됨. 이는 개도국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항임.
- 농업협정 제8조에서는 농업협정과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수출경쟁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수출보조의 우회금지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WTO 농업협정에 의하면, 수출 보조금은 감축해야하는 대상이며 감축 약속을 우회하지 말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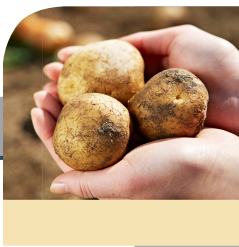
<그림 4-1>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금 분류체계





<표 4-1> 수출보조금 정의 및 유형 관련 농업협정 조항

조항	내용 및 해석
제 1 조 (e)항	<p>"export subsidies" refers to subsidies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ncluding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Article 9 of this Agreement:</p> <p>☞ "수출보조금"란 본 협정문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출보조금을 포함하여 수출수행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p>
제 9 조 1항	<p>(a) the provision by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of direct subsidies, including payments-in-kind, to a firm, to an industry, to producers of an agricultural product, to a cooperative or other association of such producers, or to a marketing board, contingent on export performance:</p> <p>☞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구가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원료 농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나 조합 또는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에 대하여 제공하는 현물보상을 포함한 직접보조</p> <p>(b) the sale or disposal for export by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of non-commercial stocks of agricultural products at a price lower than the comparable price charged for the like product to buyers in the domestic market:</p> <p>☞ 비상업용 공공재고를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시장에서 구매자가 동종상품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 기구에 의한 판매 또는 처분</p> <p>(c) payments on the export of an agricultural product that are financed by virtue of governmental action, whether or not a charge on the public account is involved, including payments that are financed from the proceeds of a levy imposed on the agricultural product concerned or on an agricultural product from which the exported product is derived:</p> <p>☞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p> <p>(d) the provision of subsidies to reduce the costs of marketing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ther than widely available export promotion and advisory services) including handling, upgrading and other processing costs, and the costs of international transport and freight:</p> <p>☞ 출하, 등급 및 기타 부대비용, 국제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지급(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p> <p>(e) internal transport and freight charges on export shipments,</p>



	<p>provided or mandated by governments, on terms more favourable than for domestic shipments:</p> <p>☞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운송비를 국내수송물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는 경우</p> <p>(f) subsidies on agricultural products contingent on their incorporation in exported products.</p> <p>☞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p>
<p>제9조 4항</p>	<p>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commitments in respect of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subparagraphs (d) and (e) of paragraph 1 above, provided that these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ircumvent reduction commitments.</p> <p>☞ 이행기간동안 개도국에 대해서는 위의 1항 (d), (e)에 해당하는 수출보조가 감축약속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 감축 약속 이행의무를 면제한다.</p>

2. 농업협정상 수출보조금 감축 수준

- 농업협정 제9조 2항(a)호는 양허표에 명시된 이행 기간 각 연도별 수출보조금 약속수준과 관련된 수출보조금의 범위를 언급하고 있음.
 - 제9조 2항(a)호: 제9조 2항(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이행 기간 중 각 연도별 수출보조금 약속수준은 제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의미함.
 - (i) 재정지출 감축약속의 경우, 동 연도 내 관련 농산물 또는 농산물 품목군에 할당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을 위한 재정지출의 최대수준, 그리고
 - (ii) 수출물량 감축약속의 경우, 동 연도 내 수출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이 품목군의 최대물량
- 농업협정 제9조 2항(b)호는 품목 또는 품목 군에 대한 해당 연간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수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조건(i~iii)과, 수출물량 및 재정지출액의 약속감축 수준(iv)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9조 2항(b)호: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회원국은 이행기간의 제2차 년도에서



제5차 년도의 기간 중 어느 특정년도에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품목 또는 품목군에 대한 해당 연간 약속 수준을 초과하여 위의 제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

- (i) 이행 기간 초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기간 중 이러한 보조금을 위한 누적된 재정 지출액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지출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누적액을 재정지출의 기준기간 수준의 3%이상 만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ii) 이행기간 초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기간 중 이러한 수출보조금 혜택을 받고 수출되는 누적물량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물량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누적물량을 기준기간 물량의 1.75% 이상 만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iii) 전체 이행기간 중 이러한 수출보조금을 위한 재정지출액의 누적액과 수출보조금 혜택을 받는 물량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iv) 이행 기간 종료시의 수출보조금을 위한 선진 회원국의 재정지출액 및 이러한 보조혜택을 받는 물량이, 각각 1986~1990의 기준기간 수준의 64%와 79%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동 비율이 각각 76% 및 86%가 됨.

○ 농업협정 제9조 3항에서는 수출보조금 지급 범위확대는 제한적이며, 양허표에 명시된 품목에 한정하여 수출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제9조 3항: 수출보조금 지급의 범위확대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약속은 양허표에 명시된 바와 같음.

○ 농업협정 제11조에는 원료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수준을 언급하고 있음.

- 제11조: 원료 1차 농산물에 지급되는 단위당 보조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1차 농산물 자체의 수출에 지급되는 단위당 수출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농업협정상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 방지

- 농업협정 제10조 1항은 수출보조금 감축대상인 6가지 유형 이외의 모든 수출보조가 수출보조금 약속을 우회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임.
 - 제10조 1항: 제9조 1항에 열거되지 않은 수출보조금이 수출보조금 약속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비상업적 거래도 이러한 약속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농업협정 제10조 2항에는 수출신용, 신용보증, 수출보험이 국제적인 합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합의 이후에는 합의된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제10조 2항: 회원국은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의 제공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규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동 규율에 합치하여서만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

- 농업협정 제10조 3항은 수출보조금 감축 약속 수준을 초과한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해당 회원국이 입증해야한다는 내용임.
 - 제10조 3항: 감축약속 수준을 초과한 수출물량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원국은, 당해 수출물량에 대해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 농업협정 제10조 4항은 국제식량원조 거래는 식량농업기구(FAO)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상공여의 형태여야 한다는 내용임.
 - 제10조 4항: 국제식량원조 공여국인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함.



- (a)호: 국제식량원조의 제공이 수혜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함.
- (b)호: 금전화된 양국간의 식량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식량원조 거래는 적절한 경우 통상관매요건제도를 포함하여 식량농업기구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 무의 원칙"에 따라 수행됨.
- (c)호: 이러한 원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한 무상공여의 형태이거나 1986년 식량원조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조건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특혜적인 조건으로 제공됨.



II. 수출보조금 지급 관련 DDA 협상 주요 합의내용

1. 2004년 WTO 일반이사회 결정 내용

- 2004년 WTO 일반이사회결정(July Package - WT/L/579)에서는 “모든 형태의 농업분야 수출보조금을 향후 합의하는 시점까지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결정문 17, 18항 참조). 하지만, 이와 같은 수출보조금 철폐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정 제9조 4항의 개도국 특별대우는 “추후 협상하여 정하는 합리적 기간 동안” 계속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결정문 23항 참조).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Annex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Modalities in Agriculture**

...

EXPORT COMPETITION

17.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calls for "reduction of, with a view to phasing ou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s an outcome of the negotiations, Members agree to establish detailed modalities ensuring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by a credible end date.

End Point

18. The following will be eliminated by the end date to be agreed:

- Export subsidies as scheduled.
-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with repayment periods beyond 180 days.
-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with repayment periods of 180 days and below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disciplines to be agreed. These disciplines will cover, inter alia, payment of interest, minimum interest rates, minimum



premium requirements, and other elements which can constitute subsidies or otherwise distort trade.

- Trade distorting practices with respect to exporting STEs including eliminating export subsidies provided to or by them, government financing, and the underwriting of losses. The issue of the future use of monopoly powers will be subject to further negotiation.
- Provision of food aid that is not in conformity with operationally effective disciplines to be agreed. The objective of such disciplines will be to prevent commercial displacement.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regards the provision of food aid by Members, including related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issues, will be addressed in the negotiations. The question of providing food aid exclusively in fully grant form will also be addressed in the negotiations.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23. Developing countries will continue to benefit from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9.4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for a reasonable period, to be negotiated, after the phasing out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implementation of all disciplines identified above are completed.

2.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 선언문의 내용

-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 선언문에서는 농업분야 수출보조금 철폐 시한을 2013년 말로 합의하였음. 또한 개도국 수출보조금 특례혜택이 부여되는 기간은 수출보조금 철폐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하였음.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8 December 2005 (WT/MIN(05)/DEC)

...

6. We agree to ensure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13. This will be achieved in a progressive and parallel manner, to be specified in the modalities, so that a substantial part is realized by the end of the first half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We note emerging convergence on some elements of disciplines with respect to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with repayment periods of 180 days and below.....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ll continue to benefit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9.4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for five years after the end-date for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3. 2008년 세부원칙 4차 수정안 내용

가. 양허수출보조금 약속

○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162조부터 164조까지 양허 수출보조금 감축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세부원칙 4차 수정안 162조에서는 선진회원국의 경우 양허수출보조의 재정지출과 수출물량 감축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162조: 선진회원국은 2013년 말까지 양허수출보조를 다음의 공식에 따라 철폐함.

- (a) 재정지출약속(budgetary outlay commitments)은 발효일로부터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2010년 말까지 50% 감축하고, 나머지 재정지출약속은 매년 균등 분할하여 0%로 감축하여 2013년 말에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함

- (b) 물량약속수준은 시작부터 이행기간 말까지 2003-05년 기준년도의 실제 평균 물량 수준에서 정지하는 것으로 적용함. 또한 이행 기간 동안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상품에 신규로 적용될 수출보조는 없음.

○ 세부원칙 4차 수정안 163조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양허수출보조의 재정지출과 수출물량감축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163조: 개발도상회원국은 양허수출보조 재정지출과 물량약속수준을 2016년



말까지 0%로 감축시킴으로써 해당국가의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약속함.

- 4차 수정안 164조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농업협정 제9조 4항에 언급된 개도국대우 수출보조금 지급은 2021년말 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제164조: 홍콩각료선언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은 2021년 말까지, 즉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농업에 관한 협정 제9조 4항(개도국대우 수출보조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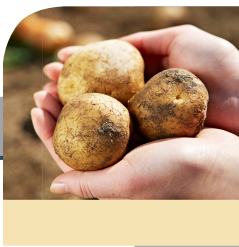
- 세부원칙 4차 수정안 165조는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165조: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은 부속서 J에 상세하게 규정된 규율에 따름.

- 부속서 J의 제1조에서는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임.

- 제1조(정의): 이 협정과 다른 대상 협정하에 다른 모든 수출보조금 의무를 준수하는 것과 함께, 회원국들은 이 조항에 적합하지 않는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그리고 보험프로그램(이하 수출금융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a) 직접적인 신용/금융, 재융자, 그리고 금리 지원으로 구성되는 직접적인 금융 지원
- (b) 수출신용보험 또는 재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포함하는 위험 표시
- (c) 수출국가의 정부가 일부 또는 모든 위험을 책임진다는 약속하에 채권자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포함하는 정부간 신용 계약



- (d) 연기된 송장과 환위험 헤지를 포함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수출신용 지원의 임의의 다른 형태
- 부속서 J의 제2조에서는 수출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2조: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업이 대신하거나 또는 다음 기업에 의해 제공된 수출금융지원에 적용됨.
 - (a) 정부 부처, 기관, 또는 법정기구
 - (b) 주식, 펀드, 대출 또는 손실 인수의 방식으로 정부 참여가 있는 수출 금융에 종사하는 금융 기관 또는 기업
 - (c) 농업수출국영무역기업
 - (d) 정부 또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대신 행동하는 은행, 다른 민간 금융, 신용 보험 또는 보증 기관
- 부속서 J의 제3조에서는 선진회원국의 최대상환기간(Maximum repayment term)과 자기자금조달(self-financing)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3조: 수출 금융 지원은 아래에 명시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a) **최대 상환 기간:** 이 협정 하에서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최대 상환 기간은, 신용의 시작시점에서 시작하고 최종 결제의 계약 날짜에 종료하는 기간으로써,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함. 선진회원국의 경우 이행 첫날 또는 2010년의 마지막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적용됨.
 - 이 협정에 계약에 서명하기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앞의 문장에서 정의된 것보다 더 긴 시간 프레임에서 운영함. 그리고 농업위원회에 통보 및 수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날짜가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이 이행되어야 함.
 - (b) **자기 자금 조달:** 앞에서 설명한 제1항 (b) (c) 및 (d)호를 포함하는 수출



신용보증, 보험 재보험 프로그램 및 다른 위험 커버 프로그램이 자기 자금 조달에 포함됨. 프로그램에서 지불된 프리미엄 요율이 이전 4년제 롤링기간동안 그 프로그램의 운영비용과 손실을 커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이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스스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함

-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앞 문장에서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본 협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대상 협정을 준수하는 것을 예외로 하지 않음. 보다 일반적으로 형성된 프로그램의 장기 운영비용과 손실을 참고하여 포함하며, 예시 목록의 항목 (J)에서는, 이전의 문장에서 언급된 역사적 롤링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음.

- 이러한 프로그램이 예시 목록의 항목 (J)의 의미 내에서 수출 보조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것들 또한 이 협정 하에서 자기 자금 조달로 간주됨.

○ 부속서 J의 제4조에서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최대상환기간(Maximum repayment term)과 자기자금조달(self-financing)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제4~5조는 특별 및 차등 대우에 대한 것임.

- 제4조: 수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개발 도상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해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음.

- (a) **최대 상환 기간:** 관련 개발 도상 회원국은, 이행시기의 첫날 또는 2013년 마지막 날 중 먼저 오는 날 이후 4년간의 단계적 기간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달성되어야 함.

- (i) 이행 첫 번째 날에 시작된 새로운 지원의 최대 상환 기간 360일이어야 함.

- (ii) 이행 2년 이후 시작된 새로운 지원의 최대 상환 기간은 270일이어야 함.

- (iii) 이행 4년 이후, 새로운 지원의 최대 상환 기간은 180일이어야 함. 해당 날짜 이후, 위 하위항인 (i)-(iii)에서 설정된 한계 하에서 기존의 지원 협정들이 있는 경우, 그들은 원래의 조건으로 수행되어야 함.

- (b) **자기 자금 조달:** 제3항(b)호에서 언급되어진 자기 자금 조달은, 개발 도상 회원국을 위해 50% 더 길어져야 함.



- 부속서 J의 제5조에서는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발도상국이 기본식품을 구입할 때 상환기간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에 대한 내용임.
 - 제5조: 상기 제3항(a)호 및 제4항(a)호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G/AG/5/Rev.8에서 나열된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발도상국은, 기본 식품 획득을 위해 360일과 540일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에 대한 허용을 포함하여 차등 및 유리한 대우가 부여되어야 함.
 - 이러한 회원국이 기본 식품의 상업적 수입에서 배제되거나 동시간대에 다자간 또는 지역적 금융기관에 의해 부여된 대출 접근이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러한 시간 프레임의 추가 확장이 제공되어야 함. 계약의 표준 모니터링 및 감시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됨.

다.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

- 세부원칙 4차 수정안 166조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166조: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은 부속서 K에 상세하게 규정된 규율에 따름.
- 부속서 K의 제1조에서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언급하고 있음.
 - 제1조: 회원국은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이 아래 명시된 규정들을 준수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이러한 규정들은 XVII 조항, XVII 조항 해석에 대한 이해, 1994년 GATT의 다른 관련 규정들, 농업협정과 다른 WTO 협정과 일치해야 함.
- 부속서 K의 제2조에서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의 요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2조(Entities): 이 조항 이하에서 규정된 일반 원칙의 목적을 위해,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은 1994년 GATT의 제 17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해에서 제공된 작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함.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제17조가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국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은 민간 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및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에 관해 1994년도 GATT에 규정된 무차별 대우의 일반원칙과 합치되도록 요구되고 있음을 유의하고,

나아가 국영무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부조치와 관련하여 1994년도 GATT 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며,

이 양해가 제17조에 규정된 실질적인 규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의 실무적인 정의에 따른 국영무역기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이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

이러한 통보요건은 정부의 사용 또는 위에 명시된 기업의 사용에 있어 직접적 또는 궁극적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달리 재판매를 위하거나 판매용 상품 생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각 회원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통보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 양해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국의 정책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통보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방식 및 동 기업의 운영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통보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3. 통보는 1960년 5월 24일 채택된 국영무역에 관한 질문서(BISD 9S/184-185)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회원국은 실제 수출 또는 수입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1항에 언급된 기업을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어떤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진 회원국은 동 문제를 관련 회원국에게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해 상품무역이사회에 역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회원국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5. 상품무역이사회를 대신하여 통보 및 역통보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된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비추어 그리고 제17조제4항(c)를 저해함이 없이, 상품무역이사회는 통보의 적정성 및 추가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작업단은 또한 접수된 통보에 비추어 국영무역에 관한 상기 질문서의 적정성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되는 국영무역기업의 범위를 검토한다. 작업반은 또한 제17조의 목적상 관련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기업간 관계의 종류 및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에 관한 예시 목록을 마련한다. 사무국은 국제무역에 관련이 있는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문서를 작업반에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작업반에의 가입은 동 작업반에의 참여 희망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작업반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며, 그 이후 최소한 1년에 1회 회합한다. 작업반은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작업반의 활동은 1994년 4월15일 채택된 통보절차에 관한 각료결정 제3절에 규정된 작업단의 활동과 조정된다.

- 부속서 K의 제3조에서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이 수행해야하는 일반원칙에 대해 언급함.
 - 제3조(Disciplines): 상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과 관련한 무역 왜곡 관행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다음을 수행 하여야 함.
 - (a) 식량원조와 수출신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상호 비례 및 병행하여 철폐함.
 - (i)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의 제1조 (e)항에 의해 정의된 수출보조금은,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에 의해 현재 제공되고 있으며, 제3조 3항하에 기존의 의무와 함께 지속됨.
 - (ii)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의 정부 자금조달, 정부 자금조달 또는 재금융 조치, 차입, 대출 또는 상업 차입 또는 시장금리 이하의 대출을 위한 정부보증에 관한 자본 또는 기타 특별한 권한 특혜
 - (iii)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이 그들의 수출판매에 의해, 비용이나 상각 또는 부채의 상각 상황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을 정부가 인수
 - (iv) 2013년까지 이러한 기업을 위한 농업 수출 독점 권력을 이용
- 부속서 K의 제4조에서는 개발도상회원국에 있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의 수출 독점 권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부속서 K의 제4~6조는 특별 및 차등대우 조항임.



- 제4조: 제3항(a)(iv)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비자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개발도상회원국에 있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은, 이 협정과 다른 WTO 협정의 다른 규정들과 불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수출 독점 권력을 유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허용됨.

○ 부속서 K의 제5조에서는 수출 독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을 개도국회원국이 가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5조: 비록 그 기업이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수출 독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은 이러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이용해도 됨.

- 그러나 이러한 자격은, 농산물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기업의 세계 수출 점유비중이 5%미만일 때에만 허용될 것임.

- 농산물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기업의 세계수출비중이 3년 연속 그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그 독점 권력의 행사가 이 협정의 다른 조항 및 다른 WTO 협정과 모순되지 않는 정도여야 함.

○ 부속서 K의 제6조에서는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의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이 농산물수출 독점 권력을 유지 및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제6조: 최빈개도국 회원과 작고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있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은, 이들 회원국들이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특별한 권한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간에, 이 협정과 WTO 협정의 다른 규정들과 불일치하지 않는 정도로 농산물수출 독점 권력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부속서 K의 제7조에서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매년 관련 정보를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 제7조: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연간 기준으로 기업의



성격과 운영에 관한 관련정보를 농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 내용은 표준 WTO 연습과 일반 상업 기밀 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효과적인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부속서 K의 제1조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기업에 부여된 일체의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나 권한에 대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함.
- 회원국은 금융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와 권한으로부터 국영무역수출기업에 발생하는 혜택을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다른 WTO 일반 원칙하에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모든 회원의 요청에 따라, 국영무역수출기업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상업 비밀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제약 하에, 기업의 농산물 수출 판매에 관해 요청된 정보, 수출 상품, 수출 상품의 판매량, 수출가격과 수출 대상국을 제공해야 함.

4. 2013년 WTO 발리각료회의의 선언문의 내용

- 농업 세부원칙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12월 WTO 발리각료회의에서는 2005년 홍콩각료선언에서 제시한 수출보조 철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농업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향후 협상에서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며, 회원국들이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선언함.
- 또한 수출보조 문제를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이를 위해 사무국이 각 회원국들의 수출신용, 식량지원, 수출 국영무역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음.

Ministerial Conference
Ninth Session
Bali, 3-6 December 2013



EXPORT COMPETITION
MINISTERIAL DECLARATION

1. We recognize tha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are a highly trade distorting and protectionist form of support, and that, accordingly, export competition remains a key priority of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ation of the ongoing reform process set out in Article 20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accordance with the Doha work programme on agriculture and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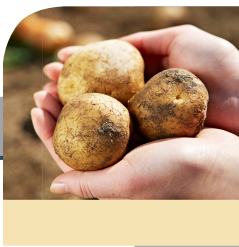
2. In this context, we therefore reaffirm our commitment, as an outcome of the negotiations, to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as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e regret that it has not been possible to achieve this objective in 2013 as envisaged in that Declaration.

8. With the objective on export competition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in mind and with a view to maintaining the positive trend noted previously, we shall exercise utmost restraint with regard to any recourse to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9. We agree that fulfilling the objective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on export competition remains a priority issue for the post Bali work programme. We agree to continue to work actively for further concrete progress in this area as early as feasible....

12. This examination process shall be undertaken on the basis of timely notification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related decisions, complemented by information compiled by the WTO Secretariat, consistent with the practice followed in 2013¹, on the basis of Members'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as illustrated in the Annex.

13. We agree to review the situation regarding export competition at the 10th Ministerial Conference....



Ⅲ. 우리나라 수출보조금의 농업협정 제9조 4항 해당 여부 검토

1.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실적 현황

- 본 절에서는 수출보조금 감축 약속을 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지원 실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함.
 - 이는 농식품 수출 지원 실적이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찾기 위함임.
- WTO에 통보한 실적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업보조금 이행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수출보조금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07년에는 289억원으로 정체되었음.
 - 2008년 기준 수출보조금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327억원임.

<표 4-2> 한국의 농업보조금 이행 현황

단위: 억원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농업총생산액	267,361	331,395	335,683	334,445	330,163	372,886	362,729	363,893	358,372	396,626
AMS 한도	21,826	17,978	17,209	16,439	15,670	14,900	14,900	14,900	14,900	14,900
국내보조총액 (감축+DM+허용)	63,479	72,694	78,751	83,743	78,049	68,641	58,570	62,763	54,111	53,950
감축대상보조 (AMS)	20,755	16,909	16,316	15,504	14,717	14,584	325	9,740	365	331
de-minimis 품목특정	334	1,117	1,769	2,870	2,300	1,016	1,546	1,039	5,536	3,971
de-minimis 품목불특정	2,488	4,127	3,981	5,014	4,144	4,372	4,501	3,708	2,347	2,916
허용보조	39,902	50,541	56,685	60,355	56,888	48,669	52,198	48,276	45,863	46,732
정부서비스	24,790	33,043	34,952	34,076	34,698	29,607	25,852	23,561	23,852	22,707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5,112	17,498	21,733	26,279	22,190	19,062	26,346	24,715	22,011	24,025
수출보조	12	191	259	266	247	256	289	288	286	3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업협정상 수출보조금 감축 대상인 6개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농업수출국영무역기업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으로 집행된 세부항목별 예산 실적 추이를 살펴보았음.
- <표 4-2>에서 살펴본 WTO에 통보한 수출보조금액은 <표 4-3>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실적 추이에서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항목과 일치함.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인프라 강화로 구분됨.
 -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업협정 제9조 4항의 네 번째 유형인 “취급, 등급향상과 다른 가공 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및 다섯 번째 유형인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수출물류비 지원 목적으로 311억원, 수출인프라 강화 목적으로 99억원을 지출하여,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수출보조금지원)으로 410억원을 집행하였음.
 - 2012년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위해 집행된 금액은 314억원임. 농식품 수출기반조성 목적을 위해 18억원, 수출성장동력 확충 목적으로 73억원, 해외마케팅사업 목적으로 223억원을 집행하였음.

<표 4-3>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실적 추이

단위: 억원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외시장개척사업	84	127	127	133	176	233	276	298	314
-농식품 수출기반조성 ¹⁾	11	19	26	18	22	34	41	42	18
-수출성장동력 확충 ²⁾	5	6	14	8	23	38	47	34	73



-해외마케팅 사업 ³⁾	69	102	86	107	131	161	188	223	223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191	289	288	286	327	413	415	395	410
-수출물류비 지원	191	263	268	280	316	397	394	355	311
-수출인프라 강화	-	26	20	6	11	15	22	40	99
계	275	416	415	420	503	646	691	693	724

주1: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전문인력 육성, 수출컨설팅, 수출안전성 관리(GAP), 해외시장정보 인프라 구축, 국내 수출의욕 고취,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주2: 식재료 수출활성화, 수출유망품목 육성, 포장디자인 개발,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품목별 공동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리적표시특산물 수출활성화, 해외물류기반 구축

주3: 국제박람회참가 지원, 유통업체 및 지자체 연계 판촉행사, 해외상설매장 설치, 운영, 바이어 거래 알선, 해외홍보 마케팅, 수출여건변화 대응 마케팅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문한필 외(2014).

○ 현재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품목, 지원한도 및 지원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표준물류비의 35%를 한도로 매 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표준물류비의 10%를 수출업체에게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표준물류비의 25%를 수출업체와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수출물류비지원을 하는 수출업체는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이 FOB기준 25만\$ 이상인 업체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출실적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에 수출물류비지원을 하고 있음.

- 지원액은 품목별·국가별 지원단가에 수출물량을 곱한 금액임.

<표 4-4> 현재 시행중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구분	내용
1. 개요	· 수출물류비의 지원한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물류비를 합산하여 수출업체



	에게 지원
2.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25만\$ 이상인 업체 - 단, 일본채소류 ID 대상품목: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깻잎 - aT 주관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된 품목은 협의회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협의회품목: 파프리카, 딸기, 배, 사과, 단감, 버섯, 양란, 김치, 인삼, 전통주, 막걸리, 유자차) · 지자체: 수출실적과 상관없이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
3. 지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쌀가공품, 녹차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자체지원 품목 별도 운용 가능
4.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표준물류비의 3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10%/수출업체)와 지자체(25%/수출업체+농가분) 분담하여 지원 · 지원액 = 수출물량 *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
5.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업체 사전등록 → 신청서접수(매월7일까지)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2. 농업협정 제9조 4항 해당 여부 검토

- 우리나라는 수출 물류비 지원 형태의 수출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으며, 수출신용 등의 수출금융지원은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려면 수출보조에 대한 사항만 검토하면 됨.
- UR 협상 당시 선진국은 6년 동안 금액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 감축하며, 개도국은 10년 동안 금액기준으로 24%, 물량기준으로 14% 감축하기로 합의함.
 - 이때 25개국이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를 설정하였음(구체적인 국가명과 품목 수는 <표 2-5>참고).
 - 우리나라는 기준기간인 1986~1990년 동안 수출보조 지원 실적이 없어 1995년 이행계획서 제출당시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를 설정하거나 감축 약속을 하지 않았음.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업협정 제9조 4항에 의하면, 감축대상 수출보조금 중



농업협정 제9조 1항의 (d)취급, 등급향상 및 가공비용과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및 (e)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의 경우에는 개도국 특례가 적용되어 WTO설립 후 10년간 수출보조금 감축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즉, 개발도상회원국은 1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축약속을 이행할 수 있으며, 최빈개도국 회원에게는 감축약속의 이행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농업협정문 제9조 4항은 개도국대우 조항임.

○ 우리나라의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은, 이와 같은 개도국 수출물류 보조금이 해당 국가가 제출한 WTO양허표 상의 수출보조금 감축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혜택인지(해석1)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수출물류 보조금 자체를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해석2)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수출보조금 자체를 양허표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지급하고 있는 수출 물류비 지원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려면 (해석 2)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가능함.

- 어떠한 해석이 보다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농업협정 제9조 4항의 개도국은 수출물류보조금 관련 규정인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commitments" 문구를 참조할 수 있음. 여기서 commitments 가 수출물류보조금 지급 약속을 의미하는 넓은 범위로 받아들여지면 (해석 2)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양허표에 제시된 수출보조금(물류비 포함) 감축 약속만을 의미하는 좁은 범위로 받아들여지면 (해석 1)이 보다 설득력이 있음.

- 엄격한 의미의 법적 측면에서 보면 commitments는 양허표 상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따라서 (해석 2) 보다는 (해석 1)이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사료됨.



- 문제는 WTO 설립 후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WTO 농업협정문이 규정한 개도국 특혜시한이 이미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협정문에 근거하여 수출 물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다는 것임.

- DDA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가 무역왜곡의 대표적인 조치라는 판단 하에 2005년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을 2013년 말로 합의하였는데, 농업협정 제9조 4항의 개도국 특혜혜택이 부여되는 기간은 수출보조금 철폐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5년으로 합의하여 개도국이 수출 물류보조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았음. 그러나 DDA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합의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음.

- 이를 뒤이은 2008년 농업 세부원칙 제4차 수정안에서도, 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을 2016년 말까지 철폐하되 농업협정 제9조 4항 상의 특혜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발리 각료선언문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였음.

- 수출보조금 관련 이와 같은 DDA 협상 합의 내용이 그대로 타결된다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농업협정문 제9조 4항이 (해석 2)로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나라는 최소한 국제법적인 근거 위에서 2021년까지는 수출 물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WTO 이행계획서에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 및 감축 약속을 한 25개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해석 1)하에서는 수출 물류보조금을 지급할 어떠한 국제법적인 근거도 가질 수 없게 됨.

- 하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측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물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로부터 법적 클레임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을 대신할 새로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DDA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출 물류 보조금이 해소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 수준이지만, 개도국에게 수출 물류비 지원 특혜를 2021년까지 부여하고 있는 홍콩각료회의나 발리선언문의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현재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개도국을 해소할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됨.



IV. 우리나라의 수출 물류 보조금 지급 지속 가능성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GATT 양허표는 수출보조금에 대해 전혀 기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는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도국 특례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WTO 설립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개도국의 농업협정 제9조 4항 특례기간도 이미 만료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류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엄밀한 의미의 국제법적 근거는 결여되어 있다고 해석되나(해석 1),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원용하여 수출물류보조금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제9조 4항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으며(해석 2) 그간에 우리나라가 큰 문제없이 수출 물류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다른 나라가 법적인 클레임을 제기할지의 여부는 미지수임.
 - 따라서 수출 물류비 지원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약해 장기적으로는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정책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물류비를 계속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는 농업협정 제9조 4항 개도국 특례를 원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
-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우호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님. DD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 그리고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EU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해 왔음. UR 협상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이 낙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국가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발리패키지에서는 수출보조 정책에 대한 조기수확에는 실패했지만, 매년 농업 위원회에서 수출보조를 포함한 수출경쟁 분야 개선 등 진전 상황을 논의하는



등 투명성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고,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기로 하는 등의 수출보조금 관련 논의는 진전을 보였음.

- 이러한 최근의 수출보조금 논의의 진전 내용을 미루어 보면, 향후에는 수출보조금 감축과 관련된 논의 및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타 회원국들은 한국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음.
- WTO 회원국 중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를 지급한 국가는 한국, 인도, 모로코, 파키스탄, 태국, 튀니지 등임. 이들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UR 협상에서 획득한 개발도상국 지위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DDA 타결이전까지는 현재의 개도국지위를 다 누리면서 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사항에 참여하거나 개도국 권리를 축소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이는 주요 수출국과의 양자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들의 반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임.
 - 한편 농업분야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수출 보조금 관련 이행 계획서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 때 주요국들이 이의를 제기할만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양자협상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임.
- 고소득 선진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반개도국들과 같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현재의 개도국지위가 선진국지위로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도 있음.

제5장. 향후 우리나라 수출보조금 정책 방향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향후 지향해야할 수출보조금 정책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수출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은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수출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임. 그 이외에도 수출보조금 대신 물류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I. DDA 협상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

- UR 협상 당시 선진국의 수출보조는 6년 동안 1986~1990년의 기준기간의 금액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 감축하며, 개도국은 10년 동안 금액기준으로 24%, 물량기준으로 14% 감축하기로 합의함(농업협정 제9조 2항(b)호(iv)).
- 이때 25개국이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를 설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기준기간인 1986~1990년 동안 수출보조 지원 실적이 없어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를 설정하거나 감축 약속을 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
- 다만, 우리나라는 UR 협상 당시 개도국으로 인정받았으므로 농협협정 제9조 4항(개도국의 경우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지원 및 국내 운송비 지원이 가능)을 신축적으로 해석할 경우 일부 명목의 수출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그 지급기한은 세부원칙 제4차 수정안 164조에 의해 2021년 말까지 가능함.



- WTO/DDA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지원 및 국내 운송비 지원은 사실상 큰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만약 UR 협상 당시 농업협상분야에서 인정받았던 개도국 지위를 WTO/DDA 협상에서도 그대로 인정받고, 세부원칙 4차 수정안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지원 및 국내 운송비 지원은 2021년 말까지 지원할 여지가 생김.
- 그러나 개도국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가 지급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은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함. 따라서 수출보조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DDA 협상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임. 즉,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나 예외조치를 대폭 늘린 DDA 농업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의 확보가 가장 주요한 협상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II. 수출보조금 점진적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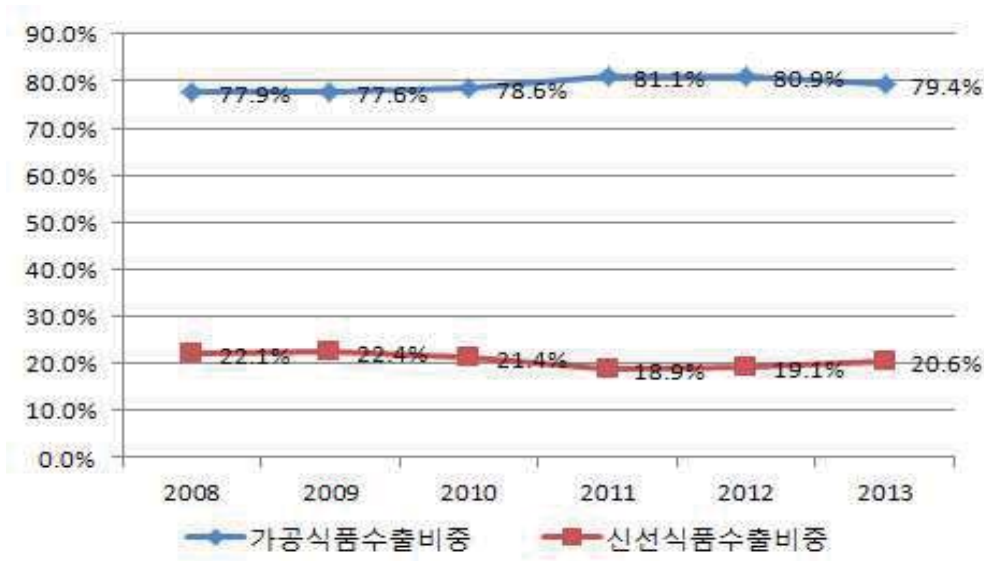
- 2013년에 열린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과제로 하여 매년 농업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고 2015년에 열릴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상황을 재검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수출보조금 감축과 관련된 논의 및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발리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금 지불행위를 최대한 자제할 국제정치·외교적 의무까지 선언된 상황임.
- 농업협정문 제9조 4항 개도국 특례 조항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나라가 수출 물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며, 향후의 DDA 협상에서 현재의 한국의 개도국지위가 선진국지위로 변경될 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UR 협상 당시의 기준년도인 1986-1990년 기간 동안에는 수



출보조금이 없었으나, DDA 협상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보조금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임.

-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출물류비 등의 수출보조금은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며 수출보조금을 늘리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지 못함. 보조금을 통한 수출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수출물량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조금 수혜업체로 하여금 가격 이외의 다른 경쟁력 강화 노력이나 스스로의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저해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됨.

<그림 5-1> 전체 농식품 수출액 중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 비중 추이



-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출보조금의 수혜대상은 신선 농식품보다는 가공식품 위주이고 가공식품 중에서도 비교적 국내농업과의 연계정도가 약한 품목도 많음. 따라서 수출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적다고 추정되고 있음.
- aT의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수출 가공식품 중 국산농축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비중은 면류 4.0%, 빵류 13.4%, 엿류 1.0%, 식



용유지류 1.0%, 다류 16.4% 등 낮은 수준임. 따라서 수출보조금을 통한 가공 식품수출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기에는 어려운 구조임.

- 선행연구(어명근 외, 2011)에서도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출지원사업 중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속해있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이 효율성, 효과성,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전체 6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5번째인 것으로 평가되어 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표 5-1>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상대적 중요도 및 복합 가중치

구분	효율성	효과성	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복합 가중치	전체 평가 우선순위
수출기반 조성사업	0.182	0.189	0.194	0.167	0.184	3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0.189	0.196	0.183	0.203	0.192	2
해외마케팅지원사업	0.191	0.210	0.198	0.234	0.207	1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0.147	0.168	0.147	0.077	0.137	5
수출기지구축	0.153	0.140	0.136	0.165	0.147	4
수출금융	0.139	0.099	0.141	0.154	0.132	6

주: 상대적 중요도는 정책방향 결정 지표별 평균과 각 지원사업부문 점수간의 총합에서 각각의 세부 사업들의 상관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어명근 외,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Ⅲ. 간접지원 및 수출 물류인프라구축으로 전환

- 수출보조금은 궁극적으로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DDA협상결과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실시 여부도 불확실할 뿐더러, 그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되고 있는 수출보조금 대신 수출확대를 보다 효과적으



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대안으로는 수출업체들이 수출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는 간접 지원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방안 모색,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 통관이나 검역과 같은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수출물류인프라 구축 등을 꼽을 수 있음.
- 농식품수출업체가 수출시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임. 따라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기반을 정비하거나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된 품목을 수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또한 수출 선도조직 등을 육성하고 생산 현지에서의 규모화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될 수도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농식품수출업체는 아직도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역량이 부족함 (문한필 외, 2014). 안정적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현지의 물류나 유통망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영세 수출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신규 유통망 개척에 대한 지원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해외의 주요 시장이나 물류 거점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물류 센터 건설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 수출업체가 영세할 경우 수입국의 까다로운 검역이나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함. 따라서 수출절차, 검역 및 원산지, 수출국 현지 통관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도 수출 증대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IV. 수출보조금 정책성과 평가를 통한 재원의 효과적 활용

- 수출물류비 지원 정책 즉, 수출보조금 정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정책이었으며, 그 실시기간도 상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평가는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따라서 일차적으로 현재까지의 수출보조금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책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성과 평가의 내용으로는 동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출은 어느 정도나 증가했으며, 수출계약건수 및 수출대상국수 등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동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 농축산물의 사용실적이 증가했는지, 수출전 문화 정도는 어떠한 양상으로 변했는지 등의 정량적인 평가도 실시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성과는 수출보조금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수출보조금과 가장 유사한 성과를 나타낸 수출지원사업의 종류를 발굴할 수 있음. 이 경우, 향후 DDA 협상 전개에 따라 지속적인 실시 여부가 불확실한 수출보조금 대신 비슷한 성과를 나타내는 다른 종류의 수출지원사업에 동 보조금 예산을 분배할 수도 있을 것임.



부록1. WTO 농업협정(용어의 정의와 수출경쟁)

Part I (제1부)

Article 1 (제1조)

Definition of Terms (용어의 정의)

In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본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문중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다음과 같다.

(a)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nd "AMS" mean the annual level of support, expressed in monetary terms, provided for an agricultural product in favour of the producers of the basic agricultural product or non-product-specific support provided in favour of agricultural producers in general, other than support provided under programmes that qualify as exempt from reduction under Annex 2 to this Agreement, which is:

☞ "총보호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즉, "AMS"란 본협정문의 부속서 2에 따라 감축의무가 면제된 정책이외의 방법으로 지원된 화폐단위로 표시한 매년의 농업지원수준을 의미한다. 즉 기초농산물의 생산자가 생산한 해당농산물에 수혜된 보조나 또는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자에게 수혜된 품목 불특정보조(non-product specific support)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에 속하는 보조정책을 의미한다.

(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the base period, specified in the relevant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a Member's Schedule; and

☞ 회원국 이행계획서의 제4부의 보조자료표에 명시된 기준기간동안의 제공된 보조

(i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3 of this Agreement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nstituent data and methodology used in the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the Member's Schedule;

☞ 이행기간중의 특정년도와 그 이후에 제공된 보조로서 회원국 이행계획서 제 4부의 보조자료표에 사용된 적합한 자료와 방법론을 감안하여 협정문의 부속서 3조에 따라 계산한 보조



- (b) "basic agricultural product" in relation to domestic support commitments is defined as the product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point of first sale as specified in a Member's Schedule and in the related supporting material:
- ☞ 국내보조 감축이행약속과 관련하여 “기초생산물(Basic product)”이란 회원국 이행계획서와 관련 보조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생산후 최초 판매시점과 가장 가까운 단계의 품목을 말한다.
- (c) "budgetary outlays" or "outlays" includes revenue foregone:
- ☞ "재정지출" 또는 "지출" 에는 세금징수 감면액을 포함한다.
- (d) "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means the annual level of support, expressed in monetary terms, provided to producers of a basic agricultural produ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one or more measures, the calculation of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AMS methodology is impracticable, other than support provided under programmes that qualify as exempt from reduction under Annex 2 to this Agreement, and which is:
- ☞ "보조상당측정치(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란 본협정문의 부속서 2에 따라 감축의무가 면제된 정책이외의 방법으로 지원된 화폐단위로 표시한 매년의 농업지원수준을 의미한다. 즉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정책을 통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제공된 보조로서 AMS방식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보조를 말하며 아울러 아래사항에 속하는 보조를 뜻한다.
- (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the base period, specified in the relevant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a Member's Schedule; and
- ☞ 회원국 이행계획서의 제4부 부록의 보조자료표에 규정된 기준기간동안 제공된 보조
- (i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4 of this Agreement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nstituent data and methodology used in the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the Member's Schedule:
- ☞ 이행기간의 특정년도와 그 이후에 제공된 보조로서 회원국 이행계획서 제 4부의 보조자료표에 사용된 적합한 자료와 방법론을 감안하여 협정문의 부속서 3조에 따라 계산한 보조
- (e) "export subsidies" refers to subsidies 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including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Article 9 of this Agreement;



☞ "수출보조금"란 본 협정문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출보조금을 포함하여 수출 수행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f) "implementation period" means the six-year period commencing in the year 1995, except that,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3, it means the nine-year period commencing in 1995;

☞ "이행기간"은 제13조의 목적을 위해 1995년에 시작하는 9년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95년부터 시작하는 6년간을 의미한다.

(g) "market access concessions" includes all market access commitments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 "시장개방양허(market access concessions)에는 본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모든 시장접근분야의 감축약속을 포함한다.

(h)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nd "Total AMS" mean the sum of all domestic support provided in favour of agricultural producers, calculated as the sum of all aggregate measurements of support for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ll non-product-specific aggregate measurements of support and all equivalent measurements of support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which is:

☞ "총보호측정치(총합(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즉 "Total AMS"란 농업생산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국내보조를 합한 것으로 기초농산물에 대한 보조와, 품목불특정보조(non-product specific support) 그리고 보조측정상당치의 합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보조가 포함된다.

(i) with respect to support provided during the base period (i.e. the "Base Total AMS") and the maximum support permitted to be provided during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or thereafter (i.e. the "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as specified in Part IV of a Member's Schedule; and

☞ 회원국 이행계획서의 제4부에 명시된 기준기간에 제공된 보조(예를 들면 "기초 Total AMS")와 이행기간중의 특정년도 또는 그 이후에 제공되는 지급가능 연간최대보조(예를 들면 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ii)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support actually provided during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i.e. the "Current Total AM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rticle 6, and with the constituent data and methodology used in the tables of supporting material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Part IV of the Member's Schedule;

☞ 회원국 이행계획서의 제4부 부록의 보조자료표에 사용된 적합한 자료와 방



법론을 감안하여 제6조를 포함 본 협정문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조로서 이행기간 중의 특정년도 및 그 이후에 실제로 지급된 보조(예를 들면 Current Total AMS)

- (i) "year" in paragraph (f) above and in relation to the specific commitments of a Member refers to the calendar, financial or marketing year specified in the Schedule relating to that Member.

☞ 각 회원국의 감축약속이행 및 위 (f)항에 언급된 “연도”는 회원국의 이행계획서에 나타난 역력, 회계연도 또는 유통년도를 말한다.

Part V (제5부)

Article 8 (제8조)

Export Competition Commitments (수출경쟁에 관한 약속)

Each Member undertakes not to provide export subsidies otherwise than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and with the commitments as specified in that Member's Schedule.

☞ 각 회원국은 본 협정과 회원국 이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감축약속에 합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출보조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Article 9 (제9조)

Export Subsidy Commitments (수출보조에 관한 약속)

1. The following export subsidies are subject to reduction commitments under this Agreement:

☞ 다음의 수출보조는 본 협정하의 감축약속대상으로 한다.

- (a) the provision by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of direct subsidies, including payments-in-kind, to a firm, to an industry, to producers of an agricultural product, to a cooperative or other association of such producers, or to a marketing board, contingent on export performance;

☞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구가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원료농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나 조합 또는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에 대하여 제공하는 현물보상을 포함한 직접보조

- (b) the sale or disposal for export by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of non-commercial stocks of agricultural products at a price lower than the comparable price charged for the like product to buyers in the



domestic market:

- ☞ 비상업용 공공재고를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시장에서 구매자가 동종상품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 기구에 의한 판매 또는 처분

- (c) payments on the export of an agricultural product that are financed by virtue of governmental action, whether or not a charge on the public account is involved, including payments that are financed from the proceeds of a levy imposed on the agricultural product concerned or on an agricultural product from which the exported product is derived:

- ☞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 (d) the provision of subsidies to reduce the costs of marketing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ther than widely available export promotion and advisory services) including handling, upgrading and other processing costs, and the costs of international transport and freight:

- ☞ 출하, 등급 및 기타 부대비용, 국제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지급

- (e) internal transport and freight charges on export shipments, provided or mandated by governments, on terms more favourable than for domestic shipments:

- ☞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운송비를 국내수송물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는 경우

- (f) subsidies on agricultural products contingent on their incorporation in exported products.

- ☞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2. (a)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he export subsidy commitment levels for each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s specified in a Member's Schedule, represent with respect to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 ☞ 아래 (b)항에서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회원국의 이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행기간 중 특정년도의 동조 1항에 예시되어 있는 수출보조 감축약속은 다음의 약속을 의미한다.

- (i) in the case of budgetary outlay reduction commitments, the maximum level of expenditure for such subsidies that may be allocated or incurred in that year in respect of the agricultural product, or group of products, concerned; and

- ☞ 재정지출 감축약속의 경우, 당해연도에 할당될 수 있는 재정지출의 최대수준

- (ii) in the case of export quantity reduction commitments, the maximum quantity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group of products, in respect of which such export subsidies may be granted in that year.



☞ 수출물량 감축약속의 경우, 당해연도에 수출보조로서 지원될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군의 최대물량

(b) In any of the second through fifth years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 Member may provide export subsidies listed in paragraph 1 above in a given year in excess of the corresponding annual commitment levels in respect of the products or groups of products specified in Part IV of the Member's Schedule, provided that:

☞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서 회원국들은 이행기간 중의 2차년도에서 5차년도 중 어느 특정년도에 이행약속에서 제시한 연간수출보조 상한을 초과하여 수출보조를 제공할 수 있다.

(i) the cumulative amounts of budgetary outlays for such subsid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rough the year in question, does not exceed the cumulative amounts that would have resulted from full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annual outlay commitment levels specified in the Member's Schedule by more than 3 per cent of the base period level of such budgetary outlays;

☞ 이행기간 초년도부터 초과수출보조 지급년도까지의 누적 수출보조액이 균등감축을 이행했을 경우, 해당연도까지의 누적 수출보조액에 기준기간 수출보조액의 3%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i) the cumulative quantities exported with the benefit of such export subsid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rough the year in question, does not exceed the cumulative quantities that would have resulted from full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annual quantity commitment levels specified in the Member's Schedule by more than 1.75 per cent of the base period quantities;

☞ 이행기간 초년도부터 초과수출보조 지급년도까지의 누적 수출보조물량이 균등감축을 이행했을 경우, 해당연도까지의 누적 수출보조물량에 기준기간 수출보조물량의 1.75%를 합한 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iii) the total cumulative amounts of budgetary outlays for such export subsidies and the quantities benefiting from such export subsidies over the entire implementation period are no greater than the totals that would have resulted from full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annual commitment levels specified in the Member's Schedule; and

☞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위와 같은 수출보조액과 수출보조물량의 총계는 균등감축을 이행했을 경우의 수출보조액과 보조물량의 총계를 초과할 수 없다.

(iv) the Member's budgetary outlays for export subsidies and the quantities benefiting from such subsidies, at the conclusion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re no greater than 64 per cent and 79 per cent of the 1986-1990 base period levels, respectively.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ese percentages shall be 76 and 86 per cent, respectively.

☞ 이행기간 최종년도의 수출보조액 및 수출보조물량은 기준기간 수출보조액



및 수출보조물량의 64%와 79%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각각 76%, 86%로 한다.

3. Commitments relating to limitations on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export subsidization are as specified in Schedules.

☞ 수출보조 범위확대 제한에 관한 약속은 이행계획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4.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commitments in respect of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subparagraphs (d) and (e) of paragraph 1 above, provided that these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ircumvent reduction commitments.

☞ 이행기간동안 개도국에 대해서는 위의 1항 (d), (e)에 해당하는 수출보조가 감축약속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 감축 약속 이행의무를 면제한다.

Article 10 (제10조)

Prevention of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Commitments (수출보조 감축약속의 우회행위 규제)

1. Export subsidies not lis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9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results in, or which threatens to lead to,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commitments; nor shall non-commercial transactions be used to circumvent such commitments.

☞ 본 협정문 제9조 1항에 예시되지 않은 수출보조가 수출보조 감축이행 약속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 비상업적 수출도 수출보조 감축약속을 우회하지 않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2. Members undertake to work towar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ly agreed disciplines to govern the provision of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and, after agreement on such disciplines, to provide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only in conformity therewith.

☞ 회원국들은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보험에 대해서는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도출을 위해 노력하며, 향후 합의될 국제적 규범에 따라서만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보험을 제공기로 한다.

3. Any Member which claims that any quantity exported in excess of a reduction commitment level is not subsidized must establish that no export subsidy, whether listed in Article 9 or not, has been granted in respect of the quantity of exports in question.

☞ 감축약속을 초과한 수출물량에 대하여 동 물량이 수출보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회원국은 당해물량에 대해 본 협정문 제9조 1항에 제시된 수출보조를 비롯하여 여하한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4. Members donors of international food aid shall ensure:
- ☞ 국제식량원조를 제공하는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that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food aid is not t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commercial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to recipient countries:
 - ☞ 국제식량원조 제공은 수혜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 (b) that international food aid transactions, including bilateral food aid which is monetized,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system of Usual Marketing Requirements (UMRs); and
 - ☞ 양국간의 식량원조를 위한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국제간의 식량원조 거래는 가능할 경우 UMR(Usual Marketing Requirements)체제를 포함하여 FAO의 “잉여농산물 처분원칙과 협의의 의무”에 일치시켜 운용되어야 한다.
 - (c) that such aid shall be provided to the extent possible in fully grant form or on terms no less concessional than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Food Aid Convention 1986.
 - ☞ 상기 식량원조는 가급적 최대한 무상의 형태(grant form)로 제공되어야 하며, 「1986년 식량원조협약」 제4조에 명시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Article 11 (제11조)

Incorporated Products (가공품에 대한 보조한도의 규제)

In no case may the per-unit subsidy paid on an incorporated agricultural primary product exceed the per-unit export subsidy that would be payable on exports of the primary product as such.

- ☞ 가공품(Incorporated Products)에 지급되는 보조는 원료농산물에 지급되는 단위당 수출보조를 초과할 수 없다.

Part VI (제6부)

Article 12 (제12조)

*Disciplines on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원칙)*

1. Where any Member institutes any new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foodstuff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a) of Article XI of GATT 1994, the



Membe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provisions:

☞ 「GATT 1994」 제11조 2(a)항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새로운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취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the Member instituting the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effects of such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importing Members' food security;

☞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는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조치가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b) before any Member institutes an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it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as far in advance as practicable,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comprising such information as the nature and the duration of such measure, and shall consult, upon request, with any other Member having a substantial interest as an importer with respect to any matter related to the measure in question. The Member instituting such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shall provide, upon request, such a Member with necessary information.

☞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조치를 실시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빨리 이들 조치의 성격, 지속기간과 같은 정보를 농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요청에 의거 문제의 조치와 관련하여 수입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회원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상기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조치를 실시하는 회원국은 위와 같은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필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developing country Member, unless the measure is taken by a developing country Member which is a net-food exporter of the specific foodstuff concerned.

☞ 특정 기초식량의 순수출국인 개발도상국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가 아닌 이 상 본조항은 개도회원국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Part IX (제9부)

Article 15 (제15조)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 우대)

1. In keeping with the recognition that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is an integral part of the negotiati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respect of commitments shall be provided as set out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embodied in the Schedules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우대는 협상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에 따라 이 약속 하의



우대조치는 본 협정문의 관련 조항 및 협상약속 이행 계획에 의해 부여된다.

2.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have the flexibility to implement reduction commitments over a period of up to 10 years.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 개도국은 10년까지 감축약속이행에 융통성을 갖는다.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감축약속의 이행이 면제된다.

Part X (제10부)

Article 16 (제16조)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도국)

1. 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take such action as is provided fo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ecision on Measures Concerning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 선진국회원국은 「개혁과정상에서 있을 수 있는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결정(Decision on Measures Concerning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에서 논의된 원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hall monitor, as appropriate, the follow-up to this Decision.

☞ 농업위원회는 동 결정에 따라 적절한 감시 및 통제를 행한다.



부록2. 세부원칙 4차 수정안 번역본(수출경쟁)

WORLD TRADE ORGANIZATION	TN/AG/W/4/Rev.4 6 December 2008
(08-6017)	
1. III. Export Competition	
2. A. General	
<p>160. Nothing in these modalities on export competition can be construed to give any Member the right to provide, directly or indirectly, export subsidies in excess of the commitments specified in Members' Schedules, or to otherwise detract from the obligations of Article 8 of that Agreement. Furthermore, nothing can be construed to imply any change to the obligations and rights under Article 10.1 or to diminish in any way existing obligations under other provisions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or other WTO Agree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에 관한 세부원칙의 그 어떠한 내용도 회원국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회원국의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약속을 초과하거나 제8조의 규정과 위배되는 방식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를 지급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또한 이 세부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농업에 관한 협정 제10조 1항 또는 다른 관련 조항 또는 다른 세계무역기구관련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p>161. Nor can anything in these modalities be construed to diminish in any way the existing commitments contained in the Marrakesh Decision on Measures Concerning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of April 1994 and the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of 14 November 2001 on, inter alia, commitment levels of food aid, provision of food aid by donors,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in the context of aid programmes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frastructure, and financing normal levels of commercial imports of basic foodstuffs. Nor could it be understood to alter the regular review of these decisions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and monitoring by the Committee on Agricult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세부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농업 생산성과 인프라, 기본 식품의 상업적 수입의 금융 정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 11월 14일의 이행관련 이슈와 관심에 대한 결정, 특히 식량원조의 약속 수준, 공여국에 의한 식량원조의 제공, 원조 프로그램 맥락에서 기술과 재정적 지원과, 1994년 4월 최빈국과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의 가능한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마라케쉬 결정에 포함된 기존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든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또한 각료회의에 의한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농업위원회에 	



의한 감시(모니터링)를 변경하는 것이 이해될 수 없다.

B. Scheduled Export Subsidy Commitments (양허수출보조약속)

162. 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eliminate their remaining scheduled export subsidy entitlements by the end of 2013. This shall be effected on the basis of:

☞ 선진회원국은 2013년 말까지 양허수출보조를 다음의 공식에 따라 철폐한다.

(a) budgetary outlay commitments being reduced by 50 per cent by the end of 2010 in equal annual instalment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with the remaining budgetary outlay commitments being reduced to zero in equal annual instalments so tha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re eliminated by the end of 2013.

☞ 재정지출약속(budgetary outlay commitments)은 발효일로부터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2010년 말까지 50% 감축하고, 나머지 재정지출약속은 매년 균등 분할 및 0으로 감축하여 2013년 말에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한다.

(b) quantity commitment levels being applied as a standstill from the commencement until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t the actual average of quantity levels in the 2003-05 base period. Furthermore,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re shall be no export subsidies applied either to new markets or to new products.

☞ 물량약속수준은 시작부터 이행기간 말까지 2003-05년 기준년의 실제 평균 물량 수준에 정지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또한 수출보조는 이행기간동안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상품에 적용될 수 없다.

163.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eliminate their export subsidy entitlements by reducing to zero their scheduled export subsidy budgetary outlay and quantity commitment levels in equal annual instalments by the end of 2016.

☞ 개발도상회원국은 양허수출보조재정지출과 물량약속수준을 2016년 말까지 0으로 감축시킴으로써 해당국가의 수출보조약속을 철폐한다.

164. In accordance with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furthermore, continue to benefit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9.4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until the end of 2021, i.e. five years after the end-date for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 홍콩각료선언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은 2021년 말까지, 즉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농업에 관한 협정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C.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

165. Export credit,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Annex J.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은 부속서 J에 상세하게 규정된 규율에 따른다.



D.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

166.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K.

☞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은 부속서 K에 상세하게 규정된 규율에 따른다.

E. International Food Aid (국제식량원조)

167. International food aid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L.

☞ 국제식량원조는 부속서 L에 상세하게 규정된 규율에 따른다.

F. Cotton (면화)

168. Those export subsidies for cotton referred to in paragraph 162 above are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contained in paragraph 11 of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However, developing country Members which have any export subsidy entitlement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mply with this prohibition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 제162조에서 언급한 면화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홍콩각료선언의 제11조에 포함된 임무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 언급한 수출보조금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회원국들은 이행기간 첫째 연말까지 이 금지조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169. To the extent that new disciplines and commitments for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and international food aid create new and additional obligations for Members as regards cotton, any such obligations shall be implemented on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과 국제 식량원조는 면화에 관하여,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일반원칙과 약속에 대한 정도로, 새로운 추가적인 의무를 생성한다. 이러한 의무는 선진회원국을 위한 이행기간의 첫째날,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이행기간의 첫째 연말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ANNEX J

Possible New article to replace the current article 10.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농업에 관한협정 제10조 제2항 수정초안)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



Definition (정의)

1. In addition to complying with all other export subsidy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the other covered Agreements, Members undertake not to provide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otherwise than in conformity with this Article. These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and insurance program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ort financing support") shall comprise:

☞ 이 협정과 다른 대상 협정 하에 다른 모든 수출보조금 의무를 준수하는 것과 함께, 회원국들은 이 조항에 적합하지 않은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그리고 보험프로그램(이하 수출금융지원으로 언급하겠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direct financing support, comprising direct credits/financing, refinancing, and interest rate support;

☞ 직접적인 신용/금융, 재융자, 그리고 금리 지원으로 구성되는 직접적인 금융 지원

(b) risk cover, comprising export credit insurance or re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s;

☞ 수출신용보험 또는 재보험 및 수출 신용 보증을 포함하는 위험 표시

(c) government-to-government credit agreements covering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creditor country under which some or all of the risk i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 수출국가의 정부가 일부 또는 모든 위험을 책임진다는 약속하에 채권자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포함하는 정부간 신용 계약

(d) any other form of governmental export credit support, direct or indirect, including deferred invoicing and foreign exchange risk hedging.

☞ 연기된 송장과 환위험 헤지를 포함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수출신용 지원의 임의의 다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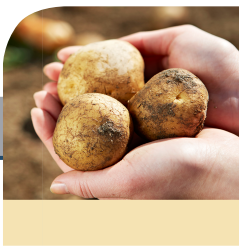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export financing support provided by or on behalf of the following ent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ort financing entities", whether such entities are established at the national or at the sub-national level:

☞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업이 대신하거나 또는 다음 기업에 의해 제공된 수출금융지원에 적용된다.

(a) government departments, agencies, or statutory bodies;

☞ 정부 부처, 기관, 또는 법정기구

(b) any financial institution or entity engaged in export financing in which there is governmental participation by way of equity, provision of funds,



loans or underwriting of losses:

- ☞ 주식, 펀드, 대출 또는 손실 인수의 방식으로 정부 참여가 있는 수출 금융에 종사하는 금융 기관 또는 기업
- (c) agricultural export state trading enterprises: and
- ☞ 농산물 수출 국영 무역 기업
- (d) any bank or other private financial, credit insurance or guarantee institution which acts on behalf of or at the direction of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 ☞ 정부 또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대신 행동하는 은행, 다른 민간 금융, 신용 보험 또는 보증 기관

Terms and Conditions (이용약관)

3. Export financing support shall be provid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below.

- ☞ 수출 금융 지원은 아래에 명시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a) **Maximum repayment term:** the maximum repayment term for export financing support under this Agreement, this being the period beginning at the starting point of credit and ending on the contractual date of the final payment, shall be no more than 180 days.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this shall apply from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or the last day of 2010, whichever comes first. Existing contracts which have been entered into prior to the signature of this Agreement, are still in place, and are operating on a longer time frame than that def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run their course until the end of their contractual date, provided that they are notified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and are not modified.
 - ☞ **최대 상환 기간:** 이 협정 하에서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최대 상환 기간은 신용의 시작점에서 시작하고 최종 결제의 계약 날짜에 종료하는 기간으로써,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 ☞ 선진회원국의 경우 이행 첫날 또는 2010년의 마지막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적용된다. 이 협정에 계약의 서명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은 여전히 존재하며, 앞의 문장에서 정의된 것보다 더 긴 시간 프레임에서 운영한다. 그리고 농업위원회에 통보 및 수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날짜가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을 실행해야 한다.
 - (b) **Self-financing:** export credit guarantee, insurance and reinsurance programmes, and other risk cover programmes included within sub-paragraphs 1(b) (c) and (d) above shall be self-financing. Where premium rates charged under a programme are inadequate to



cover the operating costs and losses of that programme over a previous 4-year rolling period, this shall, in and of itself, be sufficient to determine that the programme is not self-financing. In addition, and irrespective of whether these programmes conform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preceding sentence, this does not exempt them from complying with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the other covered Agreements, including by reference to the more generally formulated long-term operating costs and losses of a programme, not limited to the historical rolling period referred to in the previous sentence, under item (j) of the Illustrative List. Where these programmes are found to constitute export subsidies within the meaning of item (j) of the Illustrative List, they shall also be deemed to be not self-financing under this Agreement.

- ☞ 자기 자금 조달: 앞에서 설명한 제1항 (b) (c) 및 (d)호를 포함하는 수출 신용 보증, 보험 재보험 프로그램 및 다른 위험 커버 프로그램이 자기 자금 조달에 포함된다.
- ☞ 프로그램에서 지불된 프리미엄 효율이 이전 4년제 롤링기간동안 그 프로그램의 운영비용과 손실을 커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이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자금 조달적이지 않다고 결정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 ☞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 문장에서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본 협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대상 협정을 준수하는 것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보다 일반적으로 형성된 장기 운영비용과 손실을 참고하여 포함하며, 예시 목록의 항목 (J)에서는, 이전의 문장에서 언급된 역사적 롤링 기간에 한정하지 않는다.
- ☞ 이러한 프로그램이 예시 목록의 항목 (J)의 의미 내에서 수출 보조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것들 또한 이 협정하에서 자기 자금 조달로 간주된다.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특별 및 차등 대우)

4. Developing country Members providers of export financing support shall be eligible to benefit from the following elements:

- ☞ 수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개발 도상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부터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 (a) **Maximum repayment terms:**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s concerned shall have a phase-in period of four years after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or the end of 2013, whichever comes first, within which to fully implement the maximum repayment term of 180 days. This shall be achieved as follows:
- ☞ 최대 상환 기간: 관련 개발 도상 회원국은, 이행시기의 첫날 또는 2013년



마지막 날 중 먼저 오는 날 이후 4년의 단계적 기간을 가진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달성되어야 한다.

- (i)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the maximum repayment term for any new support entered into shall be 360 days:
☞ 이행 첫 번째 날에 시작된 새로운 지원의 최대 상환 기간 360일이어야 한다.
- (ii) two years after implementation, the maximum repayment term for any new support to be entered into shall be 270 days.
☞ 이행 2년 이후 시작된 새로운 지원의 최대 상환 기간은 270일이어야 한다.
- (iii) four years after implementation the maximum repayment term of 180 days shall apply.
☞ 이행 4년 이후, 새로운 지원의 최대 상환 기간은 180일이어야 한다.

It is understood that where there are, after any of the relevant dates, pre-existing support arrangements entered into under the limits established in the sub-paragraphs (i)-(iii) above, they shall run their original term.

- ☞ 해당 날짜 이후, 상기 하위 항인 (i)-(iii)에서 설정된 한계하에서 기존의 지원 협정들이 있는 경우, 그들은 원래의 조건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b) **Self-financing:** the self-financing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3(b) shall be fifty percent longer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 자기 자금 조달: 제3항(b)호에서 언급되어진 자기 자금 조달은, 개발도상 회원국을 위해 50% 더 길어져야 한다.

5. Notwithstanding the terms of paragraphs 3 (a) and 4 (a) above,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s listed in G/AG/5/Rev.8 shall be accorded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comprising allowance for a repayment term in respect of them of between 360 and 540 days for the acquisition of basic foodstuffs. Should one of these Members face exceptional circumstances which still preclude financing normal levels of commercial imports of basic foodstuffs and/or in accessing loans granted by multilateral and/or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ithin these timeframes, a further extension of such a time frame shall be provided. The standard monitoring and surveillanc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apply to these cases.

- ☞ 상기 제3항(a)호 및 제4항(a)호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G/AG/5/Rev.8에서 나열된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은, 기본 식품 획득을 위해 360일과 540일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에 대한 허용을 포함한 차등 및 유리한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 ☞ 이러한 회원국이 기본 식품의 상업적 수입에서 배제되거나 동시간대에 다자간 또는 지역적 금융기관에 의해 부여된 대출 접근이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러한 시간 프레임의 추가 확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의 표준 모니터링 및 감시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된다.

ANNEX K

Possible new Article 10 bis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농산물 수출 국영 무역 기업)

1. Members shall ensure that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are operat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specified below and, subject to these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II, the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VII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GATT 1994,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other WTO Agreements.

☞ 회원국은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들이 아래 명시된 규정들을 준수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XVII 조항, XVII 조항 해석에 대한 이해, 1994년 GATT의 다른 관련 규정들, 농업협정과 다른 WTO 협정과 합치해야 한다.

Entities (기업)

2. For the purpose of the disciplines set out hereunder in this Article, an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shall be any enterprise which meets the working definition provided for in the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VII of the GATT 1994.

☞ 이 조항 이하에서 규정된 일반 원칙의 목적을 위해,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은 1994년 GATT의 제 XVII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해에서 제공된 작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Disciplines (일반 원칙)

3. In order to ensure the elimination of trade-distorting practices with respect to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as described above, Members shall:

☞ 상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과 관련한 무역 왜곡 관행의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 (a) eliminate, in parallel and in proportion to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food aid and export credits:



☞ 식량원조 및 수출신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수출 보조의 모든 형태의 철폐에 따라, 그리고 동시에 다음(i ~iv)을 철폐하도록 한다.

(i) export subsidies, defined by Article 1(e)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which are currently provided, consistently with existing obligations under Article 3.3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to or by an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의 제 1조 (e)항에 의해 정의되어 있고,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에 의해 현재 제공되고 있거나, 농업협정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출보조금

(ii) government financing of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preferential access to capital or other special privileges with respect to government financing or re-financing facilities, borrowing, lending or government guarantees for commercial borrowing or lending, at below market rates; and

☞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의 정부 자금조달 및 정부 자금조달 또는 재금융 시설, 차입, 대출 또는 상업 차입 또는 시장금리 이하의 대출을 위한 정부 보증에 관한 자본 또는 다른 특별한 권한 특혜

(iii) government underwriting of loss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losses or reimbursement of the costs or write-downs or write-offs of debts owed to, or by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on their export sales.

☞ 수출판매에 있어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에 의하거나 동 기업에 대하여 발생된 채무의 상각이나 탕감, 정부의 직·간접적 손실 인수, 비용의 변제

(iv) by 2013, the use of agricultural export monopoly powers for such enterprises.

☞ 2013년까지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과 같은 기업을 위한 농산물 수출 독점력의 사용(철폐)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특별 및 차등 대우)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a)(iv) above,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which enjoy special privileges to preserve domestic consumer price stability and to ensure food security shall be permitted to maintain or use export monopoly powers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not be otherwise inconsistent with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other WTO Agreements.

☞ 상기 제3항 (a)호 (iv)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비자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있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은, 이 협정과 다른 WTO 협정의 다른 규정들과 불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수출 독점 권력을 유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5. Where a developing country Member has an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with export monopoly powers, that enterprise may continue also to maintain or use those powers, even if the purpose for which that enterprise has such privileges could not be deemed to be characterized by the objective: "to preserve domestic consumer price stability and to ensure food security". Such an entitlement, however, would be permissible only for such an enterprise whose share of world exports of the agricultural product or products concerned is less than 5 per cent, such that the entity's share of world exports of the product or products concerned does not exceed that level in three consecutive years, and to the extent that the exercise of those monopoly powers is not otherwise inconsistent with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other WTO Agreements.

☞ 비록 그 기업이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개발 도상 회원국이 수출 독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은 이러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이용해도 된다.

☞ 그러나 이러한 자격은, 농산물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기업의 세계 수출 점유비중이 5%미만일 때에만 허용될 것이다.

☞ 농산물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기업의 세계수출비중이 3년 연속 그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그 독점 권력의 행사가 이 협정의 다른 조항 및 다른 WTO 협정과 모순되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6. In any case,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in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Members, small, vulnerable economies, whether or not they enjoy such special privileges to preserve domestic consumer price stability and to ensure food security, shall be permitted to maintain or use monopoly powers for agricultural exports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not be otherwise inconsistent with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other WTO Agreements.

- ☞ 최빈개도국 회원과 작고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있는 농산물 수출국영무역기업은, 이들 회원국들이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특별한 권한을 즐기든 즐기지 못하든 간에, 이 협정과 다른 WTO 협정의 다른 규정들과 불일치하지 않는 정도로 농산물수출 독점 권력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Monitoring and surveillance(모니터링 및 감시)

7. Any Member that maintains an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shall notify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on an annual basis,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enterprise's nature and operations. This shall, consistent with standard WTO practice and normal commercial confidentiality considerations, require timely and transparent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ny and all exclusive or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granted to such enterprise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above sufficient to ensure effective transparency. Members shall notify any benefits, not otherwise notified under other WTO disciplines, which accrue to a state trading export enterprise from any special rights and privileges including those that are of a financial nature. At the request of any Member, a Member maintaining a state trading export enterprise shall provide, subject to normal considerations of commercial confidentiality, information requested concerning the enterprise's export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duct exported, the volume of the product exported, the export price and the export destination.

- ☞ 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연간 기준으로 기업의 성격과 운영에 관한 관련정보를 농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통보 내용은 표준 WTO 연습과 일반 상업 기밀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상기 제 1조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기업에 부여된 일체의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나 권한에 대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 회원국은 금융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와 권한으로부터 국영무역수출기업에 발생하는 혜택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WTO 일반 원칙하에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모든 회원의 요청에 따라, 국영무역수출기업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상업 비밀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제약하에, 기업의 농산물 수출 판매에 관해 요청된 정보, 수출 상품, 수출 상품의 판매량, 수출가격과 수출 대상국을 제공해야 한다.



ANNEX L

Possible New Article 10.4 TO REPLACE THE CURRENT ARTICLE 10.4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현재 농업협정 제10조 4항을 대체할 가능성 높은 새로운 제10조 4항)

International Food Aid (국제 식량 원조)

1. Members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maintain an adequate level of international food ai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od aid"), to take account of the interests of food aid recipients and to ensure that the disciplines contained hereafter do not unintentionally impede the delivery of food aid provided to deal with emergency situations. Members shall ensure that food aid is provided in full conformity with the disciplines below, thereby contributing to the objective of preventing commercial displa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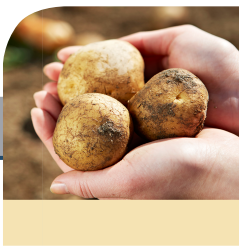
- ☞ 회원국은 국제 식량 원조(이하 식량원조로 언급함)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식량 원조받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하에 포함된 일반 원칙이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공된 식량원조 배달을 비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 ☞ 회원국은 식량원조가 아래 일반원칙과 충분히 일치하게 제공되고, 상업적 목적으로의 변이(commercial displacement)를 방지하는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General disciplines applicable to all food aid transactions

(모든 식량 원조의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2. Members shall ensure that all food aid transactions are provided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 ☞ 회원국들은 모든 식량원조 거래비용이 다음 규정에 부합하여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a) they are needs-driven;
 - ☞ (식량원조는) 요구 중심적이다.
 - (b) they are in fully grant form;
 - ☞ 완전 공여형태이다.
 - (c) they are not t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commercial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r of other goods and services;
 - ☞ 농산물 또는 기타 제품과 서비스의 상업적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d) they are not linked to the market development objectives of donor



Members: and

☞ 공여회원국의 시장 개발 목표에 연결되지 않는다.

(e) agricultural products provided as food aid shall not be re-exported in any form, except where, for logistical reasons and in order to expedite the provision of food aid for another country in an emergency situation, such re-exportation occurs as an integral part of an emergency food aid transaction that is itself otherwis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 식량원조로 제공되는 농산물은 물류적 요인과 긴급 상황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대한 식량 원조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재수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재수출은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한 긴급 식량원조 거래의 일부분으로 발생한다.

3. The provision of food aid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local market conditions of the same or substitute products. Members shall refrain from providing in-kind food aid in situations where this would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foreseen to cause, an adverse effect on local or regional production of the same or substitute products.

☞ 식량원조의 제공은 동일 상품이나 대체 상품의 현지 시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동일 상품이나 대체 상품의 국내 또는 지역 생산에 대한 역효과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물 식량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Members are encouraged to procure food aid from local or regional sources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d that the availability and prices of basic foodstuffs in these markets are not unduly compromised. Members commit to making their best efforts to move increasingly towards more untied cash-based food aid.

☞ 회원국들은 기본 식품의 가격과 가용성이 지나치게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국내 또는 지역 소스로부터 식량원조를 조달하기를 장려된다.

4. Untied cash-based food aid that i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bove shall be presu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is Article.

☞ 상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비구속성 현금 기반의 식량원조는 본 원칙 조항에 부합될 것이다.

5. The recipient government has a primary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organization,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od aid activities within its territory.

☞ 수원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식량원조 활동의 조직, 조정



및 이행을 위한 주요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Further disciplines for food aid transactions in emergency situations (SafeBox)

식량원조에 대한 추가 일반원칙(긴급상황에서의 거래(SafeBox))

6. To ensure that there is no unintended impediment to the provision of food aid during an emergency situation, food aid provided under such circumstances (whether cash or in-kind) shall be in the ambit of the Safe Box and, therefore, dee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is Article, provided that:

☞ 긴급 상황 동안 식량원조에 의도하지 않은 방해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현금 또는 현물)하에 제공된 식량원조는 안전 상자 (safe box)의 범위안에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조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there has been a declaration of an emergency by the recipient country or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r

☞ 수원국이나 유엔 총장에 의해 긴급 사태 선언이 있는 경우

(b) there has been an emergency appeal from a country; a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y, including the World Food Programme and the United Nations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r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a relevant regional or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agency; a non-governmental humanitarian organization of recognized standing traditionally working in conjunction with the former bodies; and

☞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통합 항소 과정을 포함한 관련 유엔 기관, 적십자 또는 적십자사의 국제 연맹의 국제위원회, 관련 지역 또는 정부 간 국제 기관, 이전 기관과 함께 전통적으로 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비정부 인도주의 조직(NGO), 국가로부터 긴급 호소가 있는 경우

in either case, there is an assessment of need coordinated under the auspices of a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y, including the World Food Programme;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r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나 세계식량계획, 국제적십자연맹 또는 적십자 국제 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유엔기관의 지원 하에 조정되어진 요구 평가 (assessment of need 또는 need assessment)가 있어야 한다.

7. Following the emergency declaration or appeal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6 above, there may well be a period where the needs assessment



outcome is pending.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is period shall be deemed to be 3 months in duration.

- ☞ 상기 제6절에서 규정된 긴급사태 선언이나 호소에 따라, 요구평가 결과에 대한 계류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이 기간은 3개월로 간주된다.

Should any Member consider that the food aid concerned would fail to satisfy the conditions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6 above, no initiation of dispute settlement on these grounds may occur until that period has elapsed (provided that the relevant multilateral agency referred to in paragraph 6 above has not, within this period, given a negative assessment or has otherwise demonstrably not consented to a needs assessment).

- ☞ 회원국은 식량원조가 상기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위의 기간(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분야에 대한 분쟁처리의 어떤 개시도 발생할 수 없다(상기 제6절에 언급된 관련 다자기관이 이 기간 내에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지지 않거나 요구평가에 명백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

Where, within or by the end of this period, the relevant multilateral agency has either itself carried out a positive needs assessment or has demonstrably provided its consent or approval pursuant to footnote 3, and the other conditions of paragraph 6 have been satisfied, the food aid concerned shall remain in the Safe Box hereafter provided it is also in conformity with all the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rticle.

- ☞ 이 기간의 종료일까지 혹은 이 기간 내에, 관련 다자 기관은 긍정적인 요구평가를 완료하거나, 또는 민주적인 합의를 제공하거나, 풋노트 3에 따른 찬성을 도출해야 하고, 제6절의 나머지 조건들에 합치해야 하며, 제공된 이후의 식량원조는 세이프박스로 남는다. 또한 이는 본 조항의 모든 기타 관련 규정에 합치된다.

8. There shall be no monetization for food aid inside the Safe Box, except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here there is a demonstrable need to do so for the sole purpose of transport and delivery. Such monetization shall be carried out sol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cipient least-developed country such that commercial displacement is a voided or, if not feasible, at least minimized.

- ☞ 수송 및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백한 필요가 있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안전 상자(safe box) 내에 식량 원조에 대한 모니터링(대충자금)으로 사용 될 수 없다.

- ☞ 이러한 모니터링(대충자금)은 상업적 목적으로의 변이가 무효화되거나 적어도



최소화된 수원최빈개도국의 영토 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9. A notification will be required on an *ex-post* basis by donor Members at six-month intervals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 통보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 공여회원국들에게 요구되어질 것이다.

10. Subject to its continued conformity with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food aid that is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6 may be provided as long as the emergency lasts subject to an assessment of continued genuine need as a result of the initial onset of the emergency. The relevant multilateral agency shall be responsible to make or convey such determination.

☞ 이 조항의 다른 규정들과 지속적인 적합성에 따라, 제6항에 부합하는 식량 원조는 긴급사태의 최초 발생의 결과로써 지속적인 순수한 요구에 대한 평가가 있는 한, 긴급상황이 지속되는 기간만큼 제공되어 질 것이다.

☞ 관련 다자 기관이 그러한 결정을 하거나 전달할 책임을 진다.

Further disciplines for food aid transactions in non-emergency situations

(비 긴급상황에서 식량원조 거래를 위한 추가 일반 원칙)

11. Further to the disciplines set out in paragraphs 1 to 5 above, in-kind food aid in non-emergency situations outside the Safe Box shall be:

☞ 또한 상기 제1 ~ 5 항에 규정된 일반 원칙, 안전 박스(safe box)밖에 있는 비긴급상황에서의 현물 식량원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based on a targeted assessment of need whether carried out by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cluding the UN, or, where such a targeted assessment is not reasonably obtainable, by a donor government or a humanitaria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of recognized standing, working in partnership with a recipient country government. That assessment would incorporate and reflect objective and verifiable poverty and hunger data published by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 or by a recipient country that objectively identifies the food insecurity needs of the target popula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below;

☞ UN을 포함한 국제 또는 지역의 정부간 조직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그러한 대상 평가가 공여국 정부 또는 인도주의 비정부 조직에 의해 합리적으로 구해질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필요(need) 대상 평가에 기초한다. 수원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 그 평가는 통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검증된 빈곤과 기아 자료를 반영할 것이다. 이때 이용되는 자료는 국제적 또는 지역 정부 간 조직이나 아래 세부조항(b)호에 설명된 대상 인구에 대한 식품 불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한 수원국에 의해 출판된 자료여야 한다.

(b) provided to redress food deficit situations which give rise to chronic hunger and malnutrition and, accordingly, such food aid shall be targeted to meet the nutritional requirements of identified food insecure groups; and

☞ 만성 기아와 영양 실조를 야기 할 식량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된다. 따라서, 이러한 식량원조는 식별된 식량 불안정 그룹의 영양학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c) be provided consistently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or at the very least minimizing, commercial displacement. Commercial displacement in this context shall arise where the provision of in-kind food aid by a Member materially displaces commercial transactions that would otherwise have occurred in or into a normally functioning market in the recipient country for the same product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 적어도 상업적 목적으로의 변이의 방지 최소화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문단에서 상업적 목적으로의 변이 (commercial displacement)는 회원국에 의해 현물 식량원조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대체하는 경우 발생된다. 이때 상업적 거래는 동일한 상품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위해 공여국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시장에 발생한 것이다.

12. Monetization of in-kind food aid in non-emergency situations shall be prohibited except where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1 above and, as a means to meet direct nutritional requirements of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it is necessary to fund the internal transportation and delivery of the food aid to, or the procurement of agricultural inputs to low-income or resource-poor producers in, those Members. Monetization shall be carried ou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cipient least-developed or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y. Additionally, commercial displacement shall be avoided.

☞ 비 긴급 상황에서의 식량원조는, 상기 제1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의 직접적인 영양학적 요구의 수단에 의한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식량 원조의 내부 수송과 배달의 자금 조달을 위해 또는 저소득이나 자원 부족 생산회원국에 농산물 투입량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



Monitoring and surveillance(모니터링 및 감시)

13. Food aid donor Members shall be required to notify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on an annual basis, all relevant data.

☞ 식량원조 공여회원국은 매해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부록3.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 번역본(수출경쟁)18)

<p>WORLD TRADE ORGANIZATION</p> <p>(13-6719)</p> <p>Ministerial Conference Ninth Session Bali, 3-6 December 2013</p>	<p>WT/MIN(13)/W/12 6 December 2013</p>
<p>EXPORT COMPETITION DRAFT MINISTERIAL DECLARATION</p>	
<p>1. We recognize tha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are a highly trade distorting and protectionist form of support, and that, accordingly, export competition remains a key priority of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ation of the ongoing reform process set out in Article 20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accordance with the Doha work programme on agriculture and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p> <p>☞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와 이와 동등효과를 지닌 수출 조치들은, 높은 무역 왜곡효과와 보호주의의 형태를 가지므로,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과 도하 작업계획에 따라 농업협정 제20조가 제시한 지속적인 개혁의 과정 속에 주요 우선순위 농업협상 의제로 남아있다.</p> <p>2. In this context, we therefore reaffirm our commitment, as an outcome of the negotiations, to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as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e regret that it has not been possible to achieve this objective in 2013 as envisaged in that Declaration.</p> <p>☞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에 명시한 대로 국가들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의 철폐와 이에 상응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규율을 협상의 결과물으로써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그 약속을 확인한다. 그 선언문이 제시한 2013년까지 그 약속 이행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p> <p>3. We consider that th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doc. TN/AG/W/4/Rev.4 dated 6 December 2008) remain an important basis for an ambitious final agreement in the export competition pillar, including with regard to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LDCs and NFIDCs.</p> <p>☞ 농업부분의 세부원칙(모델리티) 개정안(TN/AG/W/4/Rev.4, 2008년 12월)은 수출경쟁 분야의 의욕적인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최빈개도국(LDC)과 식량순수입 개도국(NFIDC)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도 포함된다.</p>	

18) WT/MIN(13)/W/12와 임송수(2014)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4. We recognize the decrease in recent years in the use of export subsidies subject to reduction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s indicated by information contained in Members' notifications to the WTO, and the positive developments that have also taken place in other areas of the export competition pillar.

☞ 농업협정 아래 회원국들이 WTO에 통보한 정보에 나타났듯이 최근 감축대상 수출보조의 사용이 감소하였고, 수출경쟁의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5. We recognize that the reforms undertaken by some Members have contributed to this positive trend. We emphasize however that this generally positive trend is not a substitute for the attainment of the final objective on export competition in the Doha negotiations.

☞ 일부 회원국들이 시행한 개혁조치가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이끌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조가 도하 협상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최종목표달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한다.

6.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olidating progress in this area within the Doha negotiations so as to achieve as soon as possible the final objective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and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further engagement among Members to this end.

☞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에 명시한 최종 목표를 가능한 빨리 성취하기 위해 도하 협상내 이 분야의 공고한 진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회원국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7. We therefore reaffirm the importance of Members maintaining and advancing their domestic reform processes in the field of export competition. We strongly encourage those Members who have engaged in reforms to continue in that direction and Members yet to undertake reforms to do so, given the positive impact that such reforms can have and the significant negative consequences that failure to reform would generate.

☞ 이에 따라 수출경쟁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국내 농정개혁 유지와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함. 개혁이 갖는 양(+)¹의 영향과 반대로 개혁의 실패가 초래하는 심각한 음(-)²의 결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해 온 회원국과 아직 개혁조치를 단행하지 않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개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8. With the objective on export competition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in mind and with a view to maintaining the positive trend noted previously, we shall exercise utmost restraint with regard to any recourse to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To this end, we undertake to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at:

☞ 위에 언급된 긍정적 기조들과 함께 홍콩 각료선언문이 제시한 수출경쟁 목표를 위해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와 그와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 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가능한 최대 범위로



시행할 것이다.

- The progress towards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will be maintained;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와 그와 동등한 모든 형태의 수출조치에 대한 규율

- The level of export subsidies will remain significantly below the Members' export subsidy commitments ;

☞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양허수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수출보조 수준 유지

- A similar level of discipline will be maintained on the use of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조치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규율 적용

9. We agree that fulfilling the objective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on export competition remains a priority issue for the post Bali work programme. We agree to continue to work actively for further concrete progress in this area as early as feasible.

☞ 수출경쟁에 관해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이 제시한 목적 달성은 발리 이후 작업계획의 높은 우선순위로 남기기로 한다. 이 분야가 가능한 한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한다.

10. Accordingly, we commit to enhance transparency and to improve monitoring in relation to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in order to support the reform process.

☞ 이에 따라 개혁과정을 지지하기 위해 투명성을 증진하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모니터링(관찰, 감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다.

11. We therefore agree to hold dedicated discussions on an annual basis in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o examine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export competition. This examination process sha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Members to raise any matter relevant to the export competition pillar, in furtherance of the final objective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 따라서 수출경쟁 분야의 진전을 검토하기 위해 농업위원회가 해마다 이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 검토과정은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이 제시한 최종 목표를 진전시키는 측면에서 수출경쟁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라도 회원국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2. This examination process shall be undertaken on the basis of timely notification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related decisions, complemented by information compiled by the WTO Secretariat, consistent with the practice followed in 2013¹⁹⁾, on the basis of



Members'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as illustrated in the Annex.

☞ 이러한 검토과정은 관련 농업협정 규정아래 통보되는 정보 및 관련된 결정, WTO 사무국이 제시한 정보, 부속서에 제시한대로 2013년에 시행한 회원국 대상 설문지를 기초로 추진한다.

13. We agree to review the situation regarding export competition at the 10th Ministerial Conference. We also agree that the terms of this declaration do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nor shall they be used to interpret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 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상황을 검토하기로 동의한다. 또한 이 선언문의 요건들이 해당 협정들을 다루는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기 위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ANNEX (부속서)

*Elements for Enhanced Transparency on Export Competition
(수출경쟁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요소들)*

This Annex is intended to illustrate the types of information that would be requested by the Secretariat in the questionnaire mentioned in paragraph 12. It is understood that this questionnaire, which does not change Members' notification obligations, may be revised in the light of experience and of Members' further views.

☞ 이 부속서는 위 12항에서 언급한 설문지와 관련 WTO 사무국에 의해 요구될 정보의 형태를 예시한 것이다. 이 설문지는 회원국들의 통보의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관점 측면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

Export Subsidies (수출 보조)

1. Provide information on operational changes in measures

☞ 수출 조치들의 운영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port Credit,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s (Export financing) (수출신용,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제도(수출금융))

1. Description of the program (classification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direct financing support, risk cover, government to government credit agreements or any other form of governmental export credit support) and relevant legislation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다음의 분류: 직접 금융보조, 위험회피(risk cover), 정부간 신용협정 혹은 정부 수출신용보조) 및 관련 규정

2. Description of Export Financing Entity

☞ 수출금융기관에 대한 설명

3. Total value of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covered by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s and use per program

☞ 수출신용, 수출신용 보증 및 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총 농산물 수출액



4. Annual average premium rates/fees per program
 - ☞ 각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보험료율/수수료
5. Maximum repayment terms per program
 - ☞ 각 프로그램의 최대 분할 상환기간
6. Annual average repayment periods per program
 - ☞ 각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분할 상환기간
7. Export destination or group of destinations per program
 - ☞ 각 프로그램의 수출 목적지
8. Program use by product or product group
 - ☞ 개별 생산물 혹은 생산물 그룹의 프로그램 활용

Food Aid (식량 원조)

1. Product description
 - ☞ 농산물에 관한 설명
2. Quantity and/or value of food aid provided
 - ☞ 제공된 식량원조의 물량과 가치
3. Description of whether food aid is provided on in-kind, untied cash-based basis and whether monetisation was permitted
 - ☞ 식량원조가 현물, 조건없는 현금 기준으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화폐화 (monetization)가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
4. Description of whether in fully grant form or concessional terms
 - ☞ 완전 무상 혹은 양허 조건아래 제공된 것인지에 관한 설명
5. Description of relevant needs assessment (and by whom) and whether food aid is responding to a declaration of emergency or an emergency appeal (and by whom)
 - ☞ 적절한 요구평가(needs assessment)와 식량원조가 긴급사태 선언이나 호소에 대응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주체 포함)
6. Description of whether re-export of food aid is an option under the terms of the provision of food aid
 - ☞ 식량원조의 재수출이 식량원조 제공의 조건하에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

Agriculture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1. Enumeration of State Trading Enterprises (국영무역기업의 목록 열거)
 - Identification of state trading enterprises
 - ☞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확인
 - Description of products affected (*Including tariff item number(s) encompassed in product description*)
 - ☞ 관련된 농산물에 관한 설명(관세라인 포함)
2. Reason and purpose (근거와 목적)
 - Reason or purpose for establishing and/or maintaining state trading enterprise
 - ☞ 국영무역기업의 설립 및 유지 이유 또는 목적



- Summary of legal basis for granting the relevant exclusive or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including legal provisions and summary of statutory or constitutional powers

☞ 독점권이나 특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

3. Description of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Trading Enterprise

(국영무역기업의 기능 설명)

- Summary statement providing overview of operations of the state trading enterprise

☞ 국영무역기업의 운영에 관한 개요를 제공하는 요약문

- Specification of exclusive or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enjoyed by the state trading enterprise

☞ 국영무역기업이 향유하는 독점권이나 특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

Additional information subject to normal commercial confidentiality considerations (일반 상업비밀 고려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

1. Exports (value/volume) 수출(가치/물량)

2. Export prices 수출가격

3. Export destination 수출 대상국

Information on policies no longer in operation due to significant policy reforms (상당한 정책개혁으로 인해 정책에 관한 정보는 더 이상 수집하지 않음)

참고 문헌

- 농림수산물유통공사(KATI). <www.kati.net>
- 농림수산식품부, 「WTO 농업보조금」, 2009.1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보도자료(2013.12.7)
- 농림축산식품부. 2014.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2014.6).
- 문한필, 송주호, 정대희, 김수지. 2014.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한필. 2014.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세계농업」 2014년 1월호. vol. 161.
- 문한필 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실태와 요인 분석” 한국무역학회 2014년도 제1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4.
- 배상건 외, 「홍콩 WTO 각료회의 결과와 농업협상 전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 산업통상자원부. 2013. 보도자료 (2013.12.3.)
- 서진교 외,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12
- 서진교, 박지현. 2009.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서정민, 오수현, 박지현, 김민성. 2013.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3권 제24호
- 서진교, 오수현, 박지현, 김민성, 이창수. 2013.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2013. “발리에서 일어난 일: 그 생생 드라마의 의미와 대응”. 「시선집중 GS&J」 wp 170호(2013.12.23.). GS&J institute.
- 송주호 외, 「WTO 농업보조금 분쟁사례 분석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6

송주호. 2013a.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73호 (2013.1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2013b. “2013년 12월 발리에서 생긴 일.” 「농경나눔터」 2013년 12월호. vol. 4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2013c. “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세계농업」 2013년 2월호. vol. 150.

안병일, 임정빈, 박미성, 한정훈. 2013.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DDA 대응방향 검토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어명근 외. 2011.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2014.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세계농업」 2014년 1월호. vol. 161.

최세균, 「WTO 체제의 수출보조 현황과 협상 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2013.

Special Session, Committee on Agriculture, 2013.4

WTO 농업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홈페이지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negs_bkgrnd08_export_e.htm

WTO Committee on Agriculture, 「2014 Annual export competition review」, 2014.2

WTO, 「Annual Report」 2014,

WTO. 2008. TN/AG/W/4/Rev.4.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WTO. 2013. WT/MIN(13)/W/12. “Export Competition: Draft Ministerial Declaration.”

WTO. 2014. G/AG/W/125. “EXPORT SUBSIDIES,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INTERNATIONAL FOOD AID AND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